



2022.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NABO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성은 예산분석관
이선화 예산분석관

지 원 | 강숙자 행정실무원
최희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에 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교육위원회

[교육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5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

II.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결산 분석 16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16
 - 1-2. 교부금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 문제 28
 - 1-3. 교부금 운영: 표준적인 교육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문제 35
 - 1-4. 교부금 운영: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의 배분방식 재검토 필요 40
 - 1-5. 특별교부금 운용: 특별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44
 - 1-6. 특별교부금 운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9
 - 1-7.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57
2. 국립대학 지원의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69

III. 개별 사업 분석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및 보조금 관리 부실 80
2.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성과와 연계한 재정지원 강화 필요 94
3.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취업 성과 점검 필요 .. 105
4. 현장실습 지원금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 110
5. 인천대학교 대학회계 불용액 관리 필요 115
6.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119
7. 사학연금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124
8.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 부진 1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139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8

II. 주요 현안 분석

1.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사업 결산 분석	150
1-1. 창작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 형평성 제고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162
1-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70
1-3.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76
1-4.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182
1-5.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의 계획 변경 지양 및 집행 관리 필요 ·	187
1-6.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	194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97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15
2.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220
3.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	226
4.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집행 관리 및 효과적 추진 필요	234
5.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245

[문화재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255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62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63

II. 개별 사업 분석

1.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집행 관리 및 체계적 추진 필요	264
2.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집행 관리 필요	276
3.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282
4.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집행 관리 및 실효성 확보 필요	288
5.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및 실효성 확보 필요	297

교육위원회





부속
표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조 1,726억 5,700만원이며, 4조 4,760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4조 4,738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1,418	241,418	241,418	378,612	376,423	2,174	16	99.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4,468	14,468	14,468	9,994	9,994	-	-	1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916,771	4,087,434	4,087,434	-	-	100
합계	4,172,657	4,172,657	4,172,657	4,476,040	4,473,850	2,174	16	99.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2조 874억 7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81조 8,15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912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10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0,429,061	76,989,028	77,021,221	76,823,679	16,941	180,600	99.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122,600	1,122,600	1,149,416	1,074,708	74,308	400	93.5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916,771	3,916,771	3,916,771	3,916,771	-	-	100
합계	75,468,432	82,028,399	82,087,407	81,815,159	91,249	181,000	99.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3조 4,837억 8,700만원이며, 13조 5,813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인 13조 3,720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2,087억 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억 6,400만원을 불납 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학진흥기금	470,310	470,310	470,310	329,245	296,504	32,742	-	90.1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13,013,477	13,013,477	13,013,477	13,252,075	13,075,547	175,964	564	98.7
합계	13,483,787	13,483,787	13,483,787	13,581,320	13,372,050	208,706	564	98.5

자료: 교육부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3조 5,005억 3,300만원이며, 이 중 99.0%인 13조 3,720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76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95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학진흥기금	470,310	470,310	471,382	296,504	396	136,372	62.9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13,013,477	13,013,477	13,029,151	13,075,547	17,239	43,217	100.4
합계	13,483,787	13,483,787	13,500,533	13,372,050	17,635	179,589	99.0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726억 7,700만원(17.7%)이 증가한 7조 1,409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3,875억7,100만원(24.1%)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30,463	193,367	193,367	326,786	133,419	96,323
기금	5,522,890	5,874,879	5,874,879	6,814,137	939,258	1,291,247
합계	5,753,352	6,068,246	6,068,246	7,140,923	1,072,677	1,387,57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1회계연도 교육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851억 9,600만원(△ 0.5%)이 감소한 82조 7,47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조 9,072억 3,900만원(9.1%)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70,442,914	70,819,026	77,378,993	77,166,254	△212,739	6,723,340
기금	5,397,740	5,645,455	5,754,096	5,581,640	△172,456	183,900
합계	75,840,654	76,464,481	83,133,089	82,747,893	△385,196	6,907,23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의 자산은 58조 8,357억 200만원, 부채는 1조 8,864억 9,900만원으로 순자산은 56조 9,492억 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4조 6,171억 4,600만원, 투자자산 23조 5,454억 2,500만원, 일반유형자산 30조 6,020억 6,700만원, 무형자산 622억 1,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8억 5,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조 5,391억 300만원(8.4%)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의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 2조 7,704억 1,400만원 증가 및 건물의 자산재평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산재평가 증가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1조 7,204억 8,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499억 9,500만원, 장기차입부채 1조 263억 9,300만원, 장기충당부채 17억 8,0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6,083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19억 1,600만원(1.7%)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313억 2,1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학진흥기금의 공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예탁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91억 2,700만원 감소와 일반회계의 BTL미지급금 상환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347억 4,0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8,835,702	54,296,599	4,539,103	8.4
Ⅰ. 유동자산	4,617,146	4,569,271	47,875	1.0
Ⅱ. 투자자산	23,545,425	20,775,011	2,770,414	13.3
Ⅲ. 일반유형자산	30,602,067	28,881,586	1,720,481	6.0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62,211	54,257	7,954	14.7
Ⅵ. 기타비유동자산	8,853	16,474	△7,621	△46.3
부 채	1,886,499	1,918,415	△31,916	△1.7
Ⅰ. 유동부채	249,995	218,674	31,321	14.3
Ⅱ. 장기차입부채	1,026,393	1,045,762	△19,369	△1.9
Ⅲ. 장기충당부채	1,780	10,907	△9,127	△83.7
Ⅳ. 기타비유동부채	608,331	643,071	△34,740	△5.4
순 자 산	56,949,203	52,378,185	4,571,018	8.7
Ⅰ. 기본순자산	19,562,271	19,562,271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8,229,067	18,316,154	△87,087	△0.5
Ⅲ. 순자산 조정	19,157,866	14,499,760	4,658,106	32.1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1조 7,084억 7,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5조 4,870억 900만원, 관리운영비 2,204억 9,000만원, 비배분비용 1,275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7,785억 3,600만원, 비배분수익 2조 8,829억 5,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2억 5,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조 5,233억 2,100만원(12.1%) 증가한 79조 1,735억 4,600만원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립대학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증가 등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0조 6,134억 2,900만원 증가한 영향과 자산처분이익 및 기타수익 증가로 인한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1조 6,558억 2,400만원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총 2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60조 3,370억 5,400만원)과 국립대학운영지원 프로그램(7조 1,595억 4,300만원),

지방교육정책지원 프로그램(4조 8,865억 4,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98억 9,500만원과 경비 1,305억 9,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911억 7,700만원과 평가손실 245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1,708,473	71,095,044	10,613,429	14.9
가. 프로그램 총원가	85,487,009	74,707,422	10,779,587	14.4
나. 프로그램 수익	3,778,536	3,612,379	166,157	4.6
II. 관리운영비	220,490	168,939	51,551	30.5
III. 비배분비용	127,535	613,370	△485,835	△79.2
IV. 비배분수익	2,882,952	1,227,128	1,655,824	134.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9,173,546	70,650,225	8,523,321	12.1
VI. 비교환수익 등	△1,252	△1,198	△54	4.5
VII. 재정운영결과(V-VI)	79,174,798	70,651,423	8,523,375	12.1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2조 3,781억 8,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6조 9,492억 300만원으로 순자산이 기초 대비 4조 5,710억 1,800만원(8.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8조 5,233억 7,500만원 증가한 반면, 기초순자산이 전년 대비 3조 9,698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각각 7조 3,361억 5,600만원 및 1조 7,883억 5,0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 조달 등 재원의 조달 83조 3,648억 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조 2,770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886억 2,7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4조 2,694억 5,8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가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2,378,185	48,408,297	3,969,888	8.2
Ⅱ. 재정운영결과	79,174,798	70,651,423	8,523,375	12.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9,087,711	71,751,555	7,336,156	10.2
Ⅳ. 조정항목	4,658,106	2,869,756	1,788,350	62.3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56,949,203	52,378,185	4,571,018	8.7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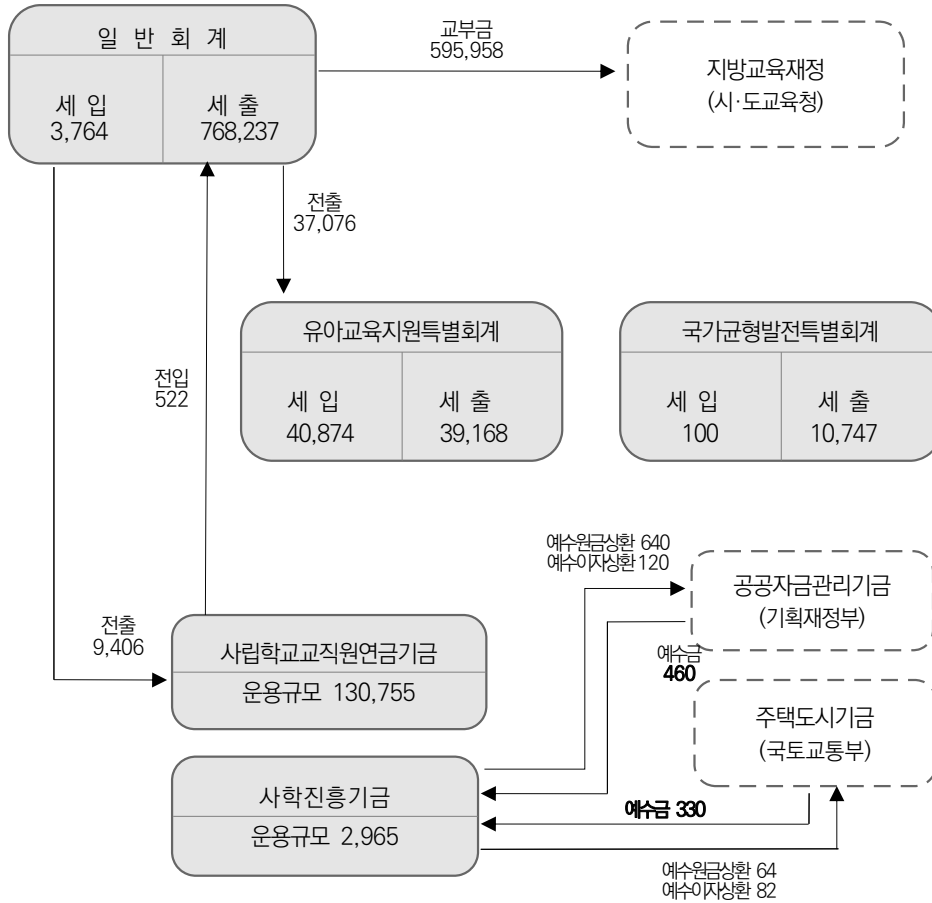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교육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7,076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9,406억원 전출되었다.

[2021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②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 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은 누리과정 단가인상으로 인한 유특회계 전출분 증가(△787억원), 내국세·교육세 예측변동에 따른 세수연동(△134억원) 등에 따라 921억원 감액(53조 3,221억원 → 53조 2,300억원)되었고,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대여 신청인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500억원이 감액(1조 475억원 → 9,975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② **국립대학 시설확충**, ③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등이 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단가 2만원 인상하여 2,621억이 증액(3조 6,547억원 → 3조 9,168억원)되었고,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대학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부족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200억이 증액(7,510억원 → 7,710억원)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16억원이 증액(3조 9,930억원 → 3조 9,946억원)되었다.²⁾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지원** 등이 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국립대병원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지원 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 12.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 12.

3)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 12.

교육부는 ① 공교육 투자 확대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투자 강화**, ②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③ 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포용적 평생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지원**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교육세에 연동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로 포착하여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이 비해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한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 활용, 시·도교육청 보유재원 증가에 머물고 있으므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2018~2021년 동안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재정 확대가 시설확충 등에 편중되었으며 증가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확보, 취업 등의 성과 달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대학 지원 재정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비 매칭 준수가 적절하므로, 향후 지방비 매칭

준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사·도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매칭 비율을 준수하도록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대학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검토하고, 성과지표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결산 분석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²⁾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프로그램 1500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구 분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및 교육세 일부 ¹⁾)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관리 (10%)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 검토 후 교부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³⁾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고, 특별교부금은 다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회계 전출분 제외)를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교부금은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9조 5,957억 9,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1년 집행액 중 보통교부금은 57조 9,163억 9,8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은 1조 6,793억 9,800만원 규모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조 76억 3,900만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5,038억 1,900만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679억 4,000만원으로 구성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및 증액교부금 포함 ¹⁾)	53,230,001 (57,880,731)	59,595,796 (64,246,526)	-	59,595,796 (64,246,526)	59,595,796 (64,246,526)
보통교부금	51,741,578	57,916,398	-	57,916,398	57,916,398
특별교부금	1,488,423	1,679,398	-	1,679,398	1,679,398
국가시책	893,054	1,007,639	-	1,007,639	1,007,639
지역현안	446,527	503,819	-	503,819	503,819
재난안전관리	148,842	167,940	-	167,940	167,940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포함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1년 세입 추가경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조 3,657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A)	추경 증액(B)	세계잉여금 정산분(C)	합계(A+B+C)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6,365,795	741,258	60,337,054
보통교부금	51,741,578	6,174,820	705,285	58,621,683
특별교부금	1,488,423	190,975	35,973	1,715,371
국가시책	893,054	114,585	21,584	1,029,223
지역현안	446,527	57,292	10,792	514,611
재난안전관리	148,842	19,098	3,597	171,537

주: 세계잉여금 정산은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2021년도에 교부한 것임

자료: 교육부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0조⁵⁾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⁶⁾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0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정산분 규모는 7,412억 5,800만원이며, 추정증액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 규모는 60조 3,370억 5,400만원이다. 다만, 세계잉여금 정산액은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며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예산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확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며, 보통교부금은 각 시·도별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교부된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신청 없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필요한 금액을 교부한다.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수요가 발생한 때 교부되며,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13조 2,786억 4,100만원(22.0%), 서울시교육청 5조 9,953억 2,200만원(9.9%), 경남교육청 4조 7,450억 3,900만원(7.9%) 등의 순이다.

5)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1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 교육청	보통 교부금	비중	특별교부금						합계	비중
			국가시책	비중	지역현안	비중	재난안전 관리	비중		
서울	5,787,747	9.9	133,645	13.0	43,616	8.5	30,314	17.7	5,995,322	9.9
부산	3,423,660	5.8	62,273	6.1	28,871	5.6	6,421	3.7	3,521,225	5.8
대구	2,707,327	4.6	52,506	5.1	22,432	4.4	7,470	4.4	2,789,735	4.6
인천	3,104,794	5.3	57,642	5.6	27,873	5.4	9,398	5.5	3,199,707	5.3
광주	1,826,808	3.1	33,927	3.3	18,285	3.6	4,015	2.3	1,883,035	3.1
대전	1,796,199	3.1	35,710	3.5	18,849	3.7	7,102	4.1	1,857,860	3.1
울산	1,460,407	2.5	27,560	2.7	4,866	0.9	3,163	1.8	1,495,996	2.5
세종	770,231	1.3	15,036	1.5	3,531	0.7	619	0.4	789,417	1.3
경기	12,874,550	22.0	244,829	23.8	131,952	25.6	27,310	15.9	13,278,641	22.0
강원	2,838,461	4.8	36,776	3.6	26,144	5.1	11,568	6.7	2,912,949	4.8
충북	2,393,862	4.1	42,793	4.2	20,664	4.0	6,623	3.9	2,463,942	4.1
충남	3,292,057	5.6	53,092	5.2	31,271	6.1	9,616	5.6	3,386,036	5.6
전북	3,241,272	5.5	41,710	4.1	24,524	4.8	8,825	5.1	3,316,331	5.5
전남	3,450,156	5.9	49,016	4.8	28,902	5.6	13,732	8.0	3,541,806	5.9
경북	4,105,527	7.0	55,118	5.4	34,217	6.6	11,073	6.5	4,205,935	7.0
경남	4,628,265	7.9	65,827	6.4	38,970	7.6	11,977	7.0	4,745,039	7.9
제주	920,360	1.6	21,763	2.1	9,643	1.9	2,312	1.3	954,078	1.6
합계	58,621,683	100.0	1,029,223	100.0	514,610	100.0	171,538	100.0	60,337,054	100.0

주: 추정 및 세제잉여금 정산분을 포함하는 최종 교부 기준

자료: 교육부

나.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1) 시·도교육청 재정구조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7)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학예 등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의회의 의결로 예산을 확정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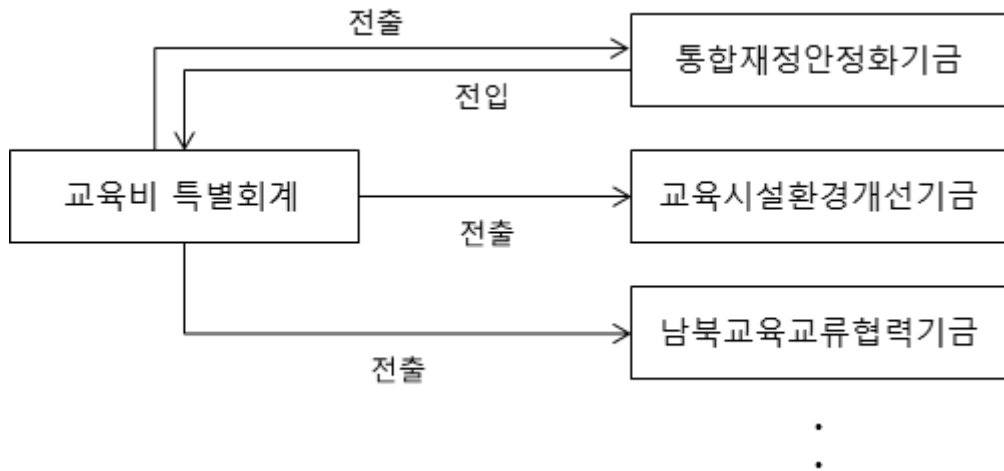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한다.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다른 법률,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시·도교육청 기금 재원은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달된다.

[시·도교육청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이 77.1%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로 교부금 의존도가 높다(예산액 기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7조 6,443억 7,200만원으로, 88조 1,251억 5,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8조 759억 8,400만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되었고, 9억 7,9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481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84,919,952	2,724,421	87,644,372	88,125,157	88,075,984	979	48,194
중앙정부이전수입	65,470,096	-	65,470,096	65,568,770	65,568,770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0,227,627	-	60,227,627	60,337,993	60,337,993	-	-
- 증액교부금	943,013	-	943,013	943,113	943,113	-	-
- 국고보조금	371,685	-	371,685	370,892	370,892	-	-
- 특별회계전입금	3,927,771	-	3,927,771	3,916,771	3,916,771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334,706	-	15,334,706	15,541,354	15,541,354	-	-
- 지방교육세전입금	7,807,242	-	7,807,242	7,976,912	7,976,912	-	-
- 담배소비세전입금	642,673	-	642,673	624,976	624,976	-	-
- 시도세전입금	3,889,603	-	3,889,603	3,942,772	3,942,772	-	-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6,494	-	146,494	144,343	144,343	-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094,182	-	1,094,182	1,117,997	1,117,997	-	-
- 교육급여보조금	22,010	-	22,010	22,015	22,015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00,162	-	100,162	100,162	100,162	-	-
- 비법정이전수입	1,632,340	-	1,632,340	1,612,177	1,612,177	-	-
기타이전수입	269,337	-	269,337	281,063	278,394	-	2,669
자체수입	1,420,666	-	1,420,666	1,584,402	1,537,898	979	45,525
- 입학금 및 수업료	1,481	-	1,481	2,268	1,324	509	434
- 사용료 및 수수료	14,612	-	14,612	11,966	11,942	-	23
- 자산수입	248,795	-	248,795	263,853	263,189	-	664
- 이자수입	55,992	-	55,992	63,343	63,343	-	-
- 금융자산회수	87,907	-	87,907	87,933	87,889	-	44
- 기타수입 등	1,011,878	-	1,011,878	1,155,039	1,110,210	470	44,360
지방채 및 기타	1,746,476	2,724,421	4,470,897	4,470,897	4,470,897	-	-
- 교부금부담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기타(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1,746,476	2,724,421	4,470,897	4,470,897	4,470,897	-	-
내부거래	678,672	-	678,672	678,672	678,672	-	-
- 기금전입금	678,672	-	678,672	678,672	678,672	-	-

주: 2021년 결산은 진행 중으로 2022. 5. 17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7조 6,443억 7,200만원으로, 83조 8,101억 8,700만원(현액 대비 95.6%)이 집행되었고, 2조 4,500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조 3,84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문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각각 1조 8,277억 1,400만원, 3,823억 3,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및 불용액의 74.6%, 2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정책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4,919,952	2,724,421	87,644,372	83,810,187	2,450,061	1,384,125
유아 및 초중등교육	78,215,557	2,548,893	80,824,398	77,391,566	2,258,445	1,174,387
- 인적자원운용	40,148,627	1,650	40,159,683	39,832,625	795	326,263
- 교수학습활동지원	6,500,185	419,025	6,928,681	6,465,084	333,147	130,449
- 교육복지지원	7,855,325	5,589	7,883,276	7,712,627	7,706	162,943
- 보건급식체육활동	2,467,511	88,260	2,566,275	2,411,156	89,082	66,038
- 학교재정지원관리	12,448,099	12,789	12,461,783	12,355,425	-	106,358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795,810	2,021,580	10,824,700	8,614,649	1,827,714	382,337
평생직업교육	196,106	785	197,069	191,049	836	5,184
- 평생교육	178,483	785	179,446	173,490	836	5,120
- 직업교육	17,623	-	17,623	17,559	-	64
교육일반	6,508,288	174,743	6,622,905	6,227,571	190,780	204,555
- 교육행정일반	3,131,581	16,316	3,165,833	3,112,715	17,464	35,654
- 기관운영관리	832,915	158,427	991,695	787,977	173,316	30,403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995,485	-	1,995,485	1,988,668	-	6,817
- 예비비 및 기타	548,307	-	469,892	338,211	-	131,681

주: 2021년 결산은 진행 중으로 2022. 5. 17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6조 2,608억원 4,400만원(전체 집행액 대비 55.2%), 전출금 등 16조 3,623억원 4,900백만원(전체 집행액 대비 19.5%)이 집행되어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총 지출에서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성질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4,919,952	272,421	87,644,372	83,810,187	2,450,061	1,384,125
- 인건비	46,615,485	231	46,656,998	46,260,844	1,079	395,075
- 물건비	2,600,322	17,441	2,618,441	2,490,943	24,755	102,744
- 이전지출	3,634,823	4,349	3,677,353	3,620,180	3,512	53,662
- 자본지출	10,366,476	2,697,702	13,078,451	10,195,583	2,416,710	466,157
- 상환지출	1,201,227	0	1,201,427	1,203,935	0	△2,508
- 전출금 등	16,610,929	4,698	16,599,427	16,362,349	4,005	233,073
- 예비비 및 기타	675,103	0	596,688	464,891	0	131,797
- 내부거래	3,215,587	0	3,215,587	3,211,462	0	4,125

주: 2021년 결산은 진행 중으로 2022. 7월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2021년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수납액 및 집행액이 19조 8,391억 2,200만원, 18조 5,135억 4,3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수납액 및 집행액이 12조 2,023억 9,700만원, 11조 4,450억 200만원 규모이다.

[2021년도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세출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서울	11,815,293	12,216,797	12,202,397	14,262	11,815,293	12,162,448	11,445,002	296,125	421,320
부산	5,183,014	5,200,813	5,285,863	4,924	5,183,014	5,278,655	4,979,714	238,772	60,169
대구	3,935,983	4,070,265	4,069,669	594	3,935,983	4,058,861	3,908,698	59,471	90,692
인천	4,775,904	5,075,146	5,072,876	2,238	4,775,904	5,064,385	4,911,871	106,788	45,726
광주	2,659,708	2,740,295	2,739,345	944	2,659,708	2,735,479	2,548,868	131,875	54,736
대전	2,536,784	2,557,689	2,557,161	489	2,536,784	2,552,603	2,508,633	8,449	35,521
울산	2,030,972	2,096,261	2,095,557	690	2,030,972	2,088,666	2,038,845	19,881	29,940
세종	1,037,330	1,068,867	1,068,814	51	1,037,330	1,067,707	1,029,207	34,133	4,366
경기	19,024,246	19,855,161	19,839,122	15,556	19,024,246	19,603,677	18,513,543	740,611	349,523
강원	3,567,793	3,631,578	3,627,316	4,060	3,567,793	3,606,683	3,545,931	25,541	35,212
충북	3,230,007	3,307,872	3,306,372	1,496	3,230,007	3,302,812	3,223,401	47,911	31,501
충남	4,194,904	4,413,330	4,413,060	269	4,194,904	4,390,052	4,250,962	117,077	22,014
전북	3,974,481	4,107,753	4,107,590	162	3,974,481	4,095,548	3,913,082	160,369	22,096
전남	4,274,941	4,451,266	4,451,209	58	4,274,941	4,434,746	4,228,938	126,712	79,096
경북	5,321,782	5,559,973	5,559,365	608	5,321,782	5,551,129	5,396,862	110,762	43,505
경남	6,032,115	6,285,157	6,284,151	984	6,032,115	6,254,221	6,065,216	144,926	44,078
제주	1,324,696	1,396,933	1,396,118	809	1,324,696	1,396,700	1,301,414	80,658	14,628
계	84,919,952	88,125,157	88,075,984	48,194	84,919,952	87,644,372	83,810,187	2,450,061	1,384,125

주: 2021년 결산은 진행 중으로 2022. 5. 17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3) 기금 결산

2021년말 기준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4개 기금을 기금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조성액은 6조 1,677억 600만원, 사용액은 7,636억 4,6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총 5조 4,040억 6,000만원 규모이다.

[연도별 시·도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7	9	356,612	35,934	320,678
2018	10	466,881	33,077	433,804
2019	20	1,798,057	82,336	1,715,721
2020	31	2,976,076	81,311	2,894,765
2021	44	6,167,706	763,646	5,404,060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4개 기금, 부산 2개 기금, 대구 2개 기금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신규기금 설치를 확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였다.

[2021년도 시·도교육청 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교육청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서울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	2016	76,805	1,028	75,77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2,003	68	1,935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07	15,133	6,661	8,47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318,411	-	318,411
부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474,175	230,000	244,17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25,000	-	225,000
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	85,000	-	85,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0,000	-	200,000
인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56,109	101,000	355,10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38,918	-	138,918
광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1,128	1	1,1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5,683	-	45,68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5,000	-	25,000

(단위: 백만원)

교육청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대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138,907	48,450	90,45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62,000	-	62,000
울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75,455	37,500	37,95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63,600	-	63,600
세종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235,584	50,000	185,58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41,100	-	41,100
경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07	23,560	7,793	15,76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4,076	1,484	2,59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67,656	-	167,656
강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968	1,801	2,16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519,337	-	519,337
충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357,477	96,900	260,577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1	54,308	5,897	48,411
충남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2015	76,687	5,279	71,408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206,960	-	206,960
전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1	887	-	88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87,562	-	187,56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90,122	-	190,122
전남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2001	9,859	7,210	2,649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201	-	201
	폐교매각대금관리기금	2020	11,139	-	11,13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24,000	-	124,000
경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322,342	113,500	208,842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013	289,909	23,777	266,132
	공무원주택임차기금	2010	5,308	4,609	69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319,100	-	319,100
경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17,212	-	417,212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1	500	-	5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5,900	-	25,900
제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38,925	20,688	118,237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30,700	-	30,700
합 계			6,167,706	763,646	5,404,060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1-2. 교부금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 문제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로,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그 규모가 결정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되었으며, 2001년 내국세의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봉급교부금과 내국세교부금의 통합,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보전 등에 따라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 20.46%, 2020년 20.79%로 조정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규모는 학교·학급·학생수 및 교원수와 같은 교육 수요 지표 변동과는 무관하게 내국세 및 교육세 규모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가율에 따라 등락을 보이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 또는 감소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2013~2022년 동안 연평균 7.9% 증가하여 2022년 81.3조원 규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3~2022년]

(단위: 억원, 만명,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10,619	408,681	394,056	431,615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6	7.9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	657	638	620	602	583	570	556	544	535	532	△2.3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	6.41	6.35	7.16	7.99	9.20	10.88	9.85	11.28	15.28	10.4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교부기준(세계잉여금, 추경예산 포함)

자료: 교육부

한편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는 2013년 657만명에서 2022년 532만명으로 125만명 감소(연평균 △2.3%)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2022년 동안 연평균 10.4% 증가하여 2022년 1인당 교부금 규모는 1,528만원으로 2013년의 2.4배 수준이다. 특히, 학령인구(6~17세)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141만명 감소하고 2070년 228만명으로 2020년의 41.5%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 12.)를 고려하면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학령인구(6~17세) 추계]

(단위: 천명)

구 분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학령인구	5,478	5,100	4,068	3,291	3,569	2,972	2,276
- 초등(6~11)	2,724	2,337	1,592	1,814	1,688	1,370	1,091
- 중등(12~14)	1,364	1,400	1,151	774	928	784	562
- 고등(15~17)	1,390	1,363	1,325	703	953	818	623

주: 중위 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 12.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투자 수준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의 증가로 교직원, 교실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자본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17.3명(25.5명)에서 2021년 14.0명(21.5명)으로 감소하고 중학교의 경우 동기간 17.3명(33.0명)에서 11.9명(25.4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14.8명(33.1명)에서 9.9명(23.0명)으로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추이]

(단위: 명)

연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19.5	28.7	20.1	19.9	26.3	35.8	38.0	42.7
2011	14.6	17.3	17.3	14.8	20.9	25.5	33.0	33.1
2016	13.3	14.6	13.3	12.9	19.7	22.4	27.4	29.3
2018	12.3	14.5	12.1	11.5	17.9	22.3	25.7	26.2
2019	11.9	14.6	11.7	10.6	17.0	22.2	25.1	24.5
2020	11.4	14.2	11.8	10.1	16.7	21.8	25.2	23.4
2021	10.9	14.0	11.9	9.9	16.1	21.5	25.4	23.0

주: 1. 조사 기준일 매년 4월 1일

2.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교원 수

3. 교원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단, 휴직교원 포함)

4. 직위별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포함됨

5. 각 연도 국·공립 및 사립학교 대상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출처: 교육기본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 초등학교~고등학교 교육지출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중 초등학교~고등학교 지출 비중은 10.3%로 OECD 평균(7.8%) 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중 교육분야 지출 비중(2018년)]

(단위: %)

구 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초등학교~고등교육
OECD 평균	7.8	2.9	10.7
한 국	10.3	2.8	13.1

- 주: 1. 초기재원 기준: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을 정부 부담에 포함하여 산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
 3. 초등교육에 유아교육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 9.

그리고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 고등학교 단계의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2,339달러로 OECD 평균 9,913달러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8년)]

(단위: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구 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초등학교~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OECD 평균	9,913	854	10,454	13,389	3,369	17,065	10,564	1,359	11,680
한 국	12,339	1,455	13,794	6,266	5,024	11,290	10,206	2,709	12,914

- 주: 1. 합계에 해외재원 포함, 한국의 경우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
 2. 초기재원 기준: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을 정부 부담에 포함하여 산출
 3. 초등교육에 유아교육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 9.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교원 1인당 학생 수 격차는 2008~2019년 동안 축소되어, 2019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6.6명으로 OECD 평균(14.5명)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감소 속도(7.5명)가 OECD 평균(1.9명) 보다 높아 2021년 현재 격차가 더 축소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의 경우 13.0명으로 OECD 평균(13.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11.4명으로 OECD 평균(13.0명)보다 1.4명 적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수 추이]

(단위: 명/교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A)	2019 (B)	차이 (B-A)	2008 (A)	2019 (B)	차이 (B-A)	2008 (A)	2019 (B)	차이 (B-A)
핀란드	14.4	13.5	△0.9	10.6	8.8	△1.9	15.9	17.5	1.6
프랑스	19.9	18.8	△1.1	14.6	14.5	△0.1	9.4	11.3	1.9
독 일	18.0	15.1	△2.9	15.0	12.9	△2.1	14.0	12.4	△1.6
일 본	18.8	15.9	△2.9	14.7	12.9	△1.8	12.3	11.6	△0.7
한 국	24.1	16.6	△7.5	20.2	13.0	△7.2	16.5	11.4	△5.1
영 국	20.2	19.9	△0.3	15.0	16.2	1.2	12.4	18.2	5.7
미 국	14.3	15.2	0.9	14.8	15.2	0.4	15.6	15.1	△0.4
OECD 평균	16.4	14.5	△1.9	13.7	13.1	△0.6	13.5	13.0	△0.5

주: 1. OECD 기준 교원은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 및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휴직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임

2.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3. OECD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단계는 구분 가능하여 해당 교사 및 학생은 포함

4.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OECD는 전일제·비전일제 모두를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를 토대로 교육부 작성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다양한 경제사회적인 요인 보다는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지출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투자 수준, 정부 총지출 중 초·중등 교육지출 투자 수준 등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적정 규모 및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지출 중 경직적 성격의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신도시의 학교 신·증축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출 확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교부금의 확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초·중등 교육지출의 규모 적정성 및 산정방식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내국세 수입 전망 오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과소추계로 증양으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교부금 정산 및 추경 편성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세수오차의 발생이 큰 내국세 보다는 안정적이고 교육수요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며, 세입 증액경정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된 해는 2016년, 2017년, 2021년, 2022년 4회이다. 또한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 정산은 2017~2022년 동안 매년 이루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과 최종액 차이: 2013~2022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A)	추경 증액(B)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C)	최종액 (D=A+B+C)	D-A	(D-A) /A
2013	41,061,919	0	0	41,061,919	0	0
2014	40,868,077	0	0	40,868,077	0	0
2015	39,405,566	0	0	39,405,566	0	0
2016	41,228,353	+1,933,149	0	43,161,502	1,933,149	4.7
2017	42,931,736	+1,786,761	1,872,494	46,590,991	3,659,255	8.5
2018	49,540,693	0	2,912,093	52,452,786	2,912,093	5.9
2019	55,248,823	0	5,281,687	60,530,510	5,281,687	9.6
2020	55,372,241	△1,861,069	31,897	53,543,069	△1,829,172	3.3
2021	53,230,001	+6,365,795	741,258	60,337,054	7,107,053	13.4
2022	65,059,537	+10,985,419	5,252,633	81,297,589	16,238,052	25.0

자료: 교육부

매년 내국세 수입 전망 오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과 최종액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추경 증

액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으로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1년 13.4%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2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을 2월말에 시·도교육청에 확정 통보한 이후,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시·도교육청으로 추가 교부하고 정산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4~5월 중에 시·도교육청으로 추가 교부한다.⁸⁾ 따라서 이러한 추계오차의 증가로 인한 추경 및 정산분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측가능한 배분에 영향을 주어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자금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세수오차의 발생이 큰 내국세에 연동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교육수요 증가와 관련성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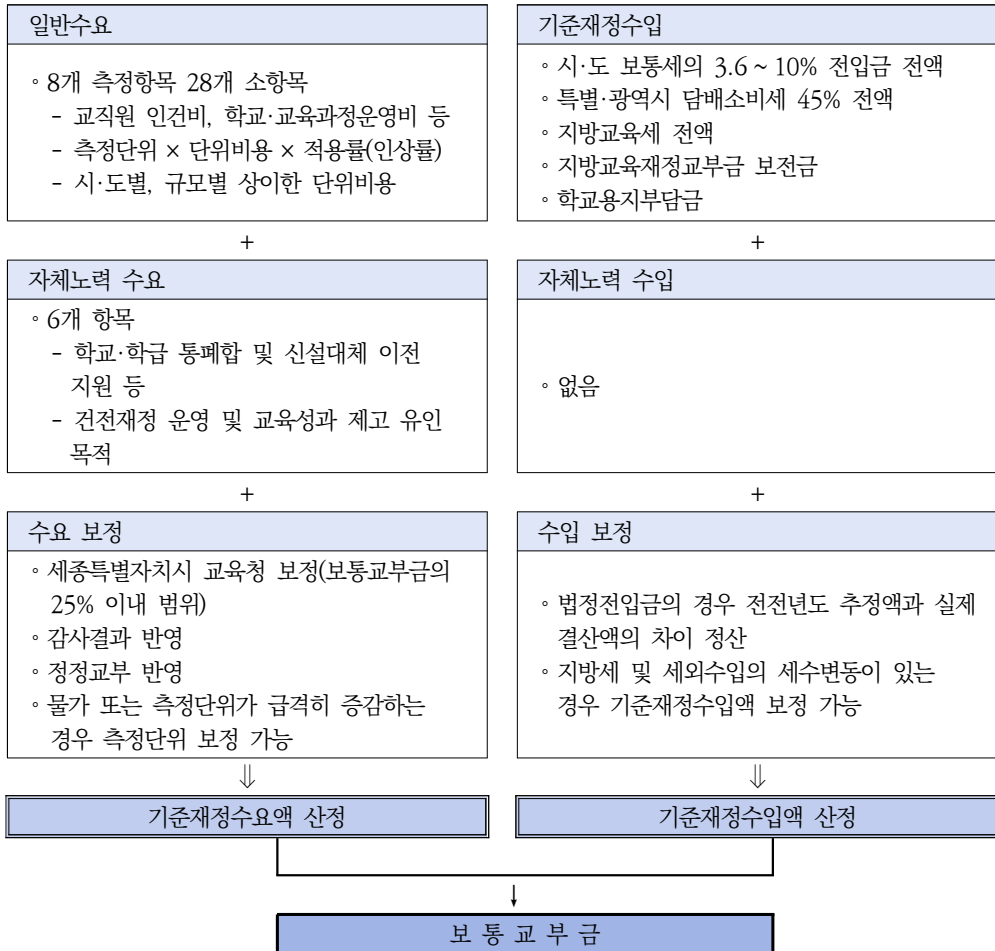
8) 반면, 내국세액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적을 경우 다다음연도 교부금 본예산에 반영되므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배분액이 연도 중에 변경되지 않는다.

1-3. 교부금 운영: 표준적인 교육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문제

가. 현 황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의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보통교부금 산정 흐름]



자료: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 일반수요와 자체노력 수요로 구성된다. 일반수요 항목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육행정부, 교육복지지원비, 교육기관 등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전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체노력 항목은 학교·학급 통폐합,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외부 교육투자유치, 재정집행 효율화 등 6개 항목으로, 교육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비용절감 및 중앙정부 교육정책 유인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한다.

나. 분석의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는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교육재정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차감한 재정부족액만큼 교부되는 것으로 산출되지만, 실제로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면 기준재정수요액은 보통교부금 규모에 맞추어 조정된다.

교육부는 항목별 기준재정수요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 및 적용률(인상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보통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면 단위비용 및 적용률을 인상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⁹⁾ 예를 들어, 학생경비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을 통해 조정되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기준재정수요액의 경우 단위비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위비용을 통해 기준재정수요가 조정된다.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의 기준재정수요 주요 항목의 측정방식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단위비용을 정하도록 한 항목은 교육과정운영비, 학교교육환경개선비,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등 교육기관 등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등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에 따라 최종 규모가 결정되는 항목은 교직원인건비, 학교경비·학급경비 등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복지지원비 등이다.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

보통교부금 산정식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보통교부금
	68.1조원		14.4조원		53.7조원
※ 기준재정수요 = 측정단위 × 단위비용 × 적용률(인상률), 단위비용과 적용률이 보통교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짐					
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산정식 (예시)	1. 학생경비 기준재정수요액 = $\sum (\text{학교급별 학생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단위비용은 「2015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교육비 2.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기준재정수요액 =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자료: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실태를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를 통해 살펴보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급, 학생 경비 기준재정수요는 증가하였다. 2015~2022년 동안 학교수는 4.3% 증가하였으나 학교경비는 69.6% 증가하였으며, 학급수는 1.1% 증가하였으나 학급경비는 89.6% 증가하였고, 학생수는 14.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경비는 135.8% 증가하였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하면서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에 적용되는 단위비용을 각각 62.9%, 87.5%, 175.0% 인상하였기 때문이지만 단위비용 상향조정 폭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학급·학생경비 기준재정수요 산정 추이]

(단위: 교, 학급, 명, 억원, 천원, %)

구 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B)	증가율 (B-A)/A
학교 경비	학교수	16,024	16,144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710	4.3
	운영비	46,408	43,916	51,009	59,459	59,156	59,337	45,624	78,704	69.6
	단위당	289,616	272,027	314,618	363,508	361,148	360,098	274,661	471,000	62.9
학급 경비	학급수	240,941	240,348	238,879	238,958	239,712	241,035	241,824	243,521	1.1
	운영비	9,367	10,554	12,046	14,218	13,995	14,048	11,163	17,756	89.6
	단위당	3,888	4,391	5,043	5,950	5,838	5,828	4,616	7,291	87.5
학생 경비	학생수	6,202,171	6,026,499	5,884,287	5,698,732	5,561,984	5,437,109	5,350,399	5,318,794	△14.2
	운영비	14,384	22,201	26,857	27,915	26,914	26,187	27,017	33,920	135.8
	단위당	232	368	460	490	484	482	505	638	175.0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각 년도.

반면,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로 정의하고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및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와 독립적으로 산출되고,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에 미달할 경우 조정률을 적용하는데, ‘보통교부세 총액/재정부족액 총액’으로 정해지는 동일한 조정률이 모든 시, 군, 시도에 적용된다.

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일반관리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동종 단체별로 집행한 경비나 앞으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통계수치와 그 경비와의 상관성에 의한 표준함수식인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을 추출하고 표준행정수요를 측정단위의 통계수치로 나누어 단위비용으로 산출한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보통교부세 산정식	기준재정수요액 100.0 - 기준재정수입액 47.0 = 재정부족액 53.0 조정률적용 0.864 보통교부세 47.3
항목별 기준재정수요 산정식 (예시)	일반관리비 기준재정수요액 = 공무원수 × 단위비용 × 보정계수 ※ 단위비용: 동종 지방자치단체 일반관리비 <u>표준행정수요액</u>의 합 ÷ 동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의 합 ※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시도: $Y_i = [2673.50979 + 29.23803(Ge + La)] \times \omega$ 시군구: $Y_i = [2673.50979 + 29.23803(Ge + La)] \times \omega$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 보정계수 산정공식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 ÷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자료: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에 의한 경비 지출액도 아니고 실제로 지출하려는 예산도 아니며, 만약 교부세가 구체적인 실적을 그 재정수요의 산정에 사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나 독자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⁰⁾

교육부와 같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경우 기준재정수요는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 단위비용 및 적용률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표준적인 교육재정수요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위비용 및 적용률 산정근거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교육수요를 대변하는 학생수 등 주요 측정단위가 감소 상태에 있으나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준재정수요도 함께 증가하므로 표준적인 교육재정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회적 제반 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교육재정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10) 행정안전부, 「2022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2. 3.

1-4. 교부금 운영: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의 배분방식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을 원칙이며,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추경 증액분, 세계잉여금 정산액) 배분 시 본예산 배분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이후 정부 추경 증액분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으로 추가재원이 교부된다. 교육부는 2016년까지 추가재원을 당해 연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비율’¹¹⁾대로 배분해왔으나, 2017년 추경 증액분 부터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본 교부금 배분 시 결정되었던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합계 비율”에 따라 추가재원을 배분하였다.

즉,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의 시·도교육청 배분기준을 기존 보통교부금 본예산 확정교부 비율에서 당해 연도 본예산 배분 시 결정되었던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합계 비율”로 변경하였으며, 보통교부금 본예산 배분기준과 추가재원 배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가재원 배분기준을 변경한 경과를 살펴보면, 본예산 배분기준으로 추가 재원을 교부할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을 두 번 반영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도세 전입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교육청에 대해 역차

11)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총액의 1.57% 교부)

$$\begin{array}{l} \text{[보통교부금]} + \text{[지방채]} = \text{[기준재정수요]} - \text{[기준재정수입]} \\ \text{(재정 전망에 따라 산출)} \quad \text{(교부금법령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quad \text{(결산액 기준 산출)} \end{array}$$

별하는 결과¹²⁾를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¹³⁾에 근거하여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본예산 배분 이후 추가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통교부금 본예산 배분 비율 대신 당해 연도 본 교부금 배분 시 결정되었던 “학교·학급·학생 측정단위 합계 비율”에 따라 추가 재원을 총액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¹⁴⁾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자원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교육청에 본예산 배분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도 「지방교부세법」 제6조¹⁵⁾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며, 지방교부세의 추가재원의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예산 배분 비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도세 전입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가자원 배분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시도세 전입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역차별로

12) [지역별 법정전입금 비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구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서울	지방세법	담배소비세	특별시세(목적세 등 제외) 10%
광역시 및 경기도	제151조에	45%	광역시·도세(목적세 등 제외)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	따른 전액	(도는 제외)	도·특별자치도세(목적세 등 제외) 3.6%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15)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간주하여 배분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절적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재원 배분방식을 변경하면서 초래된 시·도교육청별 교부액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추경 증액분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남의 6개 교육청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부산 등 10개 교육청이 과소 교부되었다.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강원의 4개 교육청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부산 등 12개 교육청이 과소 교부되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의 추경 증액분 초과 교부액은 1,465억 1,100만원으로 당초 교부액의 19.8%이며, 세계잉여금 정산분 초과 교부액은 1,742억 2,300만원으로 당초 교부액의 27.7%이다.

[2021년 보통교부금 추가재원 배분방식 변경으로 인한 초과 교부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추경 증액분 교부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		
	당초 교부액 (A)	본예산 교부비율 적용(B)	초과 교부액 (A-B)	당초 교부액 (C)	본예산 교부비율 적용(D)	초과 교부액 (C-D)
서울	738,959	592,448	146,511	628,762	454,539	174,223
부산	330,887	364,580	△33,693	274,705	296,204	△21,499
대구	270,391	287,137	△16,746	223,507	240,184	△16,677
인천	335,956	325,853	10,103	276,195	263,002	13,193
광주	202,525	191,081	11,444	163,032	157,388	5,644
대전	188,376	189,309	△933	152,439	154,589	△2,150
울산	149,976	154,342	△4,366	120,972	128,241	△7,269
세종	75,167	81,924	△6,757	59,042	68,813	△9,771
경기	1,262,386	1,368,584	△106,198	1,113,799	1,150,795	△36,996
강원	341,608	293,317	48,291	254,200	240,834	13,366
충북	271,563	249,573	21,990	211,058	218,641	△7,583
충남	331,478	348,796	△17,318	268,381	298,347	△29,966
전북	333,390	342,481	△9,091	261,894	271,759	△9,865
전남	369,787	362,569	7,218	289,712	304,001	△14,289
경북	427,696	433,081	△5,385	340,613	359,255	△18,642
경남	447,730	492,800	△45,070	370,764	402,483	△31,719

자료: 교육부

추가재원 배분방식이 변경된 2017년 이후 교부금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교육청 및 초과 교부액은 서울 7,904억 2,900만원, 인천 625억 9,600만원, 광주 332억 4,300만원, 강원 915억 6,000만원 규모이다. 배분방식 변경으로 교부금을 적게 교부받은 교육청에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이 해당된다.

[2017~2022년 보통교부금 추가재원 배분방식 변경으로 인한 초과 교부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추경 증액분	정산분	정산분	추경 감액분	정산분	추경 증액분	정산분	추경 증액분	정산분	
서울	52,024	24,041	74,925	△63,328	1,122	146,511	16,734	364,177	174,223	790,429
부산	△5,411	△1,842	△7,470	13,831	△245	△33,693	△3,848	△44,940	△21,499	△105,117
대구	△1,889	△681	△2,911	8,105	△144	△16,746	△1,913	△34,859	△16,676	△67,714
인천	2,822	3,098	8,235	△3,649	65	10,103	1,154	27,576	13,192	62,596
광주	2,438	1,555	2,692	△3,701	66	11,444	1,307	11,798	5,644	33,243
대전	657	970	960	1,731	△31	△933	△106	△4,494	△2,150	△3,396
울산	△1,424	158	△404	1,672	△30	△4,366	△499	△15,195	△7,269	△27,357
세종	△2,913	△2,806	△11,015	1,603	△28	△6,757	△772	△20,423	△9,770	△52,881
경기	17,114	△1,411	△20,784	20,353	△361	△106,198	△12,130	△77,333	△36,996	△217,746
강원	△1,808	1,176	6,559	△9,651	171	48,291	5,516	27,940	13,366	91,560
충북	△2,269	△936	△1,463	△2,768	49	21,990	2,512	△15,852	△7,584	△6,321
충남	△8,114	△1,918	△2,147	3,423	△61	△17,317	△1,978	△62,636	△29,965	△120,713
전북	△4,807	△3,942	△5,421	4,161	△74	△9,091	△1,038	△20,622	△9,866	△50,700
전남	△13,663	△4,537	△7,967	4,040	△71	7,217	824	△29,868	△14,289	△58,314
경북	△14,817	△5,288	△12,129	9,021	△160	△5,385	△615	△38,968	△18,642	△86,983
경남	△17,940	△7,637	△21,660	15,157	△268	△45,070	△5,148	△66,301	△31,719	△180,586

자료: 교육부

따라서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추경 증액분, 세계잉여금 정산액) 배분도 본예산 배분 비율대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1-5. 특별교부금 운용: 특별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으로 교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현안수요 및 재난지원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지는 교부금이다.¹⁶⁾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나. 분석의견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로 포착하여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이 비해 그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는 2017. 12.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3항)의 개정(시행 2018. 1. 1.)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96%에서 97%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동 개정법에서는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의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 및 국회·재정당국의 통제 미흡¹⁷⁾, 지역 현안¹⁸⁾ 및 재난안전관리¹⁹⁾ 특별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등을 종합할 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8년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축소되면서 특별교부금 규모는 2017년 1조 7,826억원에서 1조 5,029억원 규모로 15.6%(2,797억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연동(내국세 20.79%의 3%)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2021년 1조 7,154억원 규모에 도달하였다. 2022년에는 2조 3,532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8년 대비 56.6%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 예산액: 2017~2022]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6
보통교부금	448,084	509,499	588,011	520,434	586,217	788,644
특별교부금	17,826	15,029	17,294	14,997	17,154	23,532
국가시책	10,696	9,018	10,376	8,998	10,292	14,119
지역현안	5,348	4,508	5,189	4,499	5,146	7,060
재난안전관리	1,783	1,503	1,729	1,500	1,715	2,353

주: 세계잉여금 및 정산분을 합한 최종액 기준

자료: 교육부

17)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절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2016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에 80% 이상을 교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집행규모가 크지 않다.

19)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1~2016년 간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1.9~37.2%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재정운용 평가 포함)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여전히 2022년 기준 1조 4,119억여원의 예산이 5개 정책사업, 20개 세부사업, 99개 내역사업으로 세분화²⁰⁾되어 추진되고 있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경우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 학교교육 시설 개선 사업 등 학교시설 신·증축, 보수 사업에 96.1%를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관련 사업은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교육기관 등 시설비”(2021년 4조 4,987억원)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부분을 시설 관련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포착하지 못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¹⁾

[2021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

(단위: 백만원, %)

구분	학교시설 관련 사업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합계
금액	522,367	3,934	17,275	543,576
비중	96.1	0.7	3.2	100.0

주: 교부통지액 기준(감교부 이전)이므로 최종 교부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교육부

2017. 12.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18. 1. 1. 시행) 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2017년 55.1%) 기존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

20) 다만, 2017년의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에 비해 사업수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류체계의 변경 때문이며 실제로 사업수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21)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교육청(학교)이 신청하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교부(2021년 기준 792건), 신청 점검사항은 3년 이내 특교지원 여부, 교특예산으로 예산 편성 중 또는 이미 사업 완료(진행) 여부, 보통교부금 산정에 반영여부, 재정투자 심사 여부, 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 대응투자 확약서 징구여부, 개축심의위원회 결과, 재정지원 결격사유 여부의 7개 항목이다.

획 하에 보통교부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특별교부금의 용도가 확대되자 향후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2018년부터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보강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편성 및 집행실적: 2017~2021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통교부금 내진보강 수요	1,000	1,700	2,500	2,500	1,8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783	1,503	1,730	1,500	1,732
- 재해복구	800	8	32	67	0
-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983	0	0	0	0
- 내진보강	0	1,495	1,698	350	1,146
- 코로나19 대응	0	0	0	1,083	586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실행률)	(61.7)	(29.7)	(68.3)	(87.0)	(30.3)

주: 2017년은 포항지진 피해 지원으로 재해복구 수요가 많았음

자료: 교육부

2016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반영되는 내진보강 예산이 사업 초기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적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2018년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보강에 한정하여 운영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실행률은 2018년 29.7%, 2019년 68.3%, 2020년 87.0%, 2021년 30.3%로, 코로나19 대응 수요로 교부금 대부분을 집행한 2020년을 제외하면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이는 교육부가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위한 목표량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하향식 배분구조(Top-down)로 운영하면서, 각 학교가 집행 가능한 것보다 과다한 물량을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²³⁾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중 소액을 재해복구

22) 다만, 2020~2021년은 코로나19 대응 수요로 집행하였다.

23) 내진보강 사업이 적체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최종 집행 완료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되며, 예산편성 이후 내진성능평가에 4개월, 내진설계에 3개월, 공사발주 및 공사에 2개월이 소요(총 9개월)된다.

에 지원하고 나머지를 재해예방 사업에 교부하여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로 포착하여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교부금에 편성하는 비중이 높아 특별교부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사업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고 특별교부금에도 편성한 결과, 특별교부금 사업이 학교 등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물량보다 과다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 특별교부금 운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교육부 소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의 60%이며 2022년 최종액은 1조 4,119억원 규모이다. 반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유사한 성격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 비중은 10%이며 2022년 최종액은 2,178억원 규모로 교육부 소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15.4% 수준이다.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최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지방교부세(행정안전부)		
사업명	산출신	예산	사업명	산출식	예산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788,644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704,142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	23,532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 중 3%	21,778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60%	14,119	-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의 10%	2,178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30%	7,060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40%	8,711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10%	2,353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50%	10,889

자료: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육부 각 실·국에서 제출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 부의하고,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별 예산을 확정·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즉, 일반 예산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 국회 심의를 통한 예산 결정 등을 통해 사업 내용 및 예산 규모가 결정되지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사업은 국정과제 등 정부의 교육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사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업무 프로세스]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를 정하고 있어 일반 예산사업과는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부적절한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대한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정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1년 사업 중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첫째, ‘**디지털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은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PM)²⁴⁾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21년 11억원을 편성하여 교부(2021. 8.)하였으며 2,356만원이 집행되고 10억 7,6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14.)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10억원이 교육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2020. 10. ~ 2021. 6. 동안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2021. 4.)되었으며, 타당성 조사가 2021. 6월 착수되어 2022. 6월 완료 계획이다.²⁵⁾ 동 사업의 2021년 예산(교육부 일반회계)은 ISP가 완료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2년 예산(교육부 일반회계)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다.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예산 현황]

구분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명: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명: 디지털 미래교육체제 구축)
2020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10억원	-
2021	ISP 진행 중으로 미편성 ※ 2020. 10. ~ 2021. 6. 추진	ISMP 수립 예산 11억원 ※ 8월 교부, 10.8억원(98.2%) 이월
2022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으로 미편성 ※ 2021.6. ~ 2022년 진행 중	-

자료: 교육부

24)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는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요청서(RFP) 마련, 비즈니스(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 분석,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5)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1차): (당초) '21. 6월 ~ 11월 → (변경) '21. 6월 ~ '22. 3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2차): (당초) '21. 6월 ~ '22. 3월 → (변경) '21. 6월 ~ '22. 6월

이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2021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디지털 미래교육체제 구축)으로 K-에듀 통합플랫폼 ISMP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인한 사업 보류 및 연기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3월 현재 조달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기술협상 및 계약이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ISMP 예산을 2022년 교육부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2021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것은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인 점, 사업의 시급성(2023년 개통)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ISMP 수립을 2021년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조사를 2021. 6.~2021. 11. 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ISMP 수립이 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였으며 향후 동 사업은 본 예산이 아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고(교육부 일반회계)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21년 1,364억 4,200만원을 편성·교부하였으며 교육청은 전액 집행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신규 도입(교육부 일반회계)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²⁶⁾에 근거하여 국가(증액교부금)가 47.5%, 교육청이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47.5%, 일반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일반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²⁷⁾와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²⁸⁾에 규정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전에 일반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이다.

교육부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1조 9,688억 8,300만원)의 배분 현황을 보면, 증액교부금으로 9,361억 8,600만원, 일반지자체가 974억 7,8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부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교육청 재원이라는 의미로 보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1,364억 4,2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은 7,987억 7,700만원 규모이다.

하여야 한다.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28)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담 비율	4.5%	4.5%	3.9%	3.6%	3.8%	3.1%	3.4%	3.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담 비율	2.9%	9.5%	6.9%	8.4%	9.9%	13.2%	10.3%	5.7%	12.0%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 (증액교부금)	시도 교육청	일반 지자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합계
2020 (2·3학년)	640,876 (47.5)	539,919 (40.0)	66,888 (5.0)	100,700 (7.5)	1,348,383 (100.0)
2021 (전학년)	936,186 (47.5)	798,777 (40.6)	97,478 (5.0)	136,442 (6.9)	1,968,883 (100.0)
2022 (전학년)	909,449	-	-	126,131	-

주: 1. 2020년, 2021년은 실집행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 안의 숫자는 비중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비용을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한 것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통교부금, 자체수입 등을 통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0년 1조 6,884억원, 2021년 1조 7,721억원 규모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은 2019년 1조 1,828억원에서 2021년 3조 121억원으로 2.5배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1조 8,514억원을 적립하였다.

[시·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 적립금]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순세계잉여금	20,577	22,360	21,741	16,884	17,7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11,828	23,056	30,12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	-	-	18,514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7%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하고 시도별 배분액은 총 소요액에 따라 6~8%로 차등 지원하였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과다 지원한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해당 교육청	특별교부금 산정 비율 (총 소요액 대비)
4,001억원~	경기도	8%
2,001억원~4,000억원	서울시	7%
0~2,000억원	그 외	6%

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회 심의 없이 결정되는 체계이고 부적절한 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국회보고 제도는 미비하고 보고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²⁹⁾는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해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³⁰⁾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³¹⁾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부일, 교부사업명, 교부액 등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운영사항을 매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교부금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지방교부세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또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보다 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교육부가 결정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국가시책 특별교부
금 교부에 대한 국회 보고내용을 내역사업별로 사업내용, 예산규모, 사업추진 필요
성,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배분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방안 등 교육부
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7.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³²⁾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학예 등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의 의결로 예산을 확정한다.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다른 법률,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시·도교육청 기금 재원은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달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최근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한 교육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 활용, 시·도교육청 보유재원 증가에 머물고 있으므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수입 호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사업(자본지출) 및 지방채 상환(상환지출) 지출을 확대하였다. 자본지출은 2017년 7.1조원 규모에서 2019년 11.2조원으로 3.1조원(43.7%) 확대되었으며 2021년까지 약 10조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상환지출은 2017년 2.4조원에서 2019년 6.0조원으로 3.6조원(150.0%) 확대되었으며,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이]: 2017~2021년]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세출결산액	656,114	100.0	716,127	100.0	804,011	100.0	777,055	100.0	838,102	100.0
-인건비	380,480	58.0	401,235	56.0	427,793	53.2	443,354	57.1	462,608	55.2
-물건비	21,693	3.3	23,870	3.3	26,296	3.3	30,369	3.9	24,909	3.0
-이전지출	32,412	4.9	33,188	4.6	31,919	4.0	32,251	4.2	36,202	4.3
-자본지출	70,945	10.8	76,868	10.7	111,644	13.9	98,875	12.7	101,956	12.2
-상환지출	23,568	3.6	40,831	5.7	59,966	7.5	3,011	0.4	12,039	1.4
-전출금등	126,684	19.3	138,940	19.4	145,066	18.0	155,775	20.0	163,624	19.5
-예비비및기타	331	0.1	1,195	0.2	1,327	0.2	1,491	0.2	4,649	0.6
-내부거래							11,928	1.5	32,115	3.8

주: 1.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처리를 위한 '내부거래' 세출목 신설

2. 2021회계연도는 가결산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교육부

2020년부터는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으로 전출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에서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2020년 1.2조원, 2021년 3.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이 대부분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 상 외부요인에 의한 변동성에 취약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33)에 근거

3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시작하였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2019. 12. 3, 시행 2020. 12. 4.)되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동법 제30조³⁴⁾에 근거하여 2021년 신설되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신설 이전에는 사도교육청이 증가하는 교부금을 시설비 투자에 지출하면서 시설비 과다 편성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 및 불용 등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증가하였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이 2015년 5조 7,626억원에서 2018년 7조 2,238억원까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이월액이 3조 7,330억원에서 4조 8,85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조 9,628억원에서 2조 2,36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추이: 2015~2021년]

(단위: 억원)

구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보조금 반환액	지방채 상환액	순세계 잉여금 ¹⁾
2015	623,605	565,979	57,626	37,330	405	264	19,628
2016	660,979	600,419	60,560	39,001	138	1,587	19,835
2017	724,435	656,114	68,320	46,056	113	1,574	20,577
2018	788,365	716,127	72,238	48,858	134	885	22,360
2019	873,873	804,011	69,862	47,599	293	230	21,741
2020	822,266	777,055	45,211	27,244	581	502	16,884
2021	880,760	838,102	42,658	24,501	335	101	17,721

주: 1)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1. 2021년은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2019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설하여 기금 전출금을 확대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기금 전출금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으므로 교육투자가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2021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 6,894억원이 조성되어 이 중 6,744억원(18.3%)이 사용되고 3조 121억원(81.6%)이 적립되어 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조 8,721억원이 조성되어 이 중 207억원(1.1%)이 사용되고 1조 8,514억원(98.9%)이 적립되어 있다.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2019~2021년]

(단위: 개, 억원)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9	6	11,828	0	11,828	-	-	-	-
2020	13	23,056	0	23,056	-	-	-	-
2021	14	36,894	6,744	30,121	13	18,721	207	18,514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금(연도말 현재액)은 시·도교육청의 보유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적립액을 합한 시·도교육청 연도말 보유재원은 2017년 2조 577억원(교부금 대비 비중 4.4%)에서 2021년 6조 6,356억원(교부금 대비 비중 11.0%) 규모로 증가하였다.

[시·도교육청 연도말 보유재원 추이: 2017~2021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A)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연도말 보유재원(B)	20,577	22,360	33,569	39,940	66,356
순세계잉여금	20,577	22,360	21,741	16,884	17,7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11,828	23,056	30,12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	-	-	18,514
B/A	4.4	4.3	5.5	7.5	11.0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추경과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합한 최종액
자료: 교육부

특히, 코로나19로 방역, 원격수업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한 2020~2021년에도 보유재원은 증가하였으며 2020~2021년 동안 교육재난지원금(2020년 1,073억 9,300만원, 2021년 4,887억 6,200만원) 등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여 교부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20조 9,604억원(34.7%) 증가한 81조 2,975억원에 달하므로 보유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대부분 상환하여 지방채가 2016년 13.4조원에서 2021년 0.4조원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시·도교육청 재정여력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채무 규모가 2016년 591.9조원(GDP 대비 34.0%)에서 2021년 939.1조원(GDP 대비 45.6%)로 증가³⁵⁾하여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35) [중앙정부 채무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채 추이: 2013~2021년]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행	9,583	38,023	61,072	31,529	11,661	3,359 ¹⁾	-	-	-
상 환	원금	353	20,484	1,144	4,561	24,867	42,801	61,985	3,178
	이자	976	1,483	1,438	2,618	2,893	2,576	1,279	353
	계	1,329	21,967	2,582	7,179	27,760	45,377	63,264	3,531
잔액	29,429	46,968	106,896	133,864	120,658	81,216	19,231	16,053	3,683

주: 1) 2018년 지방채 발행분은 2017년 발행이 결정된 지방채가 이월되어 발행된 것

자료: 교육부

사도교육청은 최근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시기에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 등의 지출을 확대하거나 기금에 적립해 두고 있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높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되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한 교육투자로 이어지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 및 안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금이 확대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기 하강국면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일관된 기준 미비, 유사 기금의 설치, 적정 교육지출 수준에 대한 합의 부재 등으로 기금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
국가채무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981.9
GDP 대비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4	45.6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와 감사원 등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하여 적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호조로 교부금이 증가하는 경우 지나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기 하강국면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4항·제5항·제6항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성 및 사용 여부, 추진 사업, 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조례의 기금 조성 및 사용 요건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별로 요건에 차이가 있다. 기금 조성 요건의 경우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경우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수입 포함 범위, 증가율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시도교육감이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시·도교육청도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요건의 경우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는 공통적이지만, 그 외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 사용 범위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포괄 범위가 다르며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규모 상한도 적립금의 50%, 70%, 85% 등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시·도교육청도 있으며 교육청별로 적립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21년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수입 증가율은 2018년 9.7%, 2019년 8.5%, 2021년 8.2%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타 교육청(부산시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0%, 2019년 3.2%, 2020년 3.0%, 2021년 3.6%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타 교육청(부산시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도교육청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규모: 2017~2021년]

(단위: 억원)

교육청	2019		2020		2021	
		순증		순증		순증
서울	0	0	0	0	0	0
부산	3,900	3,900	4,697	797	4,742	45
대구	0	0	0	0	850	850
인천	0	0	1,670	1,670	4,561	2,891
광주	0	0	248	248	457	209
대전	290	290	924	634	1,389	465
울산	0	0	750	750	755	5
세종	1,738	1,738	1,820	82	2,356	536
경기	0	0	1,484	1,484	1,677	193
강원	2,100	2,100	3,118	1,018	5,193	2,075
충북	1,530	1,530	1,939	409	3,575	1,636
충남	0	0	642	642	2,070	1,428
전북	0	0	1,203	1,203	1,876	673
전남	0	0	0	0	0	0
경북	2,270	2,270	3,202	932	3,223	21
경남	0	0	1,360	1,360	4,172	2,812
제주	0	0	0	0	0	0
합계	11,828	11,828	23,056	11,228	36,895	13,839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규모: 2018~2021년]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계	788,365 (8.8)	22,360 (2.8)	873,873 (10.8)	21,741 (2.5)	822,266 (△5.9)	16,884 (2.1)	880,760 (7.1)	17,721 (2.1)
서울	109,126 (9.7)	7,699 (7.0)	118,366 (8.5)	3,811 (3.2)	112,811 (△4.7)	3,161 (3.0)	122,024 (8.2)	4,582 (3.6)
부산	44,758 (6.4)	1,364 (3.0)	50,334 (12.5)	1,096 (2.2)	49,088 (△2.5)	805 (1.6)	52,859 (7.7)	667 (1.3)
대구	36,956 (8.4)	558 (1.5)	39,350 (6.5)	664 (1.7)	38,240 (△2.8)	877 (2.3)	40,697 (6.4)	859 (2.1)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수입 (증가율)	순세계 잉여금 (수입대비 비중)
인천	42,682 (9.4)	910 (2.1)	46,364 (8.6)	552 (1.2)	46,107 (△0.6)	629 (1.2)	50,729 (10.0)	541 (1.1)
광주	22,833 (5.0)	516 (2.1)	25,895 (13.4)	691 (2.7)	24,535 (△5.3)	711 (2.7)	27,393 (11.6)	575 (2.1)
대전	21,916 (4.8)	428 (2.0)	24,348 (11.1)	416 (1.7)	23,851 (△2.0)	213 (0.9)	25,572 (7.2)	398 (1.6)
울산	19,063 (5.1)	506 (2.7)	21,000 (10.2)	402 (1.9)	20,137 (△4.1)	478 (2.4)	20,956 (4.1)	368 (1.8)
세종	11,479 (13.2)	356 (3.1)	14,657 (27.7)	104 (0.7)	9,419 (△35.7)	95 (1.0)	10,688 (13.5)	54 (1.0)
경기	168,780 (11.7)	1,983 (1.2)	190,802 (13.0)	7,583 (4.0)	183,956 (△3.6)	4,716 (2.6)	198,391 (7.8)	5,703 (2.9)
강원	33,521 (5.3)	677 (2.0)	36,450 (8.7)	911 (2.5)	33,499 (△8.1)	493 (1.5)	36,273 (8.3)	546 (1.5)
충북	30,233 (9.1)	1,238 (4.1)	33,493 (10.8)	810 (2.4)	30,286 (△9.6)	950 (2.1)	33,064 (9.2)	335 (1.0)
충남	40,887 (11.0)	818 (2.0)	43,852 (7.3)	301 (0.7)	40,535 (△7.6)	411 (1.0)	44,130 (8.9)	431 (1.0)
전북	38,299 (15.7)	849 (2.2)	41,711 (8.9)	560 (1.3)	38,446 (△7.8)	531 (1.3)	41,076 (6.8)	326 (0.8)
전남	44,130 (5.2)	1,325 (3.0)	47,207 (7.0)	1,460 (3.0)	43,166 (△8.6)	757 (1.8)	44,512 (3.1)	950 (2.1)
경북	51,300 (3.4)	1,264 (2.5)	57,183 (11.5)	892 (1.6)	52,018 (△9.0)	1,009 (1.9)	55,594 (6.9)	514 (0.9)
경남	58,658 (7.7)	1,122 (1.9)	67,168 (14.5)	1,256 (1.9)	62,222 (△7.4)	711 (1.1)	62,841 (1.0)	737 (1.1)
제주	13,744 (12.1)	747 (5.4)	15,693 (14.2)	232 (1.2)	13,950 (△11.1)	337 (2.4)	13,961 (0.1)	135 (1.0)

주: 2021년은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또한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상환이자 발생하고 시도교육청은 기금을 은행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지방채 이자율이 은행예금 이자율 보다 높으므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교육청별 지방채 잔액 규모: 2017~2021년]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13,261	11,691	3,162	3,162	-
부산	4,014	2,227	-	-	-
대구	7,488	5,214	1,416	374	374
인천	5,736	4,085	1,310	1,302	-
광주	2,507	1,990	577	569	-
대전	2,499	1,281	-	-	-
울산	2,262	1,753	654	554	-
세종	6,906	4,785	609	349	-
경기	32,753	24,495	8,009	7,650	2,701
강원	3,577	977	-	-	-
충북	2,783	1,656	-	-	-
충남	7,291	4,503	720	546	101
전북	5,346	2,831	-	-	-
전남	8,540	5,671	1,889	1,547	507
경북	5,821	2,780	-	-	-
경남	9,510	5,048	885	-	-
제주	364	229	-	-	-
계	120,658	81,216	19,231	16,053	3,683

자료: 교육부

그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³⁶⁾에서 정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안전 관리 이외에도 대부분의 교육 시설비에 사용할 수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복되고 있다. 사용 용도가 중복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비해

3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사용 요건, 사용 절차 등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 감소 등의 요건이 없으며 기금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남, 제주의 경우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서울	3,184	0	3,184
부산	2,250	0	2,250
대구	2,000	0	2,000
인천	1,389	0	1,389
광주	250	0	250
대전	620	0	620
울산	636	0	636
세종	411	0	411
경기	0	0	0
강원	0	0	0
충북	0	0	0
충남	0	0	0
전북	1,901	0	1,901
전남	1,240	0	1,240
경북	3,191	0	3,191
경남	259	0	259
제주	1,389	207	1,182
합계	18,721	207	18,514

자료: 교육부

이상을 종합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사용은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인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교육자치 사항이지만, 조성 및 사용 요건, 조성 규모 등이 교육청별로 다르고 2021년에 신설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중복된다. 따라서 교부금이 확대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기 하강국면에 대비한 재정여

력을 확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학령인구 감소, GDP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에 대한 합의가 없어 현재 교부금의 과부족, 미래 지출을 위해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재정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운용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20. 10. 20.)³⁷⁾을 통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안정화 지원 항목(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신설하였으나 아직까지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³⁸⁾

정리하면,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금이 확대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기 하강국면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일관된 기준 미비, 유사 기금의 설치, 적정 교육지출 수준에 대한 합의 부재 등으로 기금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우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 제6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9. 재정결합 보전	가. 지방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Σ(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8) 교육부는 2021년말 기준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이 3,68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지방채 상환 수요를 3조 9,127억원으로 산정(「202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교육부, 2022. 3.)하면서 재정안정화 지원 수요를 산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했다라고 형평성 있는 교육재정 배분을 위해 당초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원리금을 상환일정에 따라 만기상환까지 시·도교육청에 산정·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 조직·인사·재정운용은 교육부 소관이며, 총 38개 국립대가 거점국립대¹⁾, 지역중심국립대 및 교원대학으로 분류된다.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교명
국립 대학	거점 국립대	9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지역중심 국립대 등	18개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 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지 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교원대학	11개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자료: 교육부

정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다른 공모 방식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 예산 중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국립대 지원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규모이다.²⁾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9개 국립대학(서울대학교 제외)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을 1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지원하며, 2021년 총 3조 1,744억 6,800만원(예산현액)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조 62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99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예산현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립대학 인건비(1조 7,214억 6,700만원)이며 다음으로 국립대학 시설확충(7,717억 3,7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립대학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인건비	1,721,499	1,721,499	0	△32	1,721,467	1,635,216	0	86,251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대상)	23,559	23,559	0	△1,742	21,817	21,698	0	119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199,755	119,755	0	1,773	121,528	120,089	1,245	194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55,906	155,906	0	0	155,906	155,896	0	10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49,327	149,327	166	0	149,493	149,128	0	365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경비지원	19,255	19,255	0	0	19,255	19,233	0	22
국립대학 조교연구성과금 지원	1,958	1,958	0	0	1,958	1,945	0	13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823	8,823	0	0	8,823	7,973	0	85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7,940	7,940	0	0	7,940	7,940	0	0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13,631	13,631	0	0	13,631	13,630	0	1
국립대학 시설확충	770,967	770,967	770	0	771,737	754,214	595	16,928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및 승선실습지원	30,913	30,913	0	0	30,913	25,708	0	5,205
국립대학육성사업	150,000	150,000	0	0	150,000	150,000	0	0
합 계	3,253,533	3,173,533	936	△1	3,174,468	3,062,670	1,840	109,958

자료: 교육부

2) [교육부 고등교육 부문 예산 규모(2020년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대학 재정지원		교수·학생 지원		합 계
	국립대(법인)	사립대	국가장학금	학술연구 역량강화	
고등교육 부문	4.0	1.8	4.2	0.9	10.8

자료: 교육부

대학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은 14개에 2021년 예산현액 2조 2,312억 9,800만원 규모이다. 신청·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학, 국립대법인, 사립대학 모두에 지원되며, 이 중 국립대학과 국립대법인에 지원되는 예산 비중은 약 18.2%에 해당한다(2020년 기준).

[2021회계연도 대학 공모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학혁신지원(R&D)	695,122	695,122	0	0	695,122	695,122	0	0
전문대학 혁신지원	412,986	412,986	26,816	0	439,802	439,802	0	0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430,641	430,641	0	0	430,641	397,127	33,114	4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100,493	100,493	0	0	100,493	92,800	7,693	0
대학 내 양성평등 사업(R&D)	421,610	421,610	0	0	421,610	421,610	0	0
대입전형 운영 지원	71,930	71,930	0	0	71,930	71,930	0	0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3,497	13,497	0	0	13,497	13,154	15	220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¹⁾	389	389	0	0	389	388	0	1
대학창업 활성화	17,813	17,813	0	0	17,813	17,813	0	0
의과학자 육성지원(R&D)	138	138	0	0	138	138	0	0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5,037	5,037	0	0	5,037	5,037	0	0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4,130	24,130	0	0	24,130	24,130	0	0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3,216	3,216	0	0	3,216	3,216	0	60
학교기업 지원사업	7,480	7,480	0	0	7,480	7,480	0	0
합 계	2,204,482	2,204,482	26,816	0	2,231,298	2,189,747	40,822	681

주: 1)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운영(349백만원)이 공모 지원 사업임

자료: 교육부

국립대학은 교육부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등록금 등을 수입으로 국립대학 대학회계를 운용한다. 2020회계연도 국립대학 대학회계 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9.4%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등록금 등의 교육활동수입 비중은 2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학 대학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			금액	비중
세입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2,865,414	49.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4,055	1.1
	자체수익금	교육활동수입	1,393,288	24.0
		기타 등	783,728	13.5
	세계잉여금		644,707	11.1
	내부거래 및 기타		49,060	0.9
	합 계		5,751,192	99.1
세출	인건비		2,372,062	46.9
	물건비		1,139,487	22.5
	이전지출		403,267	8.0
	자산취득 및 운용		1,132,987	22.3
	예비비 및 기타		13,013	0.3
	합 계		10,798,995	198.8
결산잉여금			739,436	-

주: 2020년 기준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2018~2021년 동안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재정 확대가 시설확충 등으로 편중된 것에 더해 증가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확보, 취업 등의 성과 달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대학 지원 재정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5.9% 증가하였다.

국립대학 대학회계의 세출 내역을 통해 국립대학의 교육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8~2021년³⁾ 동안 건설비 등을 포함하는 자산취득 및 운용 지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대의 대학회계 세출은 2018~2021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나, 이 중 자산취득 및 운용은 동 기간 연평균 12.3% 증가하였다. 거점국립대의 대학회계 세출의 경우 2018~2021년 동안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이 중 자산취득 및 운용은 동 기간 연평균 24.6% 증가하였다.

[2018~2021년 국립대학 대학회계 세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립대 전체]	4,794,669	4,835,498	5,060,816	5,303,871	3.4
인건비	2,263,485	2,283,133	2,372,062	2,436,805	2.5
물건비	1,212,396	1,252,361	1,139,487	1,286,040	2.0
이전지출	527,364	374,353	403,267	459,359	△4.5
자산취득 및 운용	782,000	913,180	1,132,987	1,107,519	12.3
예비비 및 기타	9,425	12,472	13,013	14,148	14.5
[거점국립대]	2,421,994	2,464,965	2,630,965	2,891,091	6.1
인건비	1,198,369	1,212,493	1,262,092	1,329,898	3.5
물건비	620,096	628,994	583,272	687,701	3.5
이전지출	296,850	202,544	220,505	283,754	△1.5
자산취득 및 운용	301,761	415,144	560,037	583,737	24.6
예비비 및 기타	4,918	5,841	5,059	6,001	6.9

주: 1.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포함, 이전지출은 보전금, 민간이전, 대학부담금,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포함, 자산취득 및 운용은 건설보상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포함

2. 2021년 거점국립대 세출 내역은 경상국립대학의 결산액에 (구)경남과기대의 내역이 포함됨 (2021년 (구)경남과기대, (구)경상대 통합)

자료: 교육부

이는 교육부가 시설비, 기자재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지원사업은 국립대학

3) 국립대학 대학회계 작성방법이 2018년부터 변경되어 지출 항목별로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해서 2018~2021년 데이터로 작성하였다. 다만, 일관성 있는 비교가 가능한 총액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자료를 작성하였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7~2021년 동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5.9%,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연평균 증가율은 9.5%, 국립대학 육성사업 증가율은 연평균 63.5%로 전체 국립대학 지원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 3.3% 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추경예산 기준) 추이: 2017~2021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국립대학 인건비	1,511,156	1,561,843	1,620,392	1,656,029	1,721,499	4.0	3.3
국립대학 기본경비 (총액 대상)	21,944	23,355	23,733	23,788	23,559	△1.0	1.8
국립대학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118,777	115,855	117,336	118,046	119,755	1.4	0.2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12,344	112,344	119,444	151,660	155,906	2.8	8.5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9,480	59,480	84,960	121,679	149,327	22.7	25.9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19,255	19,255	19,255	19,255	19,255	0.0	0.0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64	1,959	1,953	1,955	1,958	0.2	△0.1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8,888	9,192	9,313	8,111	8,823	8.8	△0.2
교육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	-	-	3,300	-	△100.0	-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	-	-	35,214	-	△100.0	-
국립대학 시설확충	537,212	523,031	620,271	676,668	770,967	13.9	9.5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94,572	96,092	42,427	55,829	30,913	△44.6	△24.4
국립대학육성사업	21,000	80,000	150,400	142,500	150,000	5.3	63.5
합 계	2,506,592	2,602,406	2,809,484	3,014,034	3,151,962	4.6	5.9

자료: 교육부

또한 확대된 국립대학 재정지원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여 2018년 이후 세출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 대비 세출결산 집행률은 2017년 93.1%에서 2021년 84.8%까지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 및 불용액을 포함하는 결산잉여금의 세입 대비 비율은 2017년 6.9%에서 2021년 15.2%까지 상승하였다.

[2017~2021 국립대학 대학회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입결산(a)	5,105,814	5,290,830	5,529,681	5,800,251	6,253,588
자체수입(등록금 등)(b)	2,391,917	2,250,125	2,154,439	2,177,056	-
세출결산(c)	4,755,273	4,794,649	4,835,478	5,060,791	5,303,865
결산잉여금(d)	350,527	496,170	694,189	739,534	949,716
이월액	150,951	255,829	402,511	436,690	618,844
불용액(순세계잉여금)	199,576	240,341	291,678	302,844	330,872
정부지원	12,424	30,659	57,752	71,255	101,453
자체수입(e)	175,753	195,127	221,301	228,138	231,407
수입대체	11,388	14,536	11,753	3,371	5,740
세입 대비 세출 집행비율(c/a)	93.1	90.6	87.5	87.3	84.8
세입 대비 결산잉여금 비율(d/a)	6.9	9.4	12.6	12.8	15.2
자체수입 중 불용액 비율(e/b)	7.3	8.7	10.3	10.5	-

자료: 교육부

결산잉여금의 증가는 시설확충 등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액 발생, 신규 재정지원사업의 사업규모 확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보조금잔액 증가, 불용액 증가 등에 기인한다. 특히,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포함하는 자체수입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비중이 상승(2017년 7.3% → 2020년 10.5%)하고 있다.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대학 시설확충은 확충사업, 개보수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확충사업의 신규사업은 2018년 1,128억원(10개 사업)에서 2021년 3,104억원(18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신규사업 확대와 함께 대체공간 확보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요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수급이 불안정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신규사업의 이월액 규모는 2018년 50억 3,000만원에서 2021년 794억 1,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8~2021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신규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신규사업	2019년 신규사업	2020년 신규사업	2021년 신규사업	합 계
총 사업비		10개 사업, 1,128억원	19개 사업 2,495억원	25개 사업 2,994억원	18개 사업 3,104억원	-
2018	교부액	10,441				10,441
	집행액	5,375				5,375
	이월액	5,030				5,030
	불용액	36				36
2019	교부액	30,694	12,551			43,245
	집행액	23,102	7,041			30,143
	이월액	6,515	5,041			11,556
	불용액	76	454			530
2020	교부액	52,580	50,099	13,761		116,440
	집행액	37,448	38,179	9,746		85,373
	이월액	14,820	12,763	3,455		31,038
	불용액	263	114	516		893
2021	교부액	12,401	110,988	113,787	15,725	252,901
	집행액	8,686	71,325	65,754	11,198	156,963
	이월액	1,635	37,867	35,776	4,138	79,416
	불용액	2,080	1,318	1,852	389	5,639

자료: 교육부

시설비 등은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국립대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88.7%)이 사립대(90.5%) 보다 낮으며, 거점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97.6%)은 주요 사립대(100.4%), 서울대(136.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추이: 2017~2021년]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립대	81.3	83.5	85.1	86.6	88.7
거점국립대	87.4	90.2	92.2	94.6	97.4
서울대	131.7	132.6	135.4	136.2	136.1
사립대	87.5	88.8	87.9	88.8	90.5
주요사립대	96.1	97.7	97.5	99.6	100.4

- 주: 1. 국립대와 거점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등 국립대법인 제외
 - 국립대: 37개교(교육부소속 국립대 중 방송통신대와 한국복지대 제외)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제주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 거점국립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100
 - 교원 법정정원은 편제정원 기준
 2. 사립대: 전체사립대, 전문대학 제외한 대학(대학교,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3. 서울지역 주요사립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자료: 교육부

국립대 직원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원을 결정⁴⁾하고 인건비가 국고(교육부 일반회계)로 지원되며, 비공무원은 「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원을 증원하지만 법정정원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수 증가율은 비전임 교원 수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2017~2021년 동안 국립대 전임교원은 6.5% 증가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0.7% 증가하였으며, 거점국립대 전임교원은 9.4% 증가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1.6% 증가하였다.

4) 공무원의 경우 교육부가 국립대의 수요를 검토(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는 이를 심사한 후 국립대별 정원을 확보하여 교육부에 통보한다.

[국립대학 교원 추이: 2017~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증가율
[국립대]						
전임	13,792	14,177	14,196	14,537	14,686	6.5
비전임	18,795	19,436	19,046	20,002	20,812	10.7
[거점국립대]						
전임	7,758	8,118	8,124	8,427	8,485	9.4
비전임	10,973	11,184	11,286	11,714	12,241	11.6

자료: 교육부

한편, 2018년 이후 이루어진 국립대 지원 확대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국립대 경쟁력 강화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 지표 중 취업률을 살펴 보면, 국립대의 취업률은 2021년 56.6%로 사립대 62.2%, 주요 사립대 6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거점국립대의 경우 55.0%로 주요 사립대 67.9%에 비해 12.9%p 낮은 뿐만 아니라 2017~2021년 동안 감소폭(2.0%p)이 주요 사립대 감소폭(0.4%p)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취업률 추이: 2017~2021년]

(단위: %,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증가
국립대	60.9	58.6	60.1	58.9	56.6	△4.3
거점국립대	57.0	56.1	58.1	57.7	55.0	△2.0
서울대	70.6	68.3	70.1	70.9	71.1	0.5
사립대	65.5	63.9	65.4	64.4	62.2	△3.3
주요사립대	68.3	66.2	68.6	69.9	67.9	△0.4

자료: 교육부

특히, 거점국립대의 지역학생 신입생 비율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졸업후 지역기업 취업 비율이 낮은 대학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학생 신입생 비율의 경우 1번 대학은 2016년 64.4%에서 2021년 57.9%로 하락하였으며 5번 대학은 동기간 71.3%에서 61.7%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1번 대학, 2번 대학, 3번 대학의 지역기업 취업률이 10~20% 대의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거점국립대의 지역학생 신입생 및 지역기업 취업 비율: 2016~2021년]

(단위: %)

구분	지역학생 신입생 비율						졸업후 지역기업 취업 비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1	64.4	63.6	61.3	58.0	58.8	57.9	14.8	13.8	14.0	14.3	-
2	74.7	77.4	74.6	76.0	76.0	74.9	-	21.6	22.7	23.6	-
3	73.1	75.1	72.2	70.8	68.0	70.4	24.4	21.5	23.8	22.0	-
4	84.9	85.2	83.5	82.4	82.1	80.8	-	52.5	55.0	55.0	-
5	71.3	71.1	68.7	63.7	64.3	61.7	-	-	43.2	44.5	43.7
6	76.4	73.4	67.4	68.1	67.3	70.1	-	59.5	55.4	56.5	-
7	59.5	57.0	54.0	52.0	50.0	51.7	-	42.6	43.4	43.3	-
8	49.5	50.7	48.1	47.9	43.7	44.0	-	-	43.9	42.4	44.0

- 주: 1. 지역학생 신입생 비중: 대학 전체 신입생 중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의 고교졸업자 비율
 2. 졸업후 지역기업 취업 비중: 대학 전체 졸업생 중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의 기업에 취업한 학생 비율
 3. 2020년 취업률은 2022년 1월, 2021년 취업률은 2023년 1월 공시예정
 자료: 교육부

이상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2018~2021년 동안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나 국립대학 재정지원이 시설확충 등으로 편중되어 확대되었으며 국립대학은 증가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전임교원 확보, 취업 등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원 투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립대학은 교육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집행 부진 및 보조금 관리 부실

가. 현 황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¹⁾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로 학교를 제로에너지·친환경 그린스쿨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을 결합한 융합 뉴딜 방식의 미래형 ‘스마트 그린 스쿨’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942억 5,200만원을 전액 사·도교육청에 교부하였다.

[2021회계연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94,252	94,252	0	0	94,252	94,252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미래학교가 4대 핵심요소인 ①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③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용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유·초·중등교육시설 중 2,835동을 선별²⁾하여 2021~2025년 동안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중기재정계획 하에 편성되었다. 전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04-300

2) 40년 경과 노후시설(7,980동) 중 적정규모육성기준 미만 학교 및 합숙소 등 교육용도 외 시설 제외한 6,088동의 약 50%에 대해 선별하여 사업 추진

체 물량 중 75%(2,126동)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25%(709동)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021~2025년 재정사업 총사업비는 13.0조원(국비 30%, 시·도교육청 지방비³⁾ 70%), BTL 민간투자비는 총 4.3조원 규모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연차별 투자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소계	2026 이후	계 (전체)
재 정 사 업	총사업비	3.5502	2.3546	2.3546	2.3546	2.3546	12.9686	-	12.9686
	(물량, 동)	582	386	386	386	386	2,126	-	2,126
	계(A)	0.3345	2.3657	2.7337	2.3547	2.3547	10.1433	2.8253	12.9686
	국비 (30%)	0.0943	0.7100	0.8260	0.7064	0.7064	3.0431	0.8473	3.8904
	지방비 (70%)	0.2402	1.6557	1.9077	1.6483	1.6483	7.1002	1.9780	9.0782
민 자 사 업	민자한도액	1.0919	0.8052	0.8052	0.8052	0.8174	4.3249	-	4.3249
	(물량, 동)	179	132	132	132	134	709	-	709
	계(B)	-	-	0.0699	0.1214	0.1729	0.3642	5.1709	5.5351
	국비 (30%)	-	-	0.0210	0.0364	0.0519	0.1093	1.5513	1.6606
	지방비 (70%)	-	-	0.0489	0.0850	0.1210	0.2549	3.6196	3.8745
합 계	(물량, 동)	761	518	518	518	520	2,835	-	2,835
	계 (C=A+B)	0.3345	2.3657	2.8036	2.4761	2.5276	10.5075	7.9962	18.5037
	국비 (30%)	0.0943	0.7100	0.8470	0.7428	0.7583	3.1524	2.3986	5.5510
	지방비 (70%)	0.2402	1.6557	1.9566	1.7333	1.7693	7.3551	5.5976	12.9527

주: 1. 민자한도액은 매년 국회 심의를 통해 승인받아 투자사업을 고시할 수 있는 총사업비 한도액
 2. 임대료는 민자 한도액에 부대비용(이자 등)을 더한 금액으로 준공 시점 이후 20년 분할상환
 자료: 교육부

재정사업의 경우, 첫 해 사전기획 및 설계비 등 총사업비⁴⁾의 10%를 반영하고, 2년차에는 공사가 착수되며 총사업비의 60%를 공사비로 반영하고 마지막 해인 3년 차에는 공사비 잔액(총사업비의 30%)을 투입하여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교부 계획

4) 2021년 신규물량(582동)에 대한 총사업비는 3.5조원이며, 국비 1.0조원, 지방비 2.5조원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당초 계획 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당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대상학교를 2월까지 확정하고 7월까지의 사전기획, 2021년말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대상학교 선정이 6월⁵⁾에 완료되었으며 교육부는 사전기획을 2021년말까지 진행하고 설계용역은 2022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 및 향후 예상 추진 일정]

구 분	당초 추진 일정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교육청별 대상학교 확정	2021년 2월	2021년 3~6월
교육청별 사전기획	2021년 3~7월	2021년 6~12월
설계공고	2021년 8월	2021년 12월
설계 용역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공사 착수	2022년	2022년 하반기
공사 완료	2023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이후

자료: 교육부

5)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시도교육청별 현황]

시도	검토 결과		시도	검토 결과	
	학교수(교)	동수(동)		학교수(교)	동수(동)
서울	57	106	강원	23	24
부산	18	31	충북	19	29
대구	27	35	충남	43	50
인천	17	23	전북	34	39
광주	5	13	전남	47	82
대전	12	15	경북	58	90
울산	8	10	경남	43	59
세종	대상없음	-	제주	3	3
경기	70	93	계	484	702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 942억 5,200만원 중 58.5%(547억 1,300만원)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이월되었다. 또한 지방비 2,880억원 중 29.7%(850억 3,8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지방비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 실행률은 36.6%에 머물렀다.

[2021회계연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시도교육청 실행액]

(단위: 백만원, %)

시도	예산			시도교육청 실행액			실행률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서울	16,652	42,300	58,952	2,242	39,052	41,294	13.5	92.3	70.0
부산	8,000	20,600	28,600	7,758	15,139	22,897	97.0	73.5	80.1
대구	4,400	717	5,117	4,400	135	4,535	100.0	18.8	88.6
인천	3,500	8,530	12,030	613	0	613	17.5	0.0	5.1
광주	1,400	3,550	4,950	78	168	246	5.6	4.7	5.0
대전	2,700	1,299	3,999	2,625	510	3,135	97.2	39.3	78.4
울산	1,900	2,747	4,647	1,900	159	2,059	100.0	5.8	44.3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2,600	135,094	147,694	12,600	1,524	14,124	100.0	1.1	9.6
강원	3,900	379	4,279	223	84	307	5.7	22.2	7.2
충북	3,400	1,278	4,678	3,151	0	3,151	92.7	0.0	67.4
충남	6,300	9,749	16,049	6,300	535	6,835	100.0	5.5	42.6
전북	5,000	11,823	16,823	1,842	1,918	3,760	36.8	16.2	22.4
전남	8,060	18,800	26,860	3,293	168	3,461	40.9	0.9	12.9
경북	8,300	10,630	18,930	5,709	7,851	13,560	68.8	73.9	71.6
경남	7,400	18,800	26,200	1,660	17,600	19,260	22.4	93.6	73.5
제주	740	1,704	2,444	319	195	514	43.1	11.4	21.0
계	94,252	288,000	382,252	54,713	85,038	139,751	58.1	29.5	36.6

주: 당초 30:70 매칭 사업으로 국비 대비 지방비 예산액은 2,361억 800만원(집행률 36%)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518억 9,100만원 추가 예산 편성하여 2,879억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바,⁶⁾⁷⁾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절차 수행에 따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은 더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계연도마다 지방비 매칭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향후 지방비 매칭 준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매칭 비율을 준수하도록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⁸⁾ 등에 근거하여 국고 30%, 지방비 70%로 확정되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⁹⁾ 등에 따라 동 부담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¹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은 보조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한 비율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배정하고 국비를 교부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시도교육청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대구(14.0%), 대전(32.5%), 울산(59.1%), 강원(8.9%), 충북(27.3%), 충남(60.7%), 경북(56.2%)에서 당초 계획한 70%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지방비 매칭 실적]

(단위: 백만원, %)

시도	예산			예산 비중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 계
서울	16,652	42,300	58,952	28.2	71.8	100.0
부산	8,000	20,600	28,600	28.0	72.0	100.0
대구	4,400	717	5,117	86.0	14.0	100.0
인천	3,500	8,530	12,030	29.1	70.9	100.0
광주	1,400	3,550	4,950	28.3	71.7	100.0
대전	2,700	1,299	3,999	67.5	32.5	100.0
울산	1,900	2,747	4,647	40.9	59.1	100.0
세종	0	0	0	0	0	0
경기	12,600	135,094	147,694	8.5	91.5	100.0
강원	3,900	379	4,279	91.1	8.9	100.0
충북	3,400	1,278	4,678	72.7	27.3	100.0
충남	6,300	9,749	16,049	39.3	60.7	100.0
전북	5,000	11,823	16,823	29.7	70.3	100.0
전남	8,060	18,800	26,860	30.0	70.0	100.0
경북	8,300	10,630	18,930	43.8	56.2	100.0
경남	7,400	18,800	26,200	28.2	71.8	100.0
제주	740	1,704	2,444	30.3	69.7	100.0
계	94,252	288,000	382,252	24.6	75.4	100.0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3년간 연차별 국고지원비율(10:60:30)에 따라 매년 국비(30%)와 지방비(70%)의 매칭비율을 맞춰야 할 경우 과도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으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사업완료 시점 기준으로 매칭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행정 선례가 없는 등 자체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감사기구(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에 사전컨설팅

팅을 신청(2021.6.16.)하였다.¹¹⁾

이에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이 3년이며, 국고로 지원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를 3년간 분할 교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간 국고지원비율(10:60:30)에 따라 매년 국비(30%)와 지방비(70%)의 매칭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¹²⁾의 지급 요건 충족시점을 사업완료시점 기준인 최종 3차년도로 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지방비 매칭에 관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

검토 내용
[법제처]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83호를 말하며, 이하 “보조금지침”이라 함) 제23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 확보기한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 사안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을 최종 완료한 때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11) (1안)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상당수 교육청이 이미 예산편성(매칭 70%)을 완료하였고, 일부 시도는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를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시도교육청은 원안대로 3개년간 연차별 국고지원비율(10:60:30)에 따라 국비(30%)와 지방비(70%)의 매칭비율을 충족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본예산 편성완료) 광주, 대전, 충남, 전남, 경남 / 일부 교육청은 추경 진행 중

(2안) 보조금법에 따라 ①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②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모두 실적 및 정산보고를 받되,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등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른 반납여부 등의 최종 정산은 마지막 3차 년도에 할 수 있도록 매칭비율 충족시점을 사업완성연도까지 허용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토 내용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확보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됨. ○ 보조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그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조), 보조사업은 법령에서 그 대상사업 범위와 국고보조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대상사업 해당 여부, 경비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 등이 매년 예산으로 정해져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보조금법 제9조, 제12조, 보조금지침 제4조의3) -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년간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자는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자기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지침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조금지침 제26조제6항에 따른 '자기부담금 확보'가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해당 지방비의 집행까지 완료될 것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 위 규정은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라 할 것이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하나,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보조금 지침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에 비추어 보면, - 보조금 지침 제23조제6항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른 자금 확보 외에 그에 따라 완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기획재정부]
○ 법령 취지에 따라 교육부에서 판단하여 책임지고 운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다년간 소요되는 시설사업은「지방재정법」에 따른 계속비 편성·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점을 완료시점으로 가능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종합의견]
○ 위에서 검토한 관련법령 및 관련부처 의견과 우리부 유관부서의 검토내용을 종합하면,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이 3년이며, 국고로 지원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를 3년간 분할 교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간 국고지원비율(10:60:30)에 따라 매년 국비(30%)와 지방비(70%)를 반드시 매칭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귀 부서의 의견 중 (2안)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조금법」제33조의 지급 요건 충족시점을 사업완료시점 기준인 최종 3차년도로

검토 내용
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부서의 의견인 (2안)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령에 따라 3년 동안의 회계연도 중 1, 2차년도에는 실적보고 및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통해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등 반납여부에 대한 최종 정산은 마지막 3차 년도에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 교육부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매칭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자기부담금 확보’가 매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해당 지방비의 집행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법령 취지에 따라 교육부에서 판단하여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³⁾

또한 2안 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령에 따라 3년 동안의 회계연도 중 1, 2차년도에는 실적보고 및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통해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방비를 미확보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자체 감사기구(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5개년에 걸쳐 2,835동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체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종료 시 까지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한 조치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가 적절해 보이므로 향후 교육부는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이 매년 매칭 비율을 준수하도록 엄밀하게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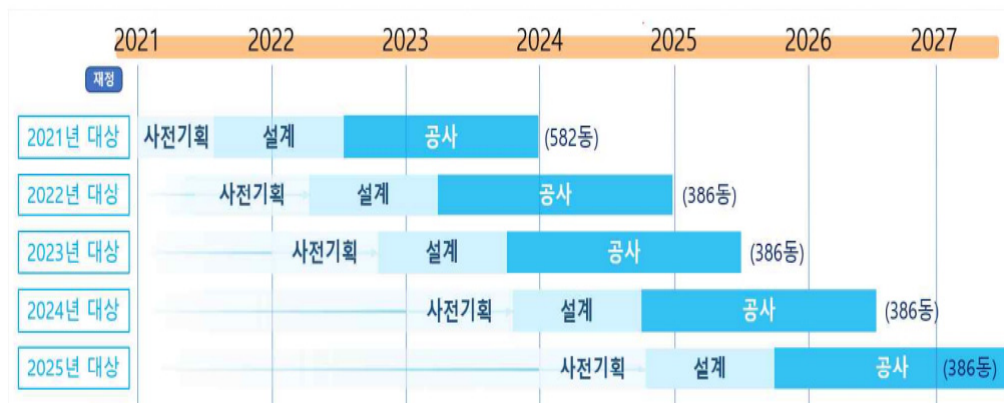
13)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추후 당해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한다. 다만, 전년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다.

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국고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비목별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편성 내역은 공사비의 10%로 이는 사전 기획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비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¹⁴⁾에 따르면 2021년 대상학교에 대해서 2021년에는 사전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부터 공사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연차별 사업 추진 일정]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2021. 2.

또한 2022년 예산 편성내역을 고려하면,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예산에는 임시교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에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KDI)에 따라 단가가 변경(공사비 54억→47억, 임시교사비 7억→6.6억)되었으며, 2022년 예산에는 개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공사비의 40%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물량에 대한 임시교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1년 예산에는 공사비(54억원)의 10%만 편성하였을 뿐 임시교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14)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2021. 2.

[2021년도 및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예산 산출 세부내역]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 지자체경상보조(330-01): 94,252백만원 가. 582동 공사비(1년차) 지원(94,252 백만원) · 582동 × 5,400백만원(공사비) × 10% × 30%	○ 지자체자본보조(330-03): 519,404백만원 가. '21년 물량 공사비(2년차) 및 임시교사비 지원(519,404백만원) · 계속 공사비 4,607억원(582동 × 5,033백만 원(공사비) × 40%(2년차) × 30%(보조율)) - (582동 × 367백만원 × 10%(1년차) × 30%(보조율))*] + 임시교사비 1,156억원 [582동 × 662백만원(임시교사비) × 30% (보조율) + 신규 공사비 587억원(386동 × 5,071백만원 × 10%(1년차) × 30%(보조율))] * '21년 대상 사업에 대한 공사비 소급 감액

자료: 교육부

2021년 예산에 582동의 사전기획 및 설계비만 편성되었으나, 시도교육청은 교부 받은 국고 예산을 공사비, 임시교사비 등 당초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1억 4,290만원을 국고에 편성되지 않은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부산교육청 및 충북교육청은 국고에 편성되지 않은 임시교사비 비용으로 각각 65억 80만원, 1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시도교육청별 국고 집행내역]

(단위: 천원)

시도	사전기획	설계용역 (선금포함)	공사 (선금포함)	임시교사비 (선금포함)	사립학교전 출금	합계
서울	-	-	-	-	2,242,000	2,242,000
부산	1,257,200	-	-	6,500,800	-	7,758,000
대구	1,448,477	-	-	-	2,951,523	4,400,000
인천	409,423	33,577	-	-	170,000	613,000
광주	62,056	15,644	-	-	-	77,700

(단위: 천원)

시도	사전기획	설계용역 (선금포함)	공사 (선금포함)	임시교사비 (선금포함)	사립학교전 출금	합계
대전	397,622	442,812	-	-	1,784,566	2,625,000
울산	191,803	-	-	-	1,708,197	1,900,000
세종	-	-	-	-	-	-
경기	1,375,699	-	-	-	11,224,301	12,600,000
강원	222,600	-	-	-	-	222,600
충북	1,337,429	235,737	142,900	1,404,799	30,135	3,151,000
충남	1,453,643	-	-	-	4,846,357	6,300,000
전북	243,751	145,758	-	-	1,452,491	1,842,000
전남	966,100	-	-	-	2,326,900	3,293,000
경북	1,534,517	-	-	-	4,174,483	5,709,000
경남	985,000	-	-	-	675,000	1,660,000
제주	-	319,000	-	-	-	319,000
계	11,885,320	1,192,528	142,900	7,905,599	33,585,953	54,712,300

자료: 교육부

또한 2021년 실집행액 547억 1,230만원 중 335억 8,595만원(61.4%)이 ‘사립학교 전출금’ 항목으로 집행되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로 편성된 예산을 일괄 교부하고 총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내역별 집행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계별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비목별 투입계획을 수립·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집행일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정부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사를 임대하는 등 비효

을적인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 예산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비목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할 경우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비목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학혁신지원(R&D)¹⁾ 사업은 일반대학(4년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6,951억 2,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하였다.

[2021 회계연도 대학혁신지원(R&D)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학혁신 지원(R&D)	695,122	695,122	0	0	695,122	695,122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19년에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유형인 대학혁신지원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되어 분절적·경쟁적으로 운영되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각 대학이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보다는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²⁾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일반회계 2238-312

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2017.11.30.)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현황]

(단위: 억원)

~ 2018년		2019년 ~					
사업명	2018 추경	구분	목적	사업명	2019 예산	2020 추경	2021 추경
대학자율역량강화(ACE)	740	일반 재정 지원	대학 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 (R&D)	5,688	8,288	6,951
산업연계교육(PRIME)	1,482						
인문역량강화(CORE)	426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38						
특성화(CK)	1,762						
소 계	4,448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508			전문대학혁신지원	2,908	3,908	3,655
합 계	6,956	합 계			8,596	12,196	1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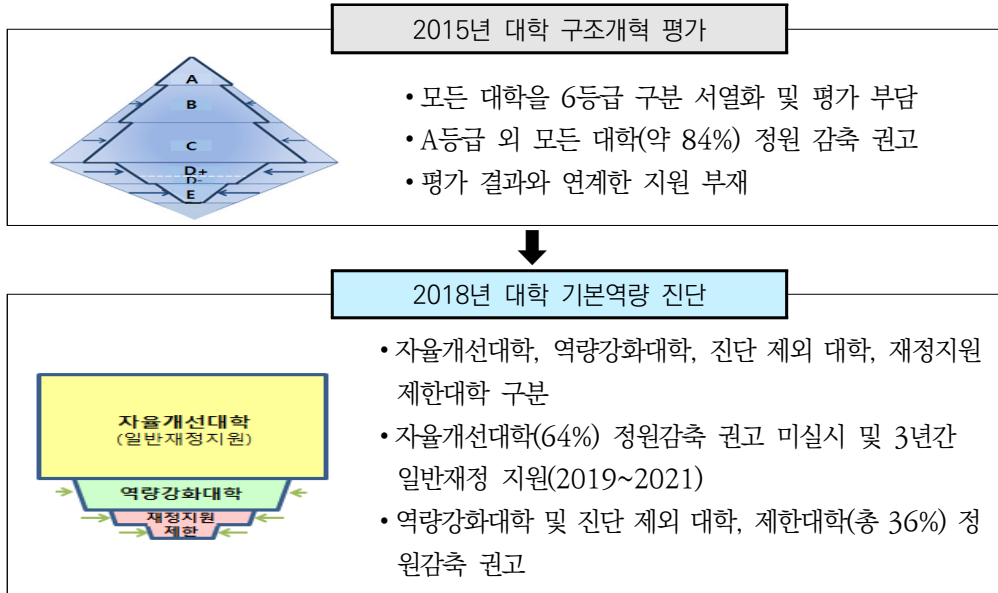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주기 사업이 2019~2021년 동안 추진되었다.³⁾

기존 대학평가(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및 지역 대학 고려가 부족하고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기존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 강제적으로 정원감축을 하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와 연계한 지원을 한다는 취지이다.

3) 2주기 사업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하여 2022~2024년 동안 추진된다.

[2018년 대학 평가방식 개선 내용]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하였으며, 2018년 진단 대상 일반대학 187교 중 150교를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진단 대상 일반대학 187교를 평가하여, 이 중 64%(120교)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대학들을 다시 평가하여 80점 이상 대학을 역량강화대학(30교)으로, 80점 미만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10교)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선정 결과(일반대학)]

구 분	자율개선	역량강화	진단제외	재정지원 제한	합 계
학교수	120교	30교	27교	10교	187교

주: 진단 제외는 종료·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 제외 결정

자료: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안내」, 2018. 9.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120교)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추진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이 지원되었으며,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30교 중 12교가 선정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9~2021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었으며, 3년 동안 총 지원 규모는 1조 8,787억 8,000만원 규모이며, 학교당 평균 지원액은 131억 3,800만원 규모이다.

[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결과]

(단위: 백만원)

진단 결과	재정지원			지원 요건
	대상	총 지원액	학교당 평균 지원액	
자율개선대학	131교 ¹⁾	1,782,400	13,606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전략
역량강화대학	12교	96,380	8,032	
합 계	143개교	1,878,780	13,138	

주: 1) 자율개선대학은 별도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대(11교) 포함

1. 지원액은 운영비 제외한 금액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대학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는 사업 초연도인 2019년에는 포물러 지원금(100%)만 대학에 배분되었으며 2020~2021년은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포물러 지원금(70% 이상)과 성과평가 인센티브(30% 이내)에 따라 대학에 배분되었다. 포물러 지원금은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여기서 기준경비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전체 대학), 규모지수는 각 대학별 재학생수, 교육여건은 각 대학별 재학생 충원율, 각 대학

별 전임교원 확보율, 각 대학별 교육비 환원율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율개선 계획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되며, 포물러 지원금에 등급가중치(A등급 1.2, B등급 1.0, C등급 0) 등을 적용하여 배분된다.

[대학혁신지원 사업 대학별 사업비 배분식]

포물러 지원금(70% 이상)					성과평가 인센티브 (30% 이내)		지 원 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포물러×등급가중치 ¹⁾ × 지역가중치 ²⁾ × 조정상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1) A등급 1.2 / B등급 1.0 2) 지역강소 1.5 / 그 외 1.0	=
				조 정 상 수			

자료: 교육부

2019년에는 5,566억원 전액이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2020년에는 6,319억 4,000만원 중 76.1%(4,809억 9,200만원)가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되고 23.9%(1,509억 4,800만원)가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원되었다. 2021년에는 6,902억 4,000만원 중 70.5%(4,867억 9,200만원)가 포물러 방식으로 지원되고 29.5%(2,034억 4,800만원)가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원되었다.

[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지원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포물러	포물러	성과평가 인센티브	합계	포물러	성과평가 인센티브	합계
자율개선대학	529,000	453,600	145,800	599,400	457,800	196,200	654,000
역량강화대학	27,600	27,392	5,148	32,540	28,992	7,248	36,240
합 계	556,600	480,992	150,948	631,940	486,792	203,448	690,240
(비중)	(100.0)	(76.1)	(23.9)	(100.0)	(70.5)	(29.5)	(100.0)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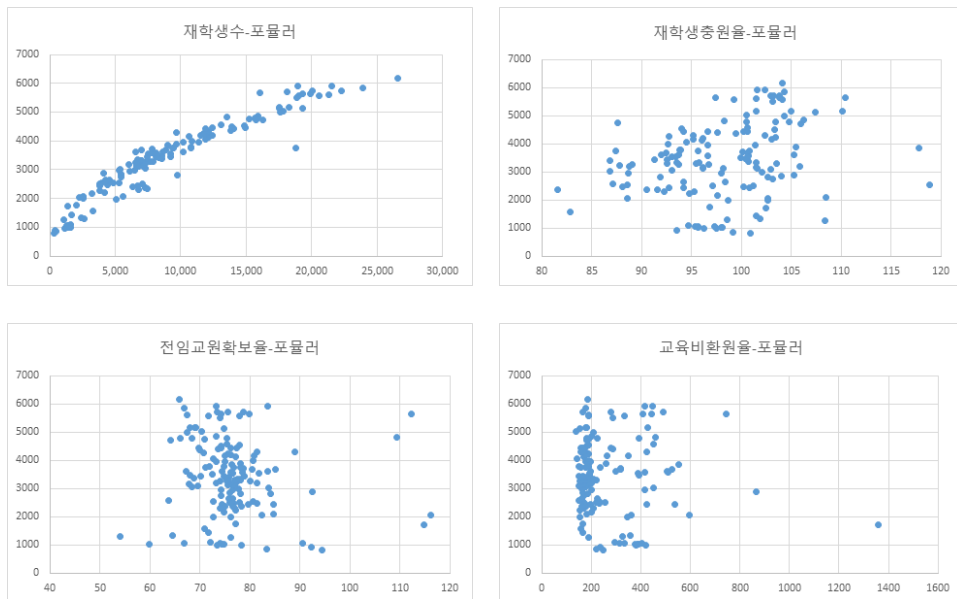
1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포물러 방식의 재원배분은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재학생수’라

는 규모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⁴⁾ 또한 포물러 방식이 성과와 상관성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포물러 지원금을 기초로 산정(성과평가 인센티브 = 포물러 배분액 × 등급가중치 × 지역가중치 × 조정상수)되기 때문에 ‘재학생수’라는 규모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21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대학별 배분액과 교육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포물러 지원금과 성과평가 인센티브 모두 교육여건 지표인 재학생 총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재학생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배분액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물러 지원금이 총 지원금의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포물러 지원금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종액 배분액도 재학생수와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배분액과 지표 간 관계]

포물러 지원금



4) 기준경비인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은 전체 대학 평균액이므로, 모든 대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체 대학 평균액 수준을 지원하는 변수 역할을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최종액



주: 4년제(143개) 2021년 배분 결과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정 지역 대학의 대학혁신지원 예산 배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2년대학과 4년 대학은 동일한 A등급이지만 2년대학의 재학생수가 적어 포물러 지원금이 29억

6,800만원 적은 규모이고 포물러 지원금에 연동되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7억 4,100만원 적은 규모이다. 6번대학과 8번대학은 동일한 B등급이지만 8번대학의 재학생수가 적어 포물러 지원금이 34억 3,600만원 적은 규모이고 포물러 지원금에 연동되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14억 1,600만원 적은 규모이다. 또한 15번 대학은 C등급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수 규모가 크고 포물러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B등급인 8번대학 보다 10억 6,800만원을 더 지원받았다.

[2021년 대학혁신지원 예산 대학별 배분 예시]

(단위: 명, 백만원)

대학	재학생수	평가등급	포물러 지원금	성과평가 인센티브	합계
1	18,153	A	5,700	2,821	8,521
2	6,138	A	2,948	2,187	5,135
3	11,339	A	3,939	1,949	5,888
4	18,959	A	5,916	2,928	8,844
5	14,889	A	4,532	2,242	6,774
6	9,694	B	4,296	1,771	6,067
7	3,222	B	2,165	893	3,058
8	499	B	860	355	1,215
9	6,695	B	3,335	1,375	4,710
10	6,583	B	3,605	1,487	5,092
11	2,565	B	2,068	853	2,921
12	6,890	B	3,300	1,362	4,662
13	5,273	B	2,558	1,055	3,613
14	6,999	B	3,681	1,518	5,199
15	3,779	C	2,283	0	2,283
16	1,330	C	1,029	0	1,029
17	1,174	C	976	0	97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교육부가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도 3년간 재정지원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성과 인센티브를 통한 대학의 실질적 성과창출 유인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에서 매년 C등급을 받은 17개 대학은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지원되지 않았으나, 포물러 사업비는 안정적으로 지원받았다. 예를 들어 5번 대학의 경우 '20~'21년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 인센티브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3년 동안 포물러 사업비만 총 136억 3,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대학이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학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대학별 지원액이 재학생 수라는 규모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고 기준경비인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전체 대학 평균액)을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규모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매년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학의 지원액; 2019~2021]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포물러	포물러	성과 인센티브	소계	포물러	성과 인센티브	소계	
1	1,466	1,245	0	1,245	1,268	0	1,268	3,979
2	4,102	3,525	0	3,525	3,440	0	3,440	11,067
3	2,844	2,525	0	2,525	2,627	0	2,627	7,996
4	1,602	1,404	0	1,404	1,419	0	1,419	4,425
5	4,967	4,309	0	4,309	4,358	0	4,358	13,634
6	2,708	2,299	0	2,299	2,219	0	2,219	7,226
7	1,434	1,235	0	1,235	1,314	0	1,314	3,983
8	4,327	3,704	0	3,704	3,707	0	3,707	11,738
9	1,297	1,047	0	1,047	1,093	0	1,093	3,437
10	1,177	1,012	0	1,012	1,049	0	1,049	3,238
11	3,782	3,228	0	3,228	3,278	0	3,278	10,288
12	1,095	961	0	961	980	0	980	3,036
13	1,158	992	0	992	1,029	0	1,029	3,179
14	1,046	966	0	966	976	0	976	2,988
15	1,155	992	0	992	1,051	0	1,051	3,198
16	1,158	985	0	985	1,010	0	1,010	3,153
17	1,509	1,454	0	1,454	1,561	0	1,561	4,52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지막으로 지원대학과 미지원대학 간 성과를 비교해보면, 지원대학 전체(자율개선대학 131교 및 역량강화대학 12교)의 교육여건은 미지원대학(역량강화대학 18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⁵⁾ 그러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진단 대상 일반대학 187교 중 64%(120교)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대학들을 다시 평가하여 80점 이상 대학을 역량강화대학(30교)으로, 80점 미만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10교)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지원대학 중 역량강화대학이 미지원대학과 대학경쟁력 등 여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량강화대학(12교)과 미지원대학(18교)의 교육여건 변화정도를 비교해보면, 두 대학 간 성과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충원율은 지원대학과 미지원대학 모두에서 하락하였으나 지원대학에서 더 크게 하락하였고, 전임교원확보율은 지원대학에서는 개선된 반면 미지원대학에서 하락하였다.⁶⁾

[지원대학과 미지원대학간 교육여건 지표 변화 비교]

(단위: 백만원, %, %p)

구분	학교수	지원액		교육여건 지표					
		총액	학교 평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18	'21	'18~'21 변화분	'18	'21	'18~'21 변화분
지원 대학	지원대학 전체 143교	1,878,780	13,138	100.5	98.2	△2.3	74.5	76.4	1.9
	역량강화대학 12교	96,380	8,032	97.8	93.8	△4.0	73.8	77.0	3.2
미지원 대학	역량강화대학 18교	-	-	93.4	90.6	△2.8	74.3	71.7	△2.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정책여건에 대응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우수한 대학 육성, 대학 구조조정 등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받고 재정

5) 교육비환원율은 재정지원이 증가하면 자동 증가하는 지표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다만, 지원대학(12교)의 경우 미지원대학(18교)에 비해 '21년 재학생 충원률 평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이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재학생수’라는 규모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⁷⁾ 그리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혁신성과가 낮은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대학의 혁신 유인을 약화할 수 있는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2주기 사업도 1주기 사업의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1주기 사업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가. 현 황

취업연계 장려금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¹⁾의 내역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3학년)²⁾과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3학년)이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330억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민간경상보조)에 교부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66,900	166,900	0	0	166,900	166,900	100.0	0	0
취업연계 장려금	133,000	133,000	0	0	133,000	133,0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 6개월 과정 3학년 학생이 직업교육위탁과정을 이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1인당 400~500만원³⁾의 장려금을 일시에 지원하려는 것이고, 수혜 학생은 12개월 간 중소·중견기업에 의무 종사(6개월, 4백만원 → 12개월, 5백만원)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미준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⁴⁾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일반회계 4151-300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3) 2020학년도 3학년은 400만원, 2021학년도 3학년은 500만원

4)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환수조치하며,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절차]

[직업계고 학생(3학년)]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3학년)]			
구분	현장실습	근로계약 체결 등 확인	취업유지 (1년)	구분	직업교육 위탁과정	근로계약 체결 등 확인	취업유지 (1년)
기간	9~12월	⇒ 10~12월~	⇒ 취업 이후	기간	3~12월	⇒ 졸업 이후	⇒ 취업 이후
지원금	월 60만원 실습수당 또는 정부부처연계 사업 훈련수당	400~500만 원 지급	취업유지 모니터링	지원금	정부부처연계 사업 훈련수당 등으로 지원	400~500만 원 지급	취업유지 모니터링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정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이 보조사업자이다. 2021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실적을 보면, 한국장학재단은 예산 1,330억원 중 762억 1,800만원(57.3%)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 처리 하였으며, 목표인원 31,000명 대비 취업보고 완료자 18,479명(59.6%)에 대해 지원 하였다.

[2021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한국장학재단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예산액			지원인원		
	예산(A)	실집행(B)	B/A	예산(C)	실집행(D)	D/C
2020학년도 고3	88,000	64,708	73.5	22,000	16,177	73.5
2021학년도 고3	45,000	11,510	25.6	9,000	2,302	25.6
합 계	133,000	76,218	57.3	31,000	18,479	59.6

자료: 교육부

취업연계 장려금은 익년도 취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과 당해연도에 취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성된다. 2021년에는 2020학년도 고3 학생이 차년도(2021년)에 취업할 경우, 2021학년도 고3 학생이 당해연도(2021년)에 취업할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학년도 고3 학생은 22,000명을 대상으로 88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6,177명(73.5%)에 대해 647억 800만원(73.5%)을 지원하였다. 2021학년도 고3 학생에 대해서는 9,000명에 대해 4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302명(25.6%)에 대해 115억 1,000만원(25.6%)을 지원하였다.

교육부는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취업률과 직업계고 취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장실습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취업 예산인원을 32,000명으로 산정하였고, 이 중 당해연도 취업자 10,000명(30%)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차년도 취업자 22,000명(70%)은 2021년 예산에 편성하였다. 다만, 2021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2020학년도 학생 22,000명에 대한 지원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9,200명이 반영된 인원이며 이는 다른 연도에 비해 지원인원이 크게 확대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⁵⁾ 역시 감소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2018년 34.9%, 2019년 40.9%, 2020년 42.5%, 2021년 45.0%)하는 상황이고, 2020학년도 고3 지원인원이 전년 동기(2019학년도 3학년) 지원인원(14,639명)의 150.0%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또한 2020~2021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2019년에 비해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실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2년에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본예산 1,300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21.5% 감액 의결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한 지원인원 26,000명을 20,400명으로 축소할 규모이다.

교육부는 향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2016년 10.6만명에서 2018년 10.1만명, 2019년 9.1만명, 2020년 8.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취업연계 장려금의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검토하고, 성과지표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취업연계 장려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도입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장려금의 취업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의 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단가를 인상하였다. 사업 도입(2018년)부터 2019학년도 3학년까지 300만원, 2020학년도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400만원, 2021학년도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장려금의 취업 유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취업환경이 유사하고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장려금의 취업 유인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2020학년도 3학년과 2021학년도 3학년 학생의 취업 실적을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대비 2020학년도 3학년은 22,625명이 취업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단가가 500만원으로 인상된 2021학년도 3학년 학생은 2020학년도 3학년의 54.1%인 12,245명이 취업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2020~2021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현황]

구 분		당해연도 지급	익년도 지급	총 지급
2020학년도 고3 (1인당 지원단가: 400만원)	지급기간	2020. 10~12.	2021. 1~6.	2020. 10~2021.6.
	지급인원(명)	10,000	12,625	22,625
2021학년도 고3 (1인당 지원단가: 500만원)	지급기간	2021. 10~12.	2022. 1~6.	2021. 10~2022.6.
	지급인원(명)	2,302	9,943	12,245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1학년도 3학년 학생의 지원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신청인원 감소(2020학년도 고3 35,892명 → 2021학년도 고3 27,294명),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신청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2020학년도 3학년 학생 대비 장려금 지원단가가 100만원 상향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로 종사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감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기대감 저하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 기간 대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한다면 장려금의 취업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고용노동부, 2021. 7.)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고용창출형 고용장려금의 6개월 고용유지율이 73.1%인 반면 취업연계 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65.3%로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보다 7.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장려금수혜자 만족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률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취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취업연계 장려금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장려금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77	82	84	84	장려금 수혜자 무작위 표본 대상 리커트 7점 척도 조사, 백분율 환산
	실적	84.1	76.3	86.1	-	
	달성도(%)	109.2	93.0	102.5	-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취업연계 장려금의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검토하고, 성과지표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실습 지원금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들은 2020년도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현장실습 지원금은 현장실습 참여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월별 60만원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²⁾의 내역사업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지원금의 2021년도 예산현액 324억원을 전액 위탁기관(한국장학재단)에 교부하였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³⁾은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 및 안전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현장실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관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2021년도 예산현액 205억원을 전액 사업 수행 위탁기관(한국장학재단)에 교부하였다.

[2021회계연도 현장실습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66,900	166,900	0	0	166,900	166,900	100.0	0	0
현장실습 지원금	32,400	32,400	0	0	32,400	32,400	100.0	0	0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20,500	20,500	0	0	20,500	20,500	100.0	0	0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 70%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차액인 30% 수준을 보조(2020년 월 최저임금 1,795,310원)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2) 코드: 일반회계 4151-300

3) 코드: 일반회계 4151-302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현장실습 지원금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 기간 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예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21년 한국장학재단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사업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실습 지원금 예산 324억원 중 94억 2,900만원(29.1%)를 집행하고 나머지 229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예산 205억원 중 38억 7,900만원(18.9%)을 집행하고 나머지 166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장학재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현장실습 지원금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9,429	22,971	29.1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3,879	16,621	18.9

자료: 교육부

지원금 지급 인원을 보면, 현장실습 지원금은 예산인원 27,000명 중 10,278명 (38.1%)에게 지급되었으며,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은 예산인원 20,000명 중 4,416명(22.1%)에게 지급되었다.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사업의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예산인원	지급인원	지급률
현장실습 지원금	27,000	10,278	38.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20,000	4,416	22.1

자료: 교육부

또한 동 사업의 2022년 집행 현황을 보면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실습 지원금 324억원 중 207억원(63.9%)을 집행하고 잔액 117억을 불용 및 반납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예산 205억원 중 115억원(56.1%)을 집행하고 나머지 90억원을 불용 및 반납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사업 불용 및 반납예정액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예산액(A)	재단 집행액(B)	불용액 및 반납예정액	실집행률(B/A)
현장실습 지원금	324	207	117	63.9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205	115	90	56.1

자료: 교육부

현장실습 지원금 및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의 2020년 예산액 324억원 중 145억 9,500만원(45.1%)이 집행되고 178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의 2020년 예산액 205억원 중 18억 3,500만원(8.9%)이 집행되고 186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사업의 한국장학재단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장학재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현장실습 지원금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14,595	17,805	45.0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1,835	18,665	8.9

자료: 교육부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2020년에 다음 해로 이월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및 반납(2021. 7월)하였다. 현장실습 지원금 예산 324억원 중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76억 3,2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예산 205억원 중 65억 1,200만원이 집행하고 140억 3,500만원을 반납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사업 불용 및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예산액	재단 집행액	불용액	예치계좌 이자	반납금액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비	32,400	14,805	17,595	36	17,632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비	20,000	6,290	13,710	46	13,756
	운영비	500	222	278	1	279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교육부가 수요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2017년 현장실습 요건 강화(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로 현장실습 실시 기업수 및 참여학생수가 감소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상 학생수의 감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실습 수요가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2020년 현장실습 참여학생수는 23,938명이고 복교율이 9.0%임을 고려할 때, 2021년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인원을 27,000명을 계획한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참여 현황: 2016~2020년]

(단위: 개, 명, %)

연도	학교수 (3학년)	전체 학생수	대상 학생수	참여 학생수	복교율	선도 기업	참여 기업
2016	593	108,968	106,151	60,016	11.5		31,404
2017	588	103,922	101,251	43,026	17.4		19,709
2018	582	101,239	97,680	21,948	6.3	6,190	3,337
2019	576	91,161	87,471	26,124	7.7	7,634	4,684
2020	578	79,956	76,766	23,938	9.0	7,978	3,759

주: 전체 학생수는 직업계고 3학년, 대상 학생수는 체육특기생 등 제외

자료: 교육부

한편,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대부분 9월에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부는 집행 가능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현장실습 신청 이전인 4월과 7월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보조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장실습 지원금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 기간 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최대한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인천대학교 출연지원¹⁾ 사업은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연구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출연사업이다. 교육부는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1,000억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00,003	100,003	0	0	100,003	100,003	100.0	0	0

자료: 교육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3년 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교육부는 2018년부터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²⁾

출연금 산정시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³⁾ 및 제30조제2항⁴⁾에 따라 종전의 인천대학교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742-302

2) 2012년 9월 확정된 인천시의 인천대학교 대학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2013~2017년 5년간 평균 운영비 600억원(장기차입 300억원, 장기차입금 300억원)을 지원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증가율, 대학운영계획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불용액이 2018년 19억원에서 2021년 14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용액은 다음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사용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불용액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출연금 지원 이후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불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불용액은 2018년 19억원에서 2021년 1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자체재원인 등록금 등의 수입에서 대부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수입 대비 불용액 비중은 2018년 2.1%에서 2021년 18.5%까지 상승하였다.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불용액 추이]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수입 (예산)	출연금	자체수입		불용액 (결산)	출연금	자체수입		B/A
			등록금 등(A)	수입 대체			등록금 등(B)	수입 대체	
2018	1,691	862	761	68	19	2	16	1	2.1
2019	1,740	880	796	64	88	3	84	1	10.6
2020	1,945	962	851	132	102	1	115	3	13.5
2021	1,846	1,000	764	82	147	2	141	4	18.5

주: 1. 교육부 출연금 지원 (18년) 862억, (19년) 880억, (20년) 954억, (21년) 1,000.03억, (22년)

1,065.03억

2. 수입(예산): 본예산 기준 작성, 수입(예산) = 출연금 + 자체수입

· 출연금: 정부출연금

· 자체수입 / 등록금 등: 예산총액 - 정부출연금 - 보조금 - 수입대체

자료: 교육부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활동 지원, 국제교류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인천대학교의 경우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노후 교육시설 개선비, 캠퍼스 건립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 등의 확보를 위하여 등록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기본운영경비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⁵⁾는 국립대학법인 회계연도로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불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대학회계 수입으로 편성하여 연구지원 및 강의 환경 조성(건축비 포함)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이월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같은 국립대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잉여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⁶⁾에 근거하여 2020년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지침」⁷⁾(2020. 10. 20.)에 사용 목적(건축, 퇴직, 장학 등)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불용액이 증가(2012년 18억원 → 2019년 453억원)함에 따라 잉여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였다.⁸⁾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서울대학교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지침」

제2조 세입·세출 잔액(세입 결산액 및 세출 결산액의 차액) 중 특정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정의한다.

제4조 적립금의 종류는 건축, 장학, 퇴직, 연구 기타적립금으로 한다.

제5조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적립금 운영 및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적립금은 세입·세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하고, 법인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사회 심의를 받아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 적립금의 결산 및 공시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을 따른다.

적립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며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월하여 다음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 보다 불용액 관리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말 서울대학교 총 적립금은 447억원 규모이며, 관악학생생활관의 재건축 등 건축적립금 295억원, 국가 재난상황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특별장학금 등 장학적립금 3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2014. 3. 1.)에 따른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적립금 120억원, 연구장비 구입 및 노후·유휴 장비 수리비용 등 연구적립금 2억원이다. 서울대학교는 적립금 중 132억원을 2022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주차장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건축 98억원, 장학금 지원 6억원, 퇴직수당 지급 28억원 등이다.

[서울대학교 적립금 적립 및 사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적립액(A)	2022년 세출예산 편성액(B)	2022년 기말잔액(C=A-B)
건축적립금	295	98	197
장학적립금	30	6	24
퇴직적립금	120	28	92
연구적립금	2	0	2
합계	447	132	315

자료: 교육부

또한 매년 예산 편성시 인천대학교 출연금을 산정할 때 종전의 인천대학교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대학운영계획운영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불용액의 추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인회계 불용액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면,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불용액이 2018년 19억원에서 2021년 14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용액은 다음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사용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불용액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0. 8.

가. 현 황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¹⁾ 사업은 온종일 돌봄정책('18.4.4.)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교실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을 210억원 중 133억 2,000만원(63.4%)을 집행하고 76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00	21,000	-	-	21,000	13,320	63.4	-	7,68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며 보조율은 100%이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업시행주체이다. 이는 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돌봄교실 신규 구축 비용(실당 0.3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신규 구축 비용 외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 교부금 산정 시에 반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에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비(전용교실 시설 확충, 일반교실 특별실 겸용 사용을 위한 리모델링 등)를 210억원 편성하였으나, 444실을 확충하는 예산 133억 2,000만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일반회계 1603-300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사·도교육청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교육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정책(18.4.)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이용인원(31만명, +7만명) 달성을 위해, 5년 간(18~22) 3,500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75실의 초·중·고등학교실이 확충되었으나, 2021년에는 단위학교의 수요부족으로 사·도교육청의 신청이 부진하여 목표교실 수 700실 중 444실 확충을 위한 보조금이 교부되고 사·도교육청은 442실을 확충하는데 그쳤다.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2018~2022년]

(단위: 실,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교실수	700	700	700	700	700
	예산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사·도교육청 신청 및 교부	교실수	700	700	700	444	207
	예산	21,000	21,000	21,000	13,320	-
실집행	교실수	700	695	680	442	207
	예산	21,000	20,821	20,430	13,260	-

주: 2022년 신청 및 실집행은 4월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도교육청별로 2021년 시설확충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공간확보 문제 등 학교 내 돌봄시설 추가수요 발굴에 한계가 있고 단위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충할 경우 돌봄전담사 배치 등 추가인력 운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에 비해 사·도교육청의 신청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2021년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 수요를 2020. 7. 20. 최초 실시한 이후 6차례 추가로 조사하였으나 사·도교육청의 확충 수요는 444실 수준으로 당초 계획 물량 700실에 미달하였다.

[2021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국고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단위: 실)

'20.7.20. 최초 조사	'20.10.6. 추가 조사	'21.1.13. 추가 조사	'21.3.30. 추가 조사	'21.8.30. 추가 조사	'21.9.30 추가 조사(세종, 대구 제외)	'21.10.19. (세종, 대구) 추가 조사
270	330	401	430	432	444	444

자료: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설치에 교육감 및 학교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돌봄교실 수요에 따라 사업물량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 신청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에 대한 수요를 최초로 조사(2020. 7. 20.)한 시점에 270실로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700실)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에 시·도교육청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18~2022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고 2022년에도 700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교육부는 2022년 초등돌봄교실을 원활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대기자를 축소하고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시·도교육청의 신청 시 현장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별로 예산 부족, 재원 우선순위, 학교 공간 확보 문제 등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돌봄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초등돌봄교실 확충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보조율 100%)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초등돌봄교실의 원활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 1~5학년(재학생) 및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으로 초등돌봄교실 비중(56.2%)이 가장 높다.

초등돌봄교실의 확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며, 이 중 대기자수가 감소했는지 여부로 측정이 가능한데, 초등돌봄교실 대기자수는 2021년 13,447명으로 2019년 대비 증가하였다.²⁾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현황]

(단위: 명)

시도	2019년('19.3.5. 기준)			2021년('21.3.5. 기준)		
	신청자	이용자	대기자	신청자	이용자	대기자
전국	309,828	290,358	13,176	300,711	285,699	13,447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하고 단위학교는 추가 공간확보, 돌봄전담사 배치에 따른 인력운용 부담 등으로 학부모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있어 대기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이 유지·확대되어야 하는 학교에 폐지·축소되는 경우,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어야 하는 학교에 증설되지 않은 경우 등 초등돌봄교실 확충 예산이 부적절하게 지원되어 대기자수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대기자 수 증가 규모가 큰 교육청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대기자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의 부적절한 운영을 판단하기 위해 ‘참여자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폐지된 경우’, ‘1실당 적정 참여인원 20명³⁾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이 축소된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가 조사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청은 폐지 5실, 축소 22실, △△교육청은 폐지 1실, 축소 38실, ◇◇교육청은 폐지 2실, 축소 22실 등이다.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신청자 및 이용자가 감소하여 분석에서 제외한다.

3)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서는 내실있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2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돌봄교실 1인당 참여인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에 따라 정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부적절한 폐지, 축소 사례]

교육청	참여자 있는 학교의 돌봄교실 폐지	1실당 적정 참여인원 2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돌봄교실 축소
○○	4교, 5실	14교, 22실
△△	1교, 1실	32교, 38실
◇◇	2교, 2실	20교, 22실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지, 정부재정을 지원받은 학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초등돌봄교실 증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와 교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⁴⁾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⁵⁾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대기자를 축소하고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확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신청 시 현장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운영 중이던 초등돌봄교실을 중단할 경우 교육부에 고지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이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현 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적립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피고용주분담금), 관유물대여료, 금융상품 투자·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생활안정자금대여, 기금관리비,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집행액 기준)는 13조 755억 4,700만원이며, 수입은 자체수입 6조 6,487억 7,000만원, 정부내부수입 9,406억 8,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5조 4,041억 6,400만원, 기금운영비 502억 9,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사학연금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 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수입 계	13,013,477	13,013,477	-	-	13,013,477	13,075,547	-	-
○ 자체수입	5,702,188	5,702,188	-	-	5,702,188	6,648,770	-	-
○ 정부내부수입	940,685	940,685	-	-	940,685	940,685	-	-
○ 여유자금화수	6,370,604	6,370,604	-	-	6,370,604	5,486,092	-	-
□ 지출 계	13,013,477	13,013,477	15,674	-	13,029,151	13,075,547	17,239	43,217
○ 사업비	5,334,956	5,443,406	15,674	108,450	5,459,080	5,404,164	17,239	37,677
○ 기금운영비	55,838	55,838	-	-	55,838	50,298	-	5,540
○ 정부내부지출	62,519	62,519	-	-	62,519	62,519	-	-
○ 여유자금운용	7,560,164	7,451,714	-	△108,450	7,451,714	7,558,566	-	-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및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 재정전망은 가입자 수, 보수상승률, 퇴직률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여 장래 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 기 금액 규모 등을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3조¹⁾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1995년 재정계산제도 법제화 이후 5차례(2001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시행되었다.

제1차~제3차 재정재계산 시 사학연금 재정수지 적자시점 및 기금고갈 시점이 거의 유사했으나, 2015년 사학연금 제도개선으로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 재정수지 적자시점 및 기금고갈 시점이 제3차 결과 보다 각각 12년, 18년 지연되었다. 그러나 부담률 인상 및 연금액 동결이 2020년 종료되는 등 2015년 사학연금 제도개선 효과가 사라지면서 제5차(2020년)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2029년에 재정수지 적자에 도달하고 2049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제4차(2015년) 재정재계산 결과 보다 각각 6년, 2년 앞당겨진 시점이다.

[사학연금 재정수지 전망]

구 분	제1차 재정재계산 (2001)	제2차 재정재계산 (2006)	제3차 재정재계산 (2010)	제4차 재정재계산 (2015)	제5차 재정재계산 (2020)
재정수지 적자시점	2020년	2018년	2023년	2035년	2029년
기금고갈 시점	2029년	2026년	2033년	2051년	2049년

자료: 교육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사학연금 제도개선은 1996년, 2000년, 2010년에 소폭 이루어졌으나,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개선과 함께 부담률을 7%(2016년)에서 9%(2020년)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9%(2016년)에서 1.7%(2035년)로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되는 연금액을 5년(2016~2020년) 동안 동결하는 등 이전에 비해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사학연금 제도개선 현황]

연도	제도개선 내용
1996년	- 부담률 인상 (보수월액의 5.5% → 6.5%) * '99년에 7.5%로 인상 -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 도입 ('96.1.1 이후 가입자)
2000년	- 부담률 인상 (보수월액의 7.5% → 8.5%) - 연금산정기준 변경 (퇴직 시 보수월액 →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 대상 확대 (전체 재직자) * 단, 퇴직연도에 따른 개시연령의 단계적 적용 등 경과조치를 통한 기존 가입자 기득권 보호
2010년	- 기준보수 변경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부담률 단계적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5.525% → 7%까지) -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2.1% → 1.9%)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의 70% → 60%) * '10.1.1 가입자부터 -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신규가입자부터 60세 → 65세) - 기준소득월액 상한 설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2015년	- 부담률 단계적 추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 9%) * '16년 8% → '17년 8.25% → '18년 8.5% → '19년 8.75% → '20년 9% -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1.9% → 1.7%)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5년 1.7% - 연금액 5년('16~'20) 동결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적용대상 확대 ('10.1.1 가입자부터 → '16.1.1 이후 신규 발생하는 모든 유족연금) - 연금지급률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16.1.1 이후 가입기간 최대 30년까지) - 상향조정된 연금지급 개시연령(65세) 적용대상 확대('96.1.1 이후 가입자에도 단계적 적용)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연금부담금에서 연금급여를 제한 연금수지는 2016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연금제도 개선의 효과가 약화된 2021년에는 흑자 규모(1,581억원)가 2020년의 5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즉, 연금수지 악화 원인은 수입 측면에서는 2016. 1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²⁾에 따라 부담률²⁾이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나 2021년 이후 부담률이 동결되어 부담금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지출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급여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수익의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9~2021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사학연금 연도별 연금수지 및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연금 수지 (A-B)	재정 수지 (a-b)	총수입(a)				총지출(b)		
			연금 부담금 (A)	기금운 용수익	기타	소계	연금 급여 (B)	기타	소계
2012	5,906	12,992	21,429	7,238	39	28,707	15,523	192	15,715
2013	3,646	10,549	20,632	7,094	24	27,750	16,985	216	17,201
2014	2,392	5,854	21,063	3,644	39	24,747	18,670	223	18,893
2015	964	5,591	21,906	4,823	45	26,775	20,941	241	21,183
2016	4,999	10,182	27,415	5,431	40	32,887	22,416	289	22,705
2017	5,242	18,484	29,535	13,472	62	43,071	24,293	292	24,586
2018	4,765	754	31,329	△3,763	71	27,636	26,563	318	26,882
2019	3,868	22,093	33,052	18,480	57	51,590	29,184	313	29,497
2020	3,408	24,626	35,091	21,546	56	56,694	31,682	385	32,067
2021	1,581	28,092	35,955	26,854	67	62,876	34,373	410	34,783

자료: 교육부

특히, 제5차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금수지는 2022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연금수지 적자 규모가 2029년부터는 1조원을 초과하고, 재정수지는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2) 부담률 2015년(14%) → 2016년(16%) → 2017년(16.5%) → 2018년(17%) → 2019년(17.5%) → 2020년(18%)

[제5차 재정재계산 연금수지 및 재정수지 전망]

(단위: 억원)

연도 \ 구분	연금수지	재정수지
2021	999	8,623
2022	△848	7,500
2023	△2,578	6,513
2024	△4,308	5,157
2025	△6,043	3,650
2026	△7,238	2,634
2027	△8,485	1,424
2028	△9,088	979
2029	△10,061	△24
2030	△11,040	△1,031
2040	△20,044	△13,852
2050	△30,939	△31,415
2060	△47,353	△47,934
2070	△71,417	△72,125
2080	△99,149	△100,013
2090	△117,675	△118,728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발생 및 기금소진은 인구, 경제상황 등에 따라 도래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학연금 재정재계산은 재정전망만 담고 있을 뿐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하지 않는다.³⁾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⁴⁾에 장기재정균

3) 다만,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사학연금 장기 재정안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급여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등 다른 재정안정화 조치 없이 보험료율 인상만 전제하는 것이라 실현되기 어려운 대안이다. 최종추계년도(2084년) 기준 일정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을 추정한다. 재정목표는 추계최종년도 적립배율(기금액/지출액) 2배, 추계기간동안 재정흑자 유지, 일정 적립배율 유지의 3가지이다.

4) 「국민연금법」

형 유지를 위해 재정재계산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정부담-급여체계 대한 대안과 장기재정목표와 연계된 수익률 설정, 수익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⁵⁾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 5) 다만, 「사학연금법」 제42조에서 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등 급여 제반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연금이 독자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 현 황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¹⁾ 사업은 사학연금공단(나주회관)에 직장어린이집²⁾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9억 700만원 중 1억 4,400만원(3.7%)을 집행하고, 26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회관건립	3,907	3,907	-	-	3,907	144	3.7	2,690	1,07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5,500만원), 실시설계비(8,200만원), 시설부대비(700만원³⁾)를 집행하였으며, 공사비(20억 4,500만원), 감리비(3억 2,800만원), 시설부대비(3억 1,700만원)를 이월하였다. 또한 설계 낙찰차액(100만원), 공사비 낙찰차액(3억 800만원), 관급자재(7억 1,400만원), 감리비 낙찰차액(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명: 사학연금기금 6031-301

2) 건물(연면적 1,473.91㎡), 지하1층/지상1층

3)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21.4.28.) 400만원, 지반조사 용역비 지급(21.6.9.) 300만원,

[2021회계연도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본조사설계비	55	55	-	-
실시설계비	83	82	-	1
공사비	3,067	-	2,045	1,022
감리비	377	-	328	50
시설부대비	325	7	317	-
합 계	3,907	144	2,690	1,073

자료: 사학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재량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전략 수립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재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당초 회관건립 사업에 대해 ‘일반건축공사’로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3개월) 및 시공(6개월) 등을 통해 2021년 내에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공공건축사업’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⁵⁾에 의한 공공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 사전검토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사업 추진 일정이 2022년 10월 까지 연장⁶⁾되었다. 사학연금공단은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실시(2021.2.9. 완료)하고 그 결과⁷⁾에 따라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는 단계별 소요일정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 준공에서 2022년 준공으로 연장 변경하였다.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 당초 계획 및 변경 진행]

구분	'21.01	'21.03	'21.04	'21.05~06	'21.10	'21.12	'22.10
당초 계획	설계사·CM 선정 및 설계	-	실시설계 완료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	-	시공 및 준공	-
변경 진행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설계공모 공고	-	설계사·CM 선정 및 설계	실시설계 완료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	시공 및 준공

자료: 사학연금공단

이후 사학연금공단은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실시설계를 완료(2021.10.31.)하였으며, 건축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계약을 연말(2021.12.31.)에 체결하고 중앙부처(교육부·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공사비(30억 6,700만원) 중 계약이 완료된 건축공사 예산(20억 4,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 편성하였다. 한편 관급자재 예산(7억 1,400만원)은 2021년도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없으므로 이월 승인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

[2021회계연도 회관건립(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 사업 공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공사비	건축공사 등	3,067	0	2,045	308
	관급자재			0	714

자료: 사학연금공단

6) 사전검토 → 설계심의·공모 → 설계(180일) → 구매조달(60일) → 시공(1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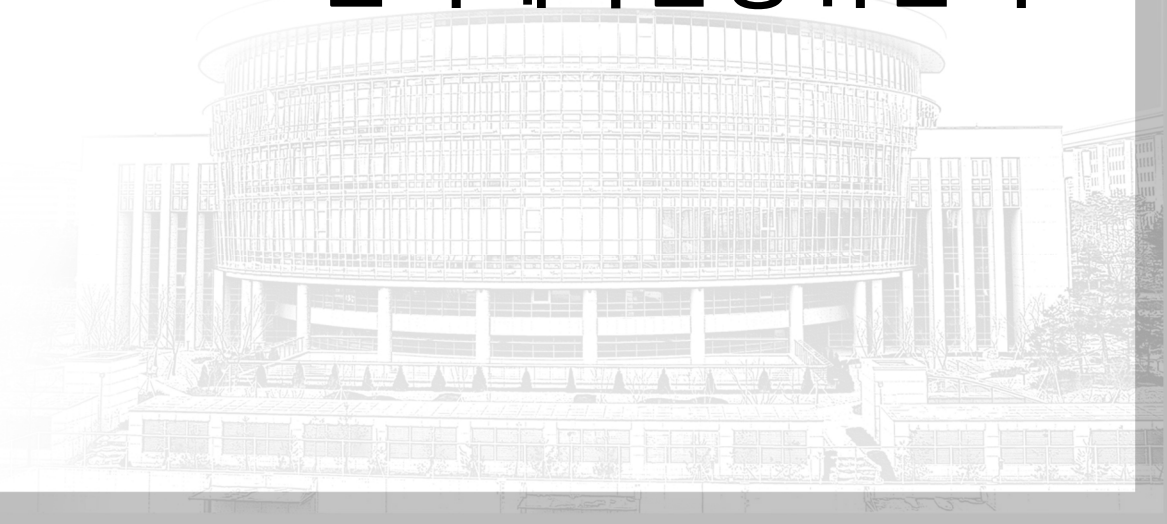
7) 설계공모기간 최소 42일, 설계 6개월(+0.5개월), 입찰준비기간 2개월, 시공 10개월(+4개월) 등 총 10개월의 추가 사업기간을 권장

또한 사학연금공단은 연금운영위원회 심의 및 중앙부처(교육부·기획재정부)의 승인(2022. 2. 15.)을 얻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관급자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관급자재의 경우 공사를 실제 진행하면서 주요 자재의 수급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해당 자재투입을 요청하고, 공단이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데, 관급자재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학연금은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1차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전략 수립 및 안정적인 기금운용수익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은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 보육시설 설치와 같은 재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76억 6,600만원이며, 2,935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7%인 2,485억 9,600만원을 수납하고 449억 4,600 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1,058	61,058	61,058	92,693	67,665	25,028	0	7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35	22,335	22,335	40,411	20,623	19,788	0	5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44,273	144,273	144,273	160,439	160,308	130	0	99.9
합계	227,666	227,666	227,666	293,543	248,596	44,946	0	84.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9,142억 9,300만원이며, 이 중 93.6%인 3조 6,63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047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61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86,127	3,055,877	3,103,176	2,948,914	59,294	94,969	9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47,553	647,553	664,584	585,453	40,760	38,371	8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44,273	144,273	146,533	128,981	4,693	12,858	88.0
합계	3,677,953	3,847,703	3,914,293	3,663,348	104,747	146,198	93.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6조 1,758억 7,300만원이며, 5조 4,502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5조 4,368억 9,400만원을 수납하고 133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23,902	539,633	539,633	423,005	423,005	0	0	100.0
영화발전기금	305,245	305,245	305,245	202,085	202,083	2	0	100.0
지역신문발전기금	9,960	9,960	9,960	11,562	11,470	91	0	99.2
언론진흥기금	34,048	34,048	34,048	42,057	41,957	100	0	99.8
관광진흥개발기금	1,662,463	2,603,128	2,603,128	1,796,926	1,784,436	12,490	0	99.3
국민체육진흥기금	2,683,859	2,683,859	2,683,859	2,974,645	2,973,943	702	0	100.0
합계	5,219,477	6,175,873	6,175,873	5,450,280	5,436,894	13,386	0	9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6조 1,758억 7,300만원이며, 계획현액 6조 1,870억 9,900만원의 87.9%인 5조 4,368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183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33억 9,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23,902	539,633	539,633	423,005	116	4,947	78.4
영화발전기금	305,245	305,245	309,361	202,083	919	7,122	65.3
지역신문발전기금	9,960	9,960	9,960	11,470	0	453	115.2
언론진흥기금	34,048	34,048	34,048	41,957	0	718	123.2
관광진흥개발기금	1,662,463	2,603,128	2,604,849	1,784,436	1,143	175,837	68.5
국민체육진흥기금	2,683,859	2,683,859	2,689,248	2,973,943	16,181	34,320	110.6
합 계	5,219,477	6,175,873	6,187,099	5,436,894	18,359	223,398	87.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175억 7,100만원(3.9%)이 감소한 2조 8,616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736억 5,600만원(19.8%)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9,343	84,103	84,103	92,460	8,357	23,117
기금	2,318,642	2,893,438	2,895,109	2,769,181	△125,928	450,539
합계	2,387,985	2,977,541	2,979,212	2,861,641	△117,571	473,65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130억 3,900만원(5.7%)이 감소한 6조 8,82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382억 8,200만원(3.6%)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404,487	3,472,310	3,642,060	3,457,788	△184,272	53,301
기금	3,239,927	3,391,402	3,653,675	3,424,908	△228,767	184,981
합계	6,644,414	6,863,712	7,295,735	6,882,696	△413,039	238,28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3,357억 7,600만원이 증가한 15조 7,677억 7,7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8,990억 5,100만원, 투자자산이 2,024억 1,4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2,355억 3,600백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2,031억 4,800만원 증가한 2조 3,523억 9,700만원으로 이는 유동부채 3,207억 900만원, 장기차입부채 8,818억 5,300백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2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3조 4,153억 7,900만원으로 적립금 및 양여금이 전년 대비 7,680억 4,700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기본순자산이 1,624억 6,900백만원, 순자산 조정이 7,382억 400백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5,767,777	14,432,001	1,335,776	9.3
Ⅰ. 유동자산	2,983,124	2,084,073	899,051	43.1
Ⅱ. 투자자산	5,990,210	5,787,796	202,414	3.5
Ⅲ. 일반유형자산	6,705,714	6,470,178	235,536	3.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8,340	80,095	△1,755	△2.2
Ⅵ. 기타비유동자산	10,389	9,860	529	5.4
부 채	2,352,397	1,149,249	1,203,148	104.7
Ⅰ. 유동부채	343,806	23,097	320,709	1,388.5
Ⅱ. 장기차입부채	1,945,546	1,063,693	881,853	82.9
Ⅲ. 장기충당부채	9,499	8,911	588	6.6
Ⅳ. 기타비유동부채	53,547	53,548	△1	△0.002
순 자 산	13,415,379	13,282,753	132,626	1.0
Ⅰ. 기본순자산	6,775,479	6,613,010	162,469	2.5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559,852	4,327,899	△768,047	△17.7
Ⅲ. 순자산 조정	3,080,048	2,341,844	738,204	3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조 824억 7,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조 4,410억 2,800만원, 관리운영비 4,239억 3,700만원, 비배분비용 656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156억 5,800만원, 비배분수익 2,169억 6,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2,154억 9,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656억 1,700만원(18.1%) 증가한 6조 2,979억 6,5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 순원가 9,426억 8,000만원 증가, 관리운영비 577억 4,100만원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3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생활체육육성(9,222억 2,100만원)과 콘텐츠산업 육성(6,888억 7,200만원),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5,064억 5,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437억 3,400만원과 경비 1,802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253억 400만원 이자비용 291억 9,200만원과 지급수수료 1억 1,500만원, 대손상각비 92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025,370	5,082,690	942,680	18.5
가. 프로그램 총원가	6,441,028	5,261,814	1,179,214	22.4
나. 프로그램 수익	415,658	179,124	236,534	132.1
II. 관리운영비	423,937	366,196	57,741	15.8
III. 비배분비용	65,621	43,390	22,231	51.2
IV. 비배분수익	216,963	159,928	57,035	35.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297,965	5,332,348	965,617	18.1
VI. 비교환수익 등	2,215,490	2,149,715	65,775	3.1
VII. 재정운영결과(V-VI)	4,082,475	3,182,633	899,842	2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3조 2,827억 5,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3조 4,153억 7,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326억 2,600만원(1.0%)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4조 824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3조 4,768억 9,700만원,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7,382억 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조달 3조 7,162억 3,0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393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31억 6,0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7,250억 4,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3,282,753	12,884,612	398,141	3.1
Ⅱ. 재정운영결과	4,082,475	3,182,633	899,842	28.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476,897	3,430,840	46,057	1.3
Ⅳ. 조정항목	738,204	149,933	588,271	392.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3,415,379	13,282,753	132,626	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기금 간(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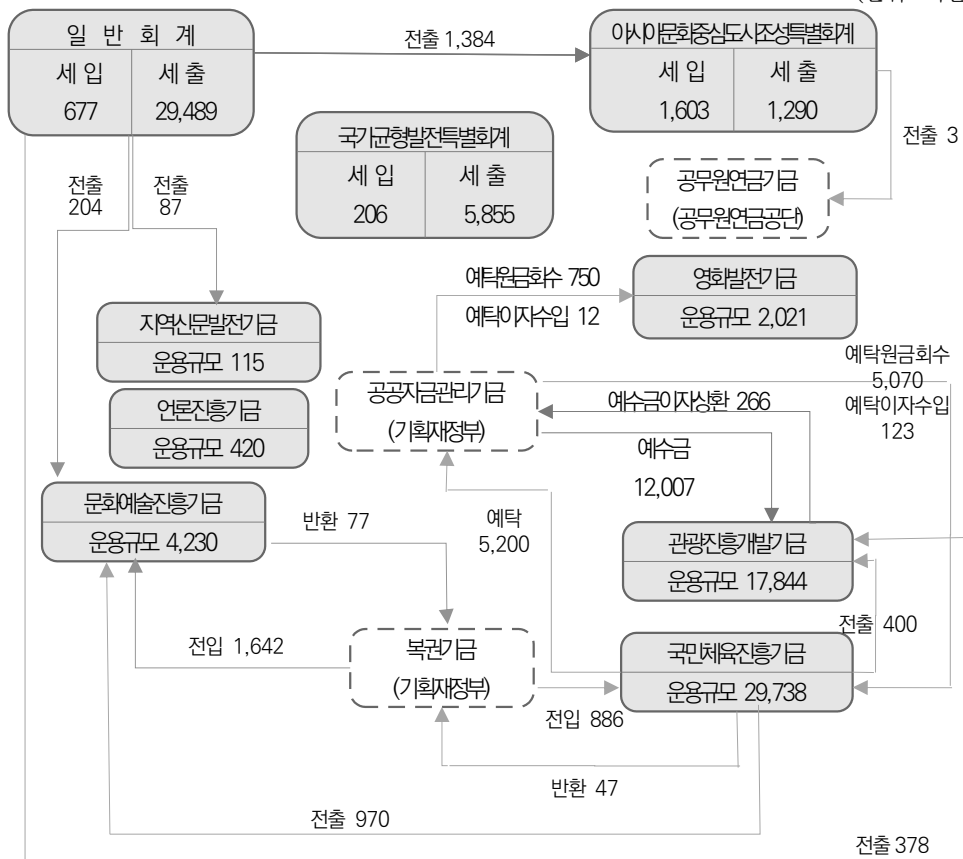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384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8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4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78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억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각각 970억원, 400억원이 전출되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200억원을 예탁하였고, 예탁원금 5,070억원, 예탁이자수입 123억원을 받았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는 886억원을 전입 받고 47억원을 반환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642억원을 전 입받고, 77억원을 반환하였다.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750억원, 예탁이자수입 12억원을 받았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 1조 2,007억원을 예수금으로 받고 예수금이자로 266억원을 상환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②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회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130억원이 감액(1,278억원 → 1,148억원)되었고,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내역 사업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지속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14억원이 감액(432억원 → 418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②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등이 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은 신진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의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해 61억원 증액(524억원 → 586억원)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공연, 전시 등)이 축소, 취소되어 예술인 생계자금 용자 수요 증가로 복권기금에서 전출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50억원 증액(190억원 → 240억원)되었다.²⁾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민간 체육시설업체 고용지원 인원 확대를 위해 311억원이 증액(694억원 → 1,005억원)되었다³⁾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 3.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코로나 위기극복 및 회복지원을 통한 **문화생태계 회복**, ②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확대**, ③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 ④ 신한류 지속 확산을 통한 **문화국가 도약**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시, 연도 내에 수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1년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당초 기존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용 지원만 계획하였다가 신규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여행업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업을 계획하고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중도 변경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을 2021년 말에 수립하여 추진하다가 집행실적이 저조하자 당초 사업 계획 기간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에 필요한 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연도 말 신규 사업 추진과 사업 계획 중도 변경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의 실행률이 17.4%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긴급한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사업 편성시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021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서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방식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행액이 교부액의 2.6%인 점을 고려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2021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계획액 36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계획현액 415억원의 66.1%가 이월된 바 있으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및 마케팅과 컨설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과 컨설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사업 결산 분석

가. 현 황

2021년에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었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공연장, 영화관,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제한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¹⁾

먼저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와 관련하여 예술활동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술인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평균)’를 살펴보면, 전체 작품 발표 횟수는 2017년 평균 7.3회에서 2020년 평균 3.8회로 47.7% 감소하였다. 그리고 영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평균 작품 발표 횟수가 감소하였고,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계 분야에서는 50%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대비 2020년 예술인의 지난 1년간 작품 발표 횟수(평균) 증감 현황]

(단위: 회, %)

구분	2017	2020	증감률
문학	6.9	4.0	△42.0
미술	5.2	3.2	△38.6
공예	4.6	2.6	△43.8
사진	3.2	2.4	△24.1
건축	4.4	2.5	△42.9
음악	13.1	6.4	△51.1
국악	12.7	5.8	△54.5
대중음악	9.4	3.9	△58.5
방송연예	12.5	4.7	△62.5
무용	7.6	4.1	△45.8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 1) 각 분야별 통계는 2020년 기준의 자료를 2021년에 조사하여 2021년 말 또는 2022년에 공표하고 있어 가장 최근 기준으로 파악 가능한 자료는 2020년 기준의 자료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2020년 기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단위: 회, %)

구분	2017	2020	증감률
연극	5.4	3.0	△44.0
영화	2.5	3.0	19.5
만화	6.5	3.5	△46.2
기타	7.6	3.6	△52.5
전체	7.3	3.8	△4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2018, 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작성되며, 2020년 기준의 자료가 2021년에 조사되어 2021년 12월에 발표됨

이러한 작품 발표 횟수의 감소는 작품 발표 횟수 구성비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체 작품 발표 횟수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020년의 작품 발표 횟수가 0~5회는 14.3%p 증가한 반면, 6~15회는 7%p, 16회 이상은 7.3%p 각각 감소하여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대비 2020년 예술인의 지난 1년간 작품 발표 횟수 구성비 증감 현황]

(단위: %, %p)

구분	0~5회			6~15회			16회 이상		
	2017	2020	증감	2017	2020	증감	2017	2020	증감
문학	62.4	79.9	17.5	25.9	14.6	△11.3	11.7	5.5	△6.2
미술	71.5	83.2	11.7	23.5	15.2	△8.3	5.0	1.7	△3.3
공예	69.1	93.0	23.9	26.2	5.5	△20.7	4.7	1.6	△3.1
사진	91.1	94.0	2.9	7.3	4.4	△2.9	1.5	1.5	0.0
건축	80.8	92.9	12.1	15.1	6.6	△8.5	4.1	0.6	△3.5
음악	46.7	69.7	23.0	25.7	20.9	△4.8	27.5	9.4	△18.1
국악	50.2	67.6	17.4	25.0	23.9	△1.1	24.7	8.5	△16.2
대중음악	61.2	80.4	19.2	22.2	15.7	△6.5	16.5	3.9	△12.6
방송연예	56.8	76.9	20.1	19.6	15.5	△4.1	23.5	7.6	△15.9
무용	64.7	81.7	17.0	23.8	14.3	△9.5	11.6	4.1	△7.5
연극	76.3	87.8	11.5	16.8	10.3	△6.5	6.9	1.9	△5.0
영화	91.0	89.4	△1.6	7.3	7.2	△0.1	1.7	3.4	1.7
만화	78.1	91.3	13.2	8.9	2.1	△6.8	12.9	6.6	△6.3
기타	60.9	81.4	20.5	25.2	13.3	△11.9	13.8	5.3	△8.5
합계	67.5	81.8	14.3	21.1	14.1	△7.0	11.4	4.1	△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2018, 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관광산업조사」의 관광사업체별 연간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관광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19년 26조 8,137억 9,700만원에서 2020년 8조 2,024억 1,500만원으로 69.4% 감소하였다. 특히 여행업에서 9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관광사업체 연간 총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증감률
여행업	8,627,141	435,360	△95.0
관광숙박업	8,362,772	3,961,325	△52.6
관광객이용시설업	1,083,678	651,487	△39.9
국제회의업	1,527,347	383,708	△74.9
카지노업	2,930,423	1,041,344	△64.5
유원시설업	2,133,718	556,920	△73.9
관광편의시설업	2,148,718	1,172,271	△45.4
합 계	26,813,797	8,202,415	△6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202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는 1년 주기로 작성되며, 2020년 기준의 자료가 2021년에 조사되어 2022년에 발표됨

또한 관광사업체 전체 매출액 분포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에 1억원 미만 사업체는 33.8%p 증가한 반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업체는 18.9%p,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체는 6.3%p, 10억원 이상 사업체는 8.6%p 각각 감소하였다. 1억원 미만 사업체의 비중은 관광편의시설업을 제외한 다른 관광사업체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여행업에서 52.7%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관광사업체 매출액 분포 증감 현황]

(단위: %, %p)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여행업	45.6	98.3	52.7	34.2	1.1	△33.1	9.7	0.3	△9.4	10.5	0.3	△10.2
관광 숙박업	21.7	34.3	12.6	22.2	27.6	5.4	13.5	13.3	△0.2	42.6	24.7	△17.9
관광객이용 시설업	78.9	87.6	8.7	17.3	10.0	△7.3	1.3	0.8	△0.5	2.5	1.5	△1.0
국제회의업	22.2	60.3	38.1	19.5	24.8	5.3	16.0	9.4	△6.6	42.4	5.5	△36.9
카지노업	0.0	11.8	11.8	0.0	0.0	0.0	0.0	0.0	0.0	100.0	88.2	△11.8
유원시설업	55.1	77.7	22.6	34.1	18.6	△15.5	5.2	1.7	△3.5	5.5	2.1	△3.4
관광편의 시설업	47.0	38.5	△8.5	25.5	37.7	12.2	15.0	12.2	△2.8	12.4	11.5	△0.9
합계	48.9	82.7	33.8	29.5	10.6	△18.9	9.2	2.9	△6.3	12.4	3.8	△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202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체육 분야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의 스포츠산업별 연간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스포츠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19년 80조 6,840억원에서 2020년 52조 9,180억원으로 34.4% 감소하였다. 특히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42.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산업 연간 총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2019	2020	증감률
스포츠 시설업	20,748	13,316	△35.8
스포츠 용품업	35,405	25,412	△28.2
스포츠 서비스업	24,532	14,190	△42.2
합 계	80,684	52,918	△3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 p.4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는 1년 주기로 작성되며, 2020년 기준의 자료가 2021년에 조사되어 2022년에 발표됨

또한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분포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에 1억원 미만 사업체는 15.3%p 증가한 반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업체는 10.6%p,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체는 2.6%p, 10억원 이상 사업체는 2.2%p 각각 감소하여,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산업 매출액 분포 증감 현황]

(단위: %, %p)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스포츠 산업	44.4	59.7	15.3	41.4	30.8	△10.6	7.3	4.7	△2.6	6.9	4.7	△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2, p.46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의 지속으로 활동 및 사업체 유지 등이 어려워진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 형태별로는 크게 ‘예술인 등 활동 지속 및 사업체 유지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방역 지원, 수요 확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등 활동 지속 및 사업체 유지 지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의 활동 지속과 영화, 관광, 체육 분야의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예술인의 지속적 예술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였고,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에서는 청년예술가의 창작준비 및 창작발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서는 공연장 대관료와 민간 소공연장의 공연 제작비·초청료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인디밴드 등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개최를 지원하였다.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사업에서는 상설 영화관을 대상으로, 중소 영화관 기획전 지원 사업에서는 중소·독립·예술 영화관을 대상으로 각각 영화관 대관료 및 배급사 개봉촉진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사업에서는 중소여행사를 대상으로 사업체 유지를 위한 공유공간과 정보 교류 네트워킹을 지원하였으며, 재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폐업·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예술인 등 활동 지속 및 사업체 유지 지원 관련 사업 중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사업은 지역별 수요조사와 임대차 계약 후 입주까지 시간 소요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잔여 예산은 2022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다.

2022년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사업에서 상설영화관과 중소영화관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는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예술인 등 활동 지속 및 사업체 유지 지원 관련 사업이 편성되어 문화예술, 콘텐츠, 영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예술인 등 활동 지속 및 사업체 유지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명)	2020	2021		(실) 집행액	2022
			(실) 집행액	예산(계획)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예술	일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창작준비금 지원)	46,059	42,200	69,400	69,367	60,300
예술	기금	예술창작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1,746	1,000	1,000	921	3,000
예술	기금	예술창작지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9,827	2,500	7,500	5,117	6,500
콘텐츠	일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	-	0	3,000	2,048	10,000
영화	기금	영화유통지원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	0	8,220	8,000	16,420
영화	기금	영화유통지원 (중소 영화관 기획전 지원)	3,001	0	6,000	5,952	-
관광	일반	여행업 경쟁력 강화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	0	2,000	1,026	-
체육	기금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재창업지원)	-	0	5,100	5,005	2,600

주: 1. 회계/기금, 사업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실)집행액은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액임

3. 2021년 (실)집행액은 2021년 추경예산(수정계획)의 (실)집행액임(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전문 인력 지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실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외수출콘텐츠 기업인력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외 진출 현지화 인력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서는 대중음악공연 분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는 중소방송영상제작사 제작인력 인건비를,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서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공연 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는 공연예술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영상물 제작 및 유통을 조건으로 인건비 및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서는 공연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MICE²⁾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 관광업계 IT인력 채용지원 사업,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사업, 스키장 단기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 사업에서도 각 분야의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관광업계 IT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참여기업 요건 확인과 인력 채용에 대한 기간 소요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사업과 스키장 단기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요가 줄어들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잔여 예산은 2022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다.

전문 인력 지원 관련 사업 중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2022년에도 편성되어 해당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2)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로, MICE 방문객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많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한국관광공사, MICE 정보시스템(k-mice.visitkorea.or.k), MICE 소개 참고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전문 인력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명)	2020	2021			2022
			(실) 집행액	예산(계획)		(실) 집행액	추경예산 (수정계획)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콘텐츠	일반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해외수출콘텐츠 기업인력지원)	1,677	0	9,000	8,512	-
콘텐츠	일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	0	22,800	20,511	22,800
미디어	일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	-	0	4,500	4,471	11,000
예술	일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28,373	0	45,100	42,811	22,800
예술	일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공연 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	0	6,750	5,799	-
영화	기금	영화정책지원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407	0	3,500	3,482	-
관광	일반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	0	2,700	2,585	-
관광	일반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	0	4,500	3,111	4,500
관광	일반	여행업 경쟁력 강화 (관광업계 IT인력 채용지원)	-	0	13,100	8,607	-
체육	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	0	113,900	84,168	-
체육	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스키장 단기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	-	0	6,000	3,478	-

주: 1. 회계/기금, 사업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실)집행액은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액임

3. 2021년 (실)집행액은 2021년 추경예산(수정계획)의 (실)집행액임(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여 예술과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비대면 감상이 가능한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작품 제작을 지원하였다. 그리

고 여행업계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업계의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업체 홍보, 예약 등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 여행업계 종사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형태의 행사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MICE기업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디지털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중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고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사업에 대한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잔여 예산은 2022년에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온라인 전환 관련 사업 중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MICE기업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디지털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은 2022년에도 편성되어 예술작품의 온라인 창작과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온라인·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명)	2020	2021		2022	
			(실) 집행액	예산(계획)		(실) 집행액	추경예산 (수정계획)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예술	일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14,016	4,930	4,930	4,756	5,623
관광	기금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	2,500	6,500	532	4,500
관광	기금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	0	3,000	327	-
관광	기금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여행업계 종사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2,500	3,500	2,217	-
관광	기금	MICE 산업 육성지원 (MICE기업 디지털 전환지원)	-	0	1,000	934	4,500
관광	기금	MICE 산업 육성지원 (디지털 MICE 전문인력 양성)	-	0	900	586	800

주: 1. 회계/기금, 사업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실)집행액은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액임

3. 2021년 (실)집행액은 2021년 추경예산(수정계획)의 (실)집행액임(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방역 지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영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역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공연장 방역물품 및 환기설비 개선 사업에서는 300석 미만의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 방역물품과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였다. 영화관 및 영화현장 방역 소독 지원 사업에서는 영화관에 대한 방역물품과 촬영 착수 또는 착수 예정인 한국 장편영화 촬영현장에 대한 방역비용을 지원하였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서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관광숙박업 방역 지원 사업에서는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대상으로, 유원시설업 방역 물품 지원 사업에서는 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각각 방역물품과 외주 방역 용역비를 지원하였다.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지원 사업에서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 방역물품 구입, 외주 방역 용역비 등 방역비를 지원하였고,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 사업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활동 우수 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관광 분야의 경우 2021년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관광 수요가 감소하여 연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유원시설업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은 연도말 기금 자체변경으로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없다.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지원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스키장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요가 줄어들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나 관광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에 따라 잔여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 중이며,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은 2022년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방역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명)	2020	2021			2022
			(실) 집행액	예산(계획)		(실) 집행액	추경예산 (수정계획)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예술	일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소공연장 방역물품 및 환기설비 개선)	239	148	148	139	-
영화	기금	영화정책지원 (영화관 및 영화현장 방역소독 지원)	1,022	0	1,000	706	-
관광	일반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21,752	0	25,200	19,005	39,600
관광	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광숙박업 방역 지원)	-	0	13,300	8,341	-
관광	기금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유원시설업 방역 물품 지원)	-	0	8,065	0	-
체육	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지원)	-	2,540	2,540	1,127	-
체육	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	-	0	5,000	4,963	-

주: 1. 회계/기금, 사업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실)집행액은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액임

3. 2021년 (실)집행액은 2021년 추경예산(수정계획)의 (실)집행액임(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수요 확대 지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 숙박 예약, 체육시설 이용,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 및 업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요 확대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입장료 6,000원 할인 167만장,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에서는 7만원 이하 숙박시 2만원, 7만원 초과 숙박시 3만원 할인 145만건,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3만원 할인 100만명,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에서는 관람료 7,000원 할인 40만장 규모로 각각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집합금지로 관광 및 체육 분야 사업이 11월부터 추진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나 관련 업

계의 활성화를 위해 잔여 예산은 2022년으로 이월되어 집행 중이며, 2022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수요 확대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명)	2020	2021			2022
			(실) 집행액	예산(계획)		(실) 집행액	추경예산 (수정계획)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영화	기금	영화정책지원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15,519	0	10,000	9,986	-
관광	기금	국내여행활성화지원 (숙박할인권 지원)	14,274	41,800	41,800	8,300	-
체육	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12,171	18,000	30,400	13,773	-
체육	기금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	0	3,000	521	-

주: 1. 회계/기금, 사업명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실)집행액은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액임

3. 2021년 (실)집행액은 2021년 추경예산(수정계획)의 (실)집행액임(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창작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 형평성 제고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창작준비금 사업³⁾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⁴⁾ 등에 따라 저소득층 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의 내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 예산현액 69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창작준비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58,562	85,762	0	0	85,762	85,747	99.9	0	1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55,875	83,075	0	0	83,075	83,060	99.9	0	15
창작준비금	42,200	69,400	0	0	69,400	69,4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준비금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⁵⁾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⁶⁾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3) 코드: 일반회계 1633-302의 내내역사업

4)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공개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 검토 → 문화예술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6)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금액이다.

창작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일반예술인과 신진예술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격년제로 운영되며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는데 2021년 본예산에는 1만 2,00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1.7.24.)으로 9,000명에 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2021년 본예산에 3,0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1년 창작준비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상)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지원 절차	①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행정심의 ③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사 ④ 외부 전문가 전문심의 ⑤ 결과 공지 및 지원금 지급
지원 규모	· 총 690억원(본예산 420억원+추경증액 270억원) * 사업운영비 4억원 별도 - 일반예술인: 300만원×2만 1,000명(본예산 1만 2,000명+추경증액 9,000명) * 격년제 지원 - 신진예술인: 200만원×3,000명(본예산) * 생애 1회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신청인의 실제 소득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주: 기본재산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에서 중복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자격을 충족하고도 배점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이 2021년 기준 6,862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작준비금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94억원이 전액 교부되어 99.9%인 693억 6,700만원이 실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창작준비금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42,200	69,400	69,400	69,400	69,367	0	33	9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2017~2021년) 창작준비금 사업의 예산과 지원인원 및 신청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의 경우 2017년 예산은 120억 4,200만원, 지원인원은 4,014명 규모로 신청인원 6,231명의 64.4%가 지원받았다. 2019년까지 예산과 인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본예산이 전년 대비 195억원 증액되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97억 8,000만원 증액되어 총예산 457억 8,000만원(전년 본예산 대비 2.8배 증가), 지원인원 1만 5,260명 규모로 편성되었고, 신청인원 3만 401명(전년 대비 3.4배 증가)의 50.2%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1년 본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270억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630억원(전년 본예산 대비 1.8배 증가), 지원인원 2만 1,000명 규모로 편성되었고 신청인원 3만 6,575명(전년 대비 1.2배 증가)의 57.4%가 지원을 받았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예산 60억원, 지원인원 3,000명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청인원 4,094명의 73.3%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7~2021년 창작준비금 예산 및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예산		지원인원 (B)	신청인원 (A)	지원율 (B/A)
		본예산	추경			
일반	2017	12,042	12,042	4,014	6,231	64.4
	2018	13,503	13,503	4,501	8,744	51.5
	2019	16,500	16,500	5,500	9,017	61.0
	2020	36,000	45,780	15,260	30,401	50.2
	2021	36,000	63,000	21,000	36,575	57.4
신진	2021	6,000	6,000	3,000	4,094	73.3

주: 예산은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격년제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격년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의 중복 지원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 지원 인원 대비 중복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중복 지원 인원이 1,336명으로 총 지원 인원 4,014명의 33.3%였으나 2019년에는 중복 지원 인원이 4,982명으로 총 지원 인원 5,500명의 90.6%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도 중복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7,105명이었으나 총 지원 인원 규모가 확대되어 중복 지원 인원의 비율은 총 지원 인원 1만 5,260명의 46.6%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1년 중복 지원 인원은 1만 1,821명으로 총 지원 인원 2만 1,000명의 56.3%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4회 중복 지원을 받은 인원도 493명에 이르렀다.

[2017~2021년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중복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복 지원 인원 ¹⁾	2회	1,336	3,348	4,374	4,822	7,240
	3회	-	-	608	2,283	4,088
	4회	-	-	-	-	493
	합계(A)	1,336	3,348	4,982	7,105	11,821
총 지원 인원(B)		4,014	4,501	5,500	15,260	21,000
중복 지원 인원 비율(A/B)		33.3	74.4	90.6	46.6	56.3

주: 1) 중복 지원 인원은 해당 연도에 창작준비금을 지원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1.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격년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매년 신청 가능 대상자가 다르며,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7년부터 중복 지원 인원이 발생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신청인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등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서류미비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지원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2만 2,859명(7,599명+1만 5,260명) 중 66.8%가 지원받았고 2021년에는 2만 7,862명(6,862명+2만 1,000명) 중 75.4%가 지원받아 실지원율은 전년 대비 8.6%p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격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배점부족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지원받지 못한 인원이 2020년 7,599명, 2021년 6,862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2021년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실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신청(A)	자격 미충족(B)	자격 충족			실지원율 (E/(A-B-C))
			서류미비 등(C)	배점부족(D)	지원(E)	
2020	30,401	1,235	6,307	7,599	15,260	66.8
2021	36,575	4,578	4,135	6,862	21,000	75.4

주: 실지원율=지원/(신청-자격미충족-서류미비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원로 또는 장애 예술인을 우선 선정 한 후 배점제를 적용하여 선정된다. 배점제는 10점 만점으로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최대 9, 최소 6점이 부여되며,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 최초 수혜자, 농·어촌 지역 신청자가 선정된다. 이와 같이 최초 수혜, 농·어촌 지역 거주, 코로나19 피해 등이 가산점과 우선순위로 작용하지만,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2021년 일반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① 우선 선정	· 원로, 장애 예술인은 신청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
② 배점제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제 적용 * 최대 10점 만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0~30% 9점 , 30~60% 8점, 60~90% 7점, 90~120% 6점 - 기타: 최초 수혜, 농·어촌 지역 거주, 코로나19 피해 중 해당자 최대 1점 가산
③ 우선순위	· 배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 2순위 최초 수혜자,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 추이를 살펴볼 때, 중복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자격을 충족하고도 배점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이 2021년 기준으로 6,862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기준과 함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창작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수혜자에 대한 가점 확대, 다수 중복 수혜자에 대한 감점 부여 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다 정교화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작준비금 사업 참여시 의무사항인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창작준비금을 지원 받은 예술인의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한편, 보고서 미제출 예술인이 지원받은 창작준비금을 환수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준비금 지급 후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받은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술인에 대해 5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창작준비금 사업에서 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7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08명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463명에 이르는 등 보고서 미제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작준비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 중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유효기간 내에 일정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창작준비금 신청 당시 예술인의 예술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받은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⁸⁾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준비금 사업 참여시 의무사항인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예술인이 지원받은 창작준비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7)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별표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에서 분야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5년,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3년,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2년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수를 차지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취지가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서 미제출 예술인이 지원받은 창작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이행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5~2021년 창작준비금 사업 보고서 미제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고서 미제출 인원	37	46	53	60	108	188	4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¹⁰⁾ 등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 예산 현액 45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1,595	63,445	0	△5	63,440	63,423	99.9	0	17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0	45,100	0	0	45,100	45,1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예술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직접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지침 수립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을 관리한다. 간접보조사업자인 5개 장르의 대표 협회·단체에서 공

9) 코드: 일반회계 1632-324의 내역사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 단체(개인도 가능)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연 단체가 필요한 예술인력 채용 후보자를 선발하면, 소관 장르의 대표 협회·단체에서 예술인력을 최종 선발하여 일괄 채용 후 각 공연 단체에 파견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지원절차	① 5개 장르별 대표 협회·단체: 공연 단체(개인도 가능)를 선정 ② 선정된 공연 단체: 예술인력을 선발한 후 채용 후보자 명단을 소관 장르 협회·단체에 제출 ③ 소관 장르 협회·단체: 채용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협회 소속으로 일괄 채용하고, 선정된 단체에 예술인력 파견 및 임금 지급
지원규모	· 총 451억원 - 예술인력 인건비 지원: 423억원 : 제1회 추경 315억원(3,500명×180만원×5개월) : 제2회 추경 108억원(2,000명×180만원×3개월) - 6개 보조사업자 운영비 지원: 28억원 : 제1회 추경 21억원(6개×3억 5,000만원) : 제2회 추경 7억원(6개×1억 1,700만원)
보조사업자	· 직접보조사업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간접보조사업자: 5개 장르별 대표 협회·단체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2020.7.3.)에서 3,000명에 대한 5개월분 지원 사업 예산 28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2021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1.3.25.)에서 3,500명에 대한 5개월분 지원 예산 336억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1.7.24.)에서 2,000명에 대한 3개월분 예산 115억원이 반영되었다. 2022년에는 본예산에 2,000명에 대한 6개월분 예산 228억원이 반영되어 2020년부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편성 내역]

구분	2020	2021		2022
	제3회 추경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본예산
총 예산규모	288억원	336억원	115억원	228억원
인건비 지원규모	3,000명×180만원 ×5개월	3,500명×180만원 ×5개월	2,000명×180만원 ×3개월	2,000명×180만원 ×6개월
인건비 지원기간	2020.9.~2021.1.	2021.7.~11.	2021.10.~12.	2022.5.~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일자리에 반복적으로 중도포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예술인력의 중도포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술인력의 차질없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예산 451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현액 451억원의 94.9%인 42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교부액	예산현액 (A)	실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B/A)
본예산	추경						
0	45,100	45,100	45,100	42,811	1,746	543	9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예술인력 채용 및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인원 5,784명 중 5,451명은 계약한 근무기간 동안 모두 근무하였으나, 333명은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었다.

[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예술인력 채용 및 근무 현황]

(단위: 명)

구분	채용			합계
	정상	대체	지연	
만근	4,828	221	402	5,451
중도포기	270	63	0	333
합계	5,098	284	402	5,784

주: 1. 정상 채용은 사업 기간(제1회 추정 2021.7.~11., 제2회 추정 2021.10.~12.)에 맞추어 채용된 경우, 대체 채용은 기존 채용자의 중도포기에 따라 대체하여 채용된 경우, 지연 채용은 각 공연 단체 사정으로 사업 기간보다 늦게 채용된 경우임

2. 만근은 채용 기간 동안 모두 근무한 경우이고, 중도포기는 채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경우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연 단체는 예산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예술인력 후보자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소관 장르 협회·단체에서는 예술인력을 최종 선발하여 일괄 채용 후 공연 단체에 파견한다. 공연 단체에 파견된 예술인력은 계약 기간 동안 모두 근무하기도 하지만, 공연 단체와 예술적 지향이 맞지 않거나 공동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업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중도포기 인원 333명 중 63명은 기존에 채용된 예술인력이 중도포기하고 다른 예술인력으로 대체 채용된 후에 동일한 일자리에서 재차 중도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일한 일자리에서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예술인력이 계약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 또는 예술인력이 파견된 공연 단체 등 근무 환경에 의한 것인지 등 예술인력의 중도포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술인력의 차질없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에서는 공연 단체 선정, 예술인력 채용 등 실질적인 과정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및 2021년 사업에서 예술인력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간접보조사업자인 5개 장르의 대표 협회·단체가 공연 단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연 단체가 예술인력 채용 후보자를 선발하며, 소관 장르의 대표 협회·단체가 적격성 심사 후 예술인력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과정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관리를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0~2021년 사업에서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부정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서, 2021년에는 무용, 전통예술, 음악 분야에서 각각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공연 단체 대표가 예술인력으로 근무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예술인력 급여의 일부를 인건비가 아닌 공연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단체를 허위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등이었다.

2021년 사업에서는 2020년에 비해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감소하였으나 예술인력 출퇴근 허위기록, 근무하지 않는 예술인력 등록 등 2020년과 다른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11)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환수 조치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정행위 관련 환수 대상 금액도 2020년 275만원에서 2021년 1,89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2,000명에 대한 6개월 간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간접보조사업자인 5개 장르의 대표 협회·단체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미 적발된 사례가 인지되어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2021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부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

구분	장르	단체명	부정행위 내용	조치사항
2020	음악	○○양상블	단체 대표 간 서로 상대방 단체 소속 예술인력으로 근무	보조금 지급 전 단체 선정 취소
		아트○○	단체와 예술인력 간 별도 계약서 작성	보조금 지급 전 단체 선정 취소
		○○ (개인대표자)	예술인력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선정 취소, 275만원 환수 진행중
	전통 예술	○○사운드	해외 체류 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 및 선정	보조금 지급 전 단체 선정 취소
		창작○○	단체 대표(A)가 타 단체(B) 예술인력으로 근무	A: 지원 종료, B: 대체 인력 선발
		○○협동조합	예술인력과 단체 협의 하에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단체 선정 취소
2021	무용	○○아카데미	예술인력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단체 선정 취소, 116만원 환수하여 예술인력에게 지급
	전통 예술	○○예술단	예술인력 출퇴근 허위기록	보조금 지급 전 단체 선정 취소
	음악	○○양상블	근무하지 않는 예술인력 등록 후 단체가 인건비 사용	단체 선정 취소, 1,300만원 환수
		양상블○○	예술인력 인건비 일부를 단체 필요 경비로 사용	단체 선정 취소, 480만원 환수하여 예술인력에게 지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¹²⁾은 「관광진흥법」 제48조¹³⁾ 등에 따라 중소 여행사의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을 통해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의 내내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 계획현액 6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전용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당초	수정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21,671	30,341	45	0	30,386	30,348	99.9	0	3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6,671	14,671	0	0	14,671	14,649	99.9	0	22
여행업 생태계 전환 핵심역량 강화	5,000	13,000	0	0	13,000	13,000	100.0	0	0.3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2,500	6,500	0	0	6,500	6,500	1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여행 업 등록¹⁴⁾ 사업자로 창업 1년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12)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1-306의 내내내역사업

13)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흥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1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동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이 서비스 제공기업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환 과업을 수행한 후, 서비스 제공기업이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다르며, 디지털 활용 경험이 부족한 체험형은 최대 2,000만원, 디지털 활용 경험이 있는 주도형은 최대 3,500만원이고,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으로 선정되면 체험형은 최대 2,000만원, 주도형은 최대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추가 과업을 수행한다.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 사업자로 창업 1년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절차	① 수혜기업(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② 수혜기업이 서비스 제공기업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③ 수혜기업의 계약금 납부: 수혜기업 → 서비스 제공기업 ④ 수혜기업과 서비스 제공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⑤ 과제 수행 후 비용 정산: 한국관광공사 → 서비스 제공기업 ⑥ 발표 및 평가 후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지원되며, 과제 수행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지원규모	· 디지털 전환 지원 220개사: 48억 5,000만원 - 체험형: 38억원(190개사 × 최대 2,000만원) - 주도형: 10억 5,000만원(30개사 × 최대 3,500만원) · 디지털 전환 우수성과 기업 인센티브 지원 35개사: 7억 5,000만원 - 체험형: 6억원(30개사 × 2,000만원) - 주도형: 1억 5,000만원(5개사 × 최대 3,000만원)

주: 체험형은 디지털 활용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가시적 효과가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주도형은 디지털 활용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수립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맞춤형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시 연도 내에 수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추후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액 65억 원은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5억 3,200만원으로 계획현액의 8.2% 수준이다.

[2021회계연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		교부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2,500	6,500	6,500	6,500	532	5,968	0	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2021년에는 1차 수혜기업 90개사에 대해 19억 8,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내역]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기업 수			지원액
		계획	신청	선정	
1차 수혜기업	체험형	78	223	78	1,560
	주도형	12	65	12	420
합계		90	288	90	1,980

주: 2021년 12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기간도 2021년 5~12월에서 2021년 5월~2022년 8월로 연장하여 2021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동 사업의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 따라 추진된 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사업 준비 기간은 2021년 5~6월로 둘 다 동일하다. 그러나 수혜기업 선정과 지원 일정에는 차이가 있는데, 1차 수혜기업의 경우 당초에는 6월에 선정하여 이후 기간 동안(6~12월)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추진은 수혜기업을 7~8월에 선정하고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은 2021년 9월~2022년 1월에 하였다. 2차 수혜기업의 경우 당초에는 7~8월에 선정하고 이후 기간 동안(8~12월)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추진은 수혜기업을 9~10월에 선정하고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은 2021년 11월~2022년 3월에 하였다. 그리고 우수성과 기업 선발과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당초에는 2021년 12월 한 달 동안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추진은 2022년 1~2월에 1차 우수성과 기업을 선발하고 2~4월에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을 하였으며, 3~4월에 2차 우수성과 기업을 선발하고 3~6월에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내에 1차와 2차 수혜기업 지원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우수성과 기업 선정 및 이에 따른 지원은 모두 2022년에 추진하였다.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당초 대비 변경 계획 및 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및 추진 내역		
기간	주요내용	기간	주요내용	실집행액
'21.5. ~6.	· 기업 지원 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 운영 사무국 모집 공고 및 선정 · 디지털 역량진단 항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21.5. ~6.	· 기업 지원 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 운영 사무국 모집 공고 및 선정 · 디지털 역량진단 항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7
'21.6.	· 1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수혜기업 대상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21.6.~12.) · 디지털 전환지원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 수혜기업 역량진단 및 사전·전담 컨설팅 실시	'21.7. ~8.	· 1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수혜기업 대상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21.9.~'22.1.) · 디지털 전환지원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 수혜기업 역량진단 및 사전·전담 컨설팅 실시 · 운영 자문회의, 사업 홍보	360
'21.7. ~8.	·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수혜기업 대상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 * 1차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2차 모집기업 대상 사업 개선 추진	'21.9. ~10.	·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 수혜기업 대상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21.11.~'22.3.) · 운영 자문회의, 사업 홍보	40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및 추진 내역		
기간	주요내용	기간	주요내용	실집행액
'21.12.	· 과제 종료 후 환류 및 고도화 방안 도출 ·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및 선도 사례 선정 · 우수성과 기업 인센티브 지원 · 여행업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종합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21.10.~12.	· 과제 수행비 정산	125
		소계		532
-	-	'22.1.~2.	· 1차 우수성과 기업 선발 * 수혜기업 대상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22.2.~4.)	5,357
		'22.3.~4.	· 2차 우수성과 기업 선발 * 수혜기업 대상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22.3.~6.)	
		'22.5.~6.	· 과제 수행비 정산, 운영 사무국 비용 지급 등	(623)
		'22.7.~8.	· 사업 회계 감사 및 사업 종료	

주: 2022년 1~6월 중순 실적행액은 53억 5,700만원이고, 향후 6억 2,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1차 사업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2차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체험형의 경우 1차 수혜기업 지원 기간인 2021년 9~12월 사이에 2차 수혜기업 지원을 시작(2021년 11월)하고 주도형의 경우에도 1차 수혜기업 지원 기간인 2021년 9월~2022년 1월 사이에 2차 수혜기업 지원을 시작(2021년 11월)하는 등 1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전에 2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사업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2차 사업을 개선하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1차 사업과 2차 사업은 지원 시기만 다르게 운영되었다.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중 수혜기업 지원 추진 일정]

구분	구분	1차	2차
공통	공고 및 선정	2021.7.~8.	2021.9.~10.
체험형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	2021.9.~12.	2021.11.~2022.2.
주도형	과제 수행 및 예산 지원	2021.9.~2022.1.	2021.11.~202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와 동 사업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추진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2021년에는 1차 수혜기업 지원만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여부와 규모, 2차 수혜기업 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여 2022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수행 전에 2021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규모로 예산을 확대(25억원→65억원)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현액 65억원의 8.2%인 5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금 자체변경으로 증액된 40억원을 포함하여 59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 시 연도 내에 수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추후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4.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가. 현 황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¹⁵⁾은 「관광진흥법」 제48조¹⁶⁾ 등에 따라 중소기업사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여행사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의 내내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 계획현액 3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21,671	30,341	45	0	30,386	30,348	99.9	0	3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6,671	14,671	0	0	14,671	14,649	99.9	0	22
여행업 생태계 전환 핵심역량 강화	5,000	13,000	0	0	13,000	13,000	100.0	0	0.3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0	3,000	0	0	3,000	3,000	1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5)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1-306의 내내내역사업

16)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2021년 중소기업 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상 국내여행업 등으로 1년 이상 등록¹⁷⁾ 중인 중소기업이다. 동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여행사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수 완료 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대상별로 온라인 유통플랫폼 이용수수료, 입점수수료, 광고비 등을 최대 500만원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등록할 여행상품 상세페이지 제작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하였다.

[2021년 중소기업 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등록 1년 이상인 여행사(법인/개인) ·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여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 중이거나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입점 준비 중인 여행사(공고일 2개월 이내 입점 가능한 여행사) *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식사, 숙박, 교통편 등 여행콘텐츠가 2개 이상 결합된 국내여행 상품 · 2019년 매출액 50억원 미만 여행사
지원절차	· 참여 기업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수 완료 후 비용 지원
지원규모 ¹⁾	· 20억원 - 온라인 유통플랫폼 이용 비용 지원 : 최대 500만원(광고비는 200만원 한도 내) -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등록할 여행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최대 50만원 * 온라인 유통플랫폼 신규 구축 5억원 별도

주: 1) 지원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이며, 2022년 3월 계획변경을 통해 지원규모는 14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온라인 유통플랫폼 신규 구축비는 10억원으로 변경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7)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당초 기존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용 지원만 계획하였다가 신규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수정계획액 3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행 기준으로 26억 7,3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여행업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중도 변경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사의 온라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기금 자체변경으로 계획되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으로 여행사가 기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용수수료, 입점수수료, 광고비, 상세페이지 제작)을 25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으로 온라인 유통 사업화 지원 방안 수립 및 사업 운영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1월에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비용을 5억원(25억원→20억원) 감액하여 신규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 배정하였다.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비용을 5억 3,000만원 감액(20억원→14억 7,000만원)하고, 신규 플랫폼 구축 비용을 5억원(5억원→10억원), 기타 운영비 등을 3,000만원(2억원→2억 3,000만원) 각각 증액 조정하였다.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2021.4.)	1차 변경(2021.11.)	2차 변경(2022.3.)
추진 기간		2021.6.~2021.12.	2021.6.~2022.3.	2021.6.~2022.10.
예산내역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2,500	2,000	1,470
	신규 플랫폼 구축	0	500	1,000
	연구용역	300	300	300
	기타 운영비 등	200	200	230
	합계	3,000	3,000	3,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1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한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에 신규 플랫폼 구축 지원이 추가되어 두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에 대한 부분만 추진되었으며, 실행액은 계획현액 30억원의 10.9%인 3억 2,700만원 수준이다.

[2021회계연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		교부액	교부일	계획현액 (A)	실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B/A)
당초	수정							
0	3,000	3,000	2021.7.29.	3,000	327	2,673	0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실행액 3억 2,700만원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1억 4,600만원은 온라인 유통 사업화 지원 방안 수립 및 사업 운영 용역에 대한 선금과 중도금으로 집행되었는데, 해당 용역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인 여행업계의 플랫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1억 2,500만원은 이용수수료, 입점수수료, 광고비,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여행사에 대한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비용으로 집행되었으며, 3,900만원은 여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표준 인증을 위한 정보보안기준 준수평가 지원금으로, 1,700만원은 사업 운영 및 홍보 등의 비용으로 각각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2021년에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용역비와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등에 대한 3억 2,700만원만 집행되었고, 사업 계획 변경으로 추가된 신규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부분은 2022년 4월에 신규 플랫폼 구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PMO 용역 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6월에 신규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2022년에 추진되었다.

[중소여행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실집행액		실집행 내역
	2021	2022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용역	146	88	· 온라인 유통 사업화 지원 방안 수립 및 사업 운영 용역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125	325	· 기존 플랫폼 활용지원 지원금 지급
신규 플랫폼 구축 지원	0	338	· 신규 플랫폼 구축 PMO 용역 · 신규 플랫폼 구축 용역
정보보안기준 준수평가 지원금	39	31	· 정보보안기준 준수평가 지원금 지급
사업 운영 및 홍보 등	17	20	· 지원 대상 여행사 모집 인건비, 운영비 등
합 계	327	802	

주: 2022년 6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신규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부분은 2021년에 추진되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유통 사업화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등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 사업에서 신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행 내역을 통해 2021년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볼 때, 2021년에는 여행업계에 대한 플랫폼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플랫폼 활용 지원 비용을 적정 규모로 편성한 후에, 2022년에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여행업계에 대한 온라인 유통 사업화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에 따라 지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동 사업의 계획현액 30억원 중 10.9%인 3억 2,700만원을 실적행하였고 26억 7,300만원은 이월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실적행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7월에 수정계획액 3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용역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여행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실적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중도 변경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5.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의 계획 변경 지양 및 집행 관리 필요

가. 현 황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¹⁸⁾은 「관광진흥법」 제48조¹⁹⁾ 등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또는 외주 방역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 계획현액 80억 6,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10,751	19,996	59	0	20,055	19,950	99.5	0	105
유원시설 안전관리	1,358	9,823	0	0	9,823	9,823	100.0	0	0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0	8,065	0	0	8,065	8,065	1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8)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7의 내역사업

19)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체이다.²⁰⁾ 동 사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유원시설업체에 대해 방역물품 쇼핑물(물품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유원시설업체가 이를 사용하여 방역물품을 구입하거나 외주 방역 용역을 실시할 경우 포인트를 차감하여 해당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지원규모는 총 76억 9,100만원으로,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기종 수와 유원시설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중인 업체 포함
지원절차	1) 방역물품 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지원 대상 업체: 방역물품 쇼핑물(물품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지급 ② 지원 대상 업체가 물품물에서 필요 물품 구입 ③ 방역물품 납품업체 → 지원 대상 업체: 물품을 통해 납품 ④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역물품 납품업체: 물품 대금 정산 2) 외주 방역 용역비 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지원 대상 업체: 방역물품 쇼핑물(물품물)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지급 ② 지원 대상 업체가 방역소독 실시 후 외주방역 용역비 지급 신청 ③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물품물 포인트를 차감하여 지원 대상 업체 계좌로 지급
지원규모	· 76억 9,100만원 - 종합유원시설업 51개소: 개소당 600~1,500만원 - 일반유원시설업 387개소: 개소당 300~1,500만원 - 기타유원시설업 2,226개소: 개소당 200~300만원 * 유기기구 기종 수 및 유원시설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등에 따라 유원시설업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구 분	시설기준	비고
종합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 대지면적 1만㎡ 이상, 예비전원시설, 의무시설, 안내소, 음식점·매점 설치	허가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안내소 설치, 구급약품 비치	
기타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구급약품 비치	신고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을 2021년 말에 수립하여 추진하다가 집행실적이 저조하자 당초 사업 계획 기간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에 필요한 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연도 말 신규 사업 추진과 사업 계획 중도 변경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계획액 80억 6,500만원은 전액 교부되었으나, 교부액은 전액 실집행되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		교부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0	8,065	8,065	8,065	0	8,065	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입장객 감소 등으로 유원시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었고²¹⁾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국내 여가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유원시설업계의 방역 수용태세 강화가 필요하여 방역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21년 12월에 기금 자체변경으로 동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2022년 6월로 계획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1) 유원시설업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20년 약 5,569억원으로, 2019년 약 2조 1,337억원 대비 1조 5,768억원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2022.

유원시설업계에 대한 방역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계획 수립과 업체 선정 등의 준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연말에 추진하도록 계획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는 사업 계획만 수립하였고, 2022년 1월부터 방역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2월부터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시작하여 3월부터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방역물품 또는 외주 방역 용역비를 지원하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시기	집행액	추진 내역
2021.12.		· 사업 계획 수립
2022.1.		· 방역물품 쇼핑물(물품물) 운영 업체 선정
		· 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6개)
2022.2.		· 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13개)
	17	· 사업홍보물 작성(리플릿, 봉투, 스티커 등)
	8	· 지자체 및 유원시설업체 대상 사업 안내 리플릿 발송
2022.3.		· 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11개)
		· 지원 대상 업체 선정(1,211개) 및 포인트 지급(3,430백만원)
2022.4.	1	· 지자체 대상 사업 독려 공문 발송
		· 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6개)
		· 지원 대상 업체 선정(124개) 및 포인트 지급(462백만원)
	682	· 방역 지원액 정산(3월분→4월 정산)
2022.5.		· 유원시설업체 대상 참여 독려 공문 발송
		· 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1개)
		· 유원시설업체 현장점검 실시
		· 지원 대상 업체 선정(123개) 및 포인트 지급(449백만원)
	796	· 방역 지원액 정산(4월분→5월 정산)
2022.6.	1,049	· 방역 지원액 정산(5월분→6월 정산)
합계	2,553	

주: 2022년 6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원시설업계에 대한 방역 지원의 필요로 2021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해 지급된 포인트는 2022년 6월 기준 43억 4,100만원으로 계획액 76억 9,100만원의 56.4%이고, 실제 사용 금액인 사용 포인트는 25억 2,700만원(5월까지 사용분 정산)으로 계획액 76억 9,100만원의 32.9% 수준이다.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종합유원시설	일반유원시설	기타유원시설	합계
계획(A)		499	1,565	5,627	7,691
지급 포인트	지원(B)	400	824	3,117	4,341
	계획 대비 지원 비율(B/A)	80.2	52.7	55.4	56.4
사용 포인트	지원(C)	271	496	1,760	2,527
	계획 대비 지원 비율(C/A)	54.3	31.7	31.3	32.9

주: 2022년 6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화 및 방문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방역물품 위주의 지원으로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를 다수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에 대한 적정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물품 위주의 지원으로 유원시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2년 6월 기준으로 동 사업에서 유원시설업체가 구매 가능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37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업체를 확보하여 방역물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납품업체 및 구매 가능 물품 현황]

(단위: 개사)

납품업체 선정시기	납품업체 선정 수	구매 가능 물품	납품가능 시기
2022.1.	6	· 마스크 2종 · 열화상카메라 3종 · 살균기, 소독기 각 1종	2022.3. ~6.
2022.2.	13	· 소독기 3종 · 손소독제, 소독수 각 2종 · 태블릿PC, 체온계, 비닐장갑, 공기청정기, 소독티슈, 향균 필름, 마스크 각 1종	
2022.3.	11	· 공기청정기 4종 · 소독티슈 3종 · 살균기, 손세정제 각 2종 · 니트릴장갑, 소독기, 자가진단 키트 각 1종	
2022.4.	6	· 손세정제, 살균기 각 2종 · 소독기, 소독티슈 각 1종	2022.4. ~6.
2022.5.	1	· 소독제 1종	2022.5. ~6.
합계	37		

주: 2022년 6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에서 적정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유원시설업체가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말 기준 가정산 결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원 예산 76억 9,100만원 중 37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7~11월까지 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개인방역물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휴가 등으로 유원시설업체에 관람객이 집중되고 관람객에 대한 개인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유원시설업체 방문객에게 배포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방역물품 패키지(손소독겔, 소독티슈, 마스크 등)를 유원시설업체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12월에 기금 자체변경으로 추진한 2021년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에도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당초 사업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 다른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에 필요한 사업의 적정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연도 말 신규 사업 추진과 사업 계획의 중도 변경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6.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²²⁾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²³⁾ 등에 따라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프로스포츠 관람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 계획현액 3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23,044	165,884	0	0	165,884	165,881	99.9	0	3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0	3,000	0	0	3,000	3,000	1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경우 50% 할인 쿠폰(최대 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예매처 당 1인 2매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 지원규모는 40만장으로 계획되었다.

22)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0의 내역사업

23)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021년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내용	· 프로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온라인 예매시 50% 할인쿠폰 (최대 7,000원) 지급
지원규모	· 27.1억원 : 40만장 × 최대 7,000원 * 매월 예매처 당 1인 2매까지 가능 * 사업 운영비 2.9억원 별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바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한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1.7.24.)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액 3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계획현액의 17.4%인 5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다.

[2021회계연도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		교부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0	3,000	3,000	3,000	521	2,479	0	1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1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관중입장 제한 정도]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관중 입장 규모
2020.11.~ 2021.7.	· 실내외 경기장 구분 없이 거리두기 단계별 입장 규모 제한 - (1단계) 50%, (1.5단계) 30%, (2단계) 10%, (2.5단계) 무관중, (3단계) 경기 중단
2021.7.~ 10.	· 실내외 구분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입장 규모 제한 - 실외: (1단계) 70%, (2단계) 50%, (3단계) 30%, (4단계) 무관중 - 고척: (1단계) 60%, (2단계) 4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 - 실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
2021.11.~ 2022.4.	· 접종완료자와 접종미완료자를 구분하여 입장 규모 제한 - 접종완료자만 입장 시: 100% - 접종(미)완료자 구분 없는 경우: 50%
2022.4.~	· 입장규모 제한 해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이 편성되었던 2021년 7월 당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을 2021년 8~12월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비를 한 번에 전액 교부하였고 2021년 실행행률이 17.4%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시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한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¹⁾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수입 계획현액 5,396억 3,300만원 중 4,230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다. 2021년도 지출 계획현액 5,396억 3,300만원 중 78.4%인 4,230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65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 진흥기금	523,902	539,633	539,633	423,005	423,005	0	0	100.0

주: 여유자금회수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문화예술 진흥기금	523,902	539,633	539,633	423,005	78.4	116	116,512

주: 여유자금운용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에는 여유자금회수와 여유자금운용 등 재정수지를 보전 해주는 보전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실질적인 수입·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외한 재정운용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260억 6,000만원 감소한 3,220억 1,000만원이고 지출은 전년 대비 201억 9,200만원 증가한 3,523억 5,600만원으로 수지차는 전년 대비 462억 5,200만원 감소하여 303억 4,600만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감소하였고 감소 규모도 확대(2020년 188억 9,500만원 감소 → 2021년 260억 6,000만원 감소)된 반면,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다소 축소(2020년 580억 6,900만원 증가 → 2021년 201억 9,200만원 증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지출의 증가로 수지차는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 산					계 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A) ¹⁾	196,717 (△18,583)	286,270 (89,553)	366,965 (80,695)	348,070 (△18,895)	322,010 (△26,060)	361,927 (39,917)
지출(B) ²⁾	229,496 (996)	241,223 (11,727)	274,095 (32,872)	332,164 (58,069)	352,356 (20,192)	395,116 (42,760)
수지차(A-B)	△32,779 (△19,579)	45,047 (77,826)	92,870 (47,823)	15,906 (△76,964)	△30,346 (△46,252)	△33,189 (△2,843)
여유자금 ³⁾	54,554 (△26,746)	92,046 (37,492)	160,404 (68,358)	167,253 (6,849)	115,339 (△51,914)	82,150 (△33,189)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여유자금운용 제외

3) 기말잔액 기준

1. 2022년 예산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1차 변경 '22.3.8., 2차 변경 '22.3.21.)

2.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지출 사업과 감소하고 있는 수입 재원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지출 사업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²⁾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에서 기금운영비, 기금간거래,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사업은 1개 프로그램인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이며, 이는 3개 단위 사업인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향유기회확대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결산 및 2022년 계획의 추이를 살펴보면, 동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예술창작역량강화와 예술향유기회확대 단위사업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사업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에는 동 프로그램 사업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529억 7,2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2019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세부사업이 전년 대비 105억원 확대된 190억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단위사업 중 문화예술향유지원 세부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술계 지원과 경제적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자체변경을 통해 미술전시관람료지원 사업 52억원과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 158.8억원이 신규 추진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전년 대비 181억원 증액된 1,096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2021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21억 7,300만원 증가한 3,231억 8,700만원 규모이다. 이는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확대 추진되었던 사업이 2021년에도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데, 해당 사업으로는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세부사업이 전년 대비 50억원 확대된 24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단위사업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전년 대비 305억원 증액된 1,401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07,997	221,804	248,042	301,014	323,187	365,594
(전년 대비 증감)	-	(13,807)	(26,238)	(52,972)	(22,173)	(42,407)
예술창작역량강화	43,655	47,028	65,655	93,288	103,412	106,702
(전년 대비 증감)	-	(3,373)	(18,627)	(27,633)	(10,124)	(3,290)
- 예술창작지원	23,683	33,545	43,238	59,816	58,123	53,414
- 예술인력육성	14,004	13,483	13,917	14,472	21,289	29,388
- 국제예술교류지원	5,968	-	-	-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	8,500	19,000	24,000	23,900
지역문화예술진흥	31,774	32,065	27,687	20,314	18,589	10,947
(전년 대비 증감)	-	(291)	(△4,378)	(△7,373)	(△1,725)	(△7,642)
- 지역문화예술지원	7,381	7,188	6,668	9,168	9,825	3,470
- 예술의관광자원화	24,393	24,877	21,019	11,146	8,764	7,477
예술향유기회확대	132,568	142,711	154,700	187,412	201,186	247,945
(전년 대비 증감)	-	(10,143)	(11,989)	(32,712)	(13,774)	(46,759)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5,560	24,759	22,471	20,695	20,324	21,671
- 문화예술향유지원	107,008	117,952	132,229	166,717	180,862	226,2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 소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3)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공익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복권기금 추진 사업 현황]

세부사업	사업명	복권기금 추진	사업내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1761-305)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용자)	2019년 부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700만원 이하), 전·월세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1억원 이하), 코로나19 특별용자(1,000만원 이하) 지원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통합문화 이용권	2014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대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일부는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일반회계로 조정되어 기금 재원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먼저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중 지방이양이 가능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020년에는 약 93억원 규모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사업이 예술의관광자원화 세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2022년에는 62억원 규모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이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지방 이양 사업 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조정내역	사업내용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 (1764-301) → 지방 이양	2020년 지방 이양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 (1764-300) → 지방 이양	2022년 지방 이양	공연단체 역량강화 및 시도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 자치단체 및 민간공연예술단체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일반회계 조정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라 공모 및 심의를 거쳐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금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는 149억원 규모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과 288억원 규모의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사업이 각각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되었고, 2021년에는 45억원 규모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사업, 2022년에는 10억원 규모의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각각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일반회계 편성 또는 이관 사업 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조정내역	사업내용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1633-309)	2020년 일반회계 신규 편성	예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 지원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32-324)	2020년 일반회계 신규 편성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1765-300) → 예술의 산업화 추진 (1633-306)	2021년 일반회계 이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기관 경상비 지원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예술인력육성 (1761-301)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133-300)	2022년 일반회계 이관	민간 부문 등록 사립미술관의 프로그램(기획전시 및 교육)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와 같은 복권기금 사업 추진과 지출 사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입 재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수입 재원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⁵⁾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운용 수익금, 건축주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당시⁶⁾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⁷⁾에 따라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 문화재로 지정된 고적 및 사적지의

4)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6)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 1972. 8. 14. 제정, 1972. 8. 14. 시행)

제6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문학·미술·음악·연예부문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7)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 1972. 8. 14. 제정, 1972. 8. 14. 시행)

제7조 (기금의 모금)

① 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는 해당 조항⁸⁾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반국민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2헌가2, 2003년 12월 18일)에 따라 2004년부터 부담금이 폐지되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유자금(적립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금 소진으로 인한 고갈이 우려되어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중 여유자금회수를 제외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3,220억 1,0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은 404억 8,600만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12.6%이고 정부내부수입은 2,815억 2,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87.4%이다. 이와 같이 정부내부수입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체수입의 약 7배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추이는 2019년 83.3%(3,055억 6,100만원), 2020년 84.3%(2,933억 2,400만원), 2021년 87.4%(2,815억 2,400만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고궁·릉·박물관·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8)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5014호, 1995. 12. 6. 시행)

제19조(기금의 모금)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종교단체 소유의 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승인받은 때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모금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운영자가 모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	366,965	100.0	348,070	100.0	322,010	100.0
1. 자체수입 소계	61,404	16.7	54,746	15.7	40,486	12.6
2. 정부내부수입 소계	305,561	83.3	293,324	84.3	281,524	87.4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비중은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내부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기금 수입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전입금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복권기금이 51%,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1%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20년 14.4%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	366,965	100.0	348,070	100.0	322,010	100.0
1. 자체수입 소계	61,404	16.7	54,746	15.7	40,486	12.6
2. 정부내부수입 소계	305,561	83.3	293,324	84.3	281,524	87.4
일반회계전입금	50,000	13.6	21,000	6.0	20,370	6.3
기금전입금	255,561	69.6	272,324	78.2	261,154	81.1
- 복권기금	105,561	28.8	122,324	35.1	164,154	51.0
-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00	27.3	100,000	28.7	97,000	30.1
- 관광진흥개발기금	50,000	13.6	50,000	14.4	0	0.0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비중은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기금의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4호⁹⁾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공익 사업 추진으로 복권 기금에서 전입금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⁰⁾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체육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6~2020년 한시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출할 계획이었으며, 2021년에는 자체수입 재원인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출국납부금	400,591	92,996	13,439
카지노납부금	247,077	269,669	85,8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도 2021년에 자체수입 재원인 법정부담금(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을 30억원 축소(1,000억원 → 970억원)하였다.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10) 2017년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정과제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국민체육진흥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9,276	20,041	13,1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회복으로 다른 기금에서의 전입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다른 기금의 재원 확보 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자체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에서 자체수입은 12.6%를 차지하고 있다. 용자 원금 회수, 보조금 반납금 등 지출 사업에 따라 회수하거나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제외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건물대여료, 입장료수입, 민간출연금이 있으며, 이 중에서 민간출연금이 5.7%(182억 1,4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세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	366,965	100.0	348,070	100.0	322,010	100.0
1. 자체수입 소계	61,404	16.7	54,746	15.7	40,486	12.6
건물대여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등 문예위 운영 시설 임대 수입	1,002	0.3	468	0.1	783	0.2
입장료수입						
골프장 뉴서울CC, 아르코미술관 등 운영 수입	5,448	1.5	5,227	1.5	2,593	0.8
민간출연금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 민간 기부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기금 출연 등	30,663	8.4	18,258	5.2	18,214	5.7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타잡수입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등	1,254	0.3	1,219	0.4	2,286	0.7
기타민간응자원금 회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사업 상환 원금 수입	0	0.0	0	0.0	1,405	0.4
기타민간이자수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사업 상환 원금이자 수입	0	0.0	0	0.0	266	0.1
기타경상이전수입						
보조금 반납금	8,906	2.4	16,816	4.8	10,886	3.4
기타재산이자수입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금 및 이자	3,438	0.9	4,088	1.2	4,053	1.3
기타영업외잡수입						
경륜경정 사업 발생 수익금 중 법정 비율에 따른 전입금	10,693	2.9	8,670	2.5	0	0.0
2. 정부내부수입 소개	305,561	83.3	293,324	84.3	281,524	87.4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2. 비중은 문예기금 수입 총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에는 수입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에 2.5%를 차지하였던 기타영업외잡수입은 경륜·경정사업자의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2009년부터 「경륜·경정법」 제18조 등¹¹⁾에 근거를 두고 확보된 재원이다. 경륜·경

11)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수익금은 해당 연도 수입을 다음 연도에 다른 기금으로 출연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영업으로 경륜·경정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2021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륜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A)	1,772,118	1,679,710	1,610,275	250,392	225,060
환급금(B)	1,276,491	1,209,862	1,159,781	180,341	162,113
경주제세 등 운영경비(C)	426,326	415,433	407,196	139,318	136,761
당기순이익(D=A-B-C)	69,301	54,415	43,298	△69,267	△73,814

주: 재무결산에 따른 해당 연도 실적(타기금으로의 출연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경정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A)	636,901	621,015	599,432	68,042	151,347
환급금(B)	459,147	447,651	432,040	49,039	109,067
경주제세 등 운영경비(C)	166,636	166,063	160,631	49,084	67,541
당기순이익(D=A-B-C)	11,118	7,301	6,761	△30,081	△25,261

주: 재무결산에 따른 해당 연도 실적(타기금으로의 출연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수입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출연금(기부금) 징수액이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2023년부터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감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자체수입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체수입에서 2019년 8.4%(306억 6,300만원), 2020년 5.2%(182억 5,800만원), 2021년 5.7%(182억 1,4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민간출연금을 살펴보면, 민간출연금은 조건부 기부금, 실명제 기부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등으로 분류된다.

조건부 기부금은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기부한 것이고, 실명제 기부금은 기부자의 기부금 운용수익으로 기부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대체 기부금은 건축물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으로 설치하는 대신 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¹²⁾에 따라 2012년부터 신규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1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종류]

구 분	내 용
조건부 기부금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
실명제 기부금	기부자의 기부금 운용수익(이자)으로 기부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부금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징수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총 기부금 징수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조건부 기부금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109억 6,4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13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부금 징수액은 89억 3,300만원 수준이다.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대체 기부금은 2018년과 2019년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 전년 대비 각각 14억 4,100만원, 14억 4,000만원 감소하여 2021년 기부금 징수액은 92억 8,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총 기부금 징수액은 2018년과 2019년에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24억 500만원,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400만원 감소하여 2021년 기준으로 182억 1,400만원 수준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징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조건부	17,689	15,038	18,501	7,537	8,933
(전년 대비 증감액)	-	(△2,651)	(3,463)	(△10,964)	(1,396)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대체	4,762	8,138	12,162	10,721	9,281
(전년 대비 증감액)	-	(3,376)	(4,024)	(△1,441)	(△1,440)
합계	22,451	23,176	30,663	18,258	18,214
(전년 대비 증감액)	-	(725)	(7,487)	(△12,405)	(△44)

주: 최근 5년간 실명제 기부금 징수액은 없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기부금 징수액은 증가할 수 있지만, 기부금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의 경우 기금에 출연하는 대신 미술작품 설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 출연하는 유인이 없다면 추가적인 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2017년 「법인세법」 개정¹³⁾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법정기부금¹⁴⁾ 단체 자격이 2022년까지만 유지되어 세액의 산출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액 규모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른 기금의 재원을 참고하여 볼 때 추가적인 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법정부담금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이를 수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5222호, 2017.12.19. 일부개정, 2018.1.1. 시행)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었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6의7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2017.1.1.~2022.12.31.로 규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적용받는다.

*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5222호, 2017.12.19. 일부개정, 2018.1.1. 시행) 중 제24조제2항제7호 삭제 사유

: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를 구분하는 이유는 보다 공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부금의 공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다른 지정기부금단체보다 공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하였다.

* 「법인세법」 2017.12.19. 일부개정으로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됨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4)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1.1. 시행)으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여 (구)법정기부금으로 표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당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입장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한 바 있으며, 200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535억 8,200만원으로 여유자금회수를 제외한 총수입 945억 2,300만원의 56.7%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부담금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4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이후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법정부담금 대상시설¹⁵⁾ 중 영화관은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¹⁶⁾으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입장료수입¹⁷⁾으로 활용되고 있다.

15) 법정부담금 징수 당시 「문화예술진흥법」 [별표] 모금대상시설별 모금액 기준

대상시설	입장료(관람료) 대비 모금비율	
	입장료(관람료)	모금비율
영화관	3,000원 미만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
	3,000원 이상	1000분의 65 이상 1000분의 75 이하
기타 공연장	3,000원 미만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
	3,000원 이상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7 이하
박물관·미술관·지정문화재	101원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영화발전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¹⁾	66,940	64,576	65,039	17,919	21,902
자체수입	65,503	63,300	62,982	14,934	20,724
법정부담금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49,060	51,978	54,582	10,522	17,086
기타	16,444	11,322	8,401	4,411	3,638
정부내부수입	1,437	1,277	2,056	2,985	1,178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1,437	1,277	2,056	2,985	1,178
공자기금 예수금	-	-	-	-	-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 ②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금 수입 현황]

200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법정부담금 위헌 결정 사유 중 하나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반국민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등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세한 소극장 창작 공연 등을 지원하는 데에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문화예술 관람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¹⁾	93,886	94,184	113,684	101,496	98,434
자체수입	13,949	9,908	12,394	6,390	5,487
입장료수입	4,558	4,340	5,022	2,382	2,954
기타	9,391	5,568	7,372	4,008	2,533
정부내부수입	79,937	84,276	101,290	95,106	92,947
복권기금전입금	79,937	84,276	101,290	95,106	92,947

주: 1) 여유자금회수 제외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¹⁾은 「저작권법」 제2조의2²⁾ 등에 따라 전시체험 등 체감형 저작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 특화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자 본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83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5,183	15,183	27	0	15,210	14,923	98.1	29	258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2,386	12,386	0	0	12,386	12,386	100.0	0	0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8,338	8,338	0	0	8,338	8,338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331-301의 내내역사업

2)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은 당초 2019~2021년 동안 총사업비 290억 1,100만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은 사업부지 관련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2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에 따라 259억 3,2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당초) 2019~2021년 → (조정) 2019~2022년 * 사업부지 관련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업규모	(당초) 290억 1,100만원 → (조정) 259억 3,200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5억 7,400만원 감액 *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 등 4억 9,500만원 증액
시설규모	대지 5,405㎡(1,635평), 연면적 9,624㎡(지하 1층/지상 6층)
공간활용 계획	· 전시체험교육시설: 전시실, 체험실, 도서관, 강의실 등 · 업무시설·부속시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공간, 회의실, 아카이빙실 등
위치	경남 진주시

주: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이며, 2022년 6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기간은 2019~2023년, 사업규모는 273억 4,6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총사업비 259억 3,200만원의 연차별 투입계획은 2019년 44억 3,900만원, 2020년 33억 1,000만원, 2021년 83억 3,800만원, 2022년 98억 4,500만원으로, 2019년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2020~2022년은 공사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 연차별 총사업비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비목별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공사비	0	3,295	7,906	9,171	20,372
부지매입비	2,877	0	0	0	2,877
설계비	1,098	0	0	0	1,098
감리비	454	0	398	621	1,473
시설부대비	10	15	34	53	112
합계	4,439	3,310	8,338	9,845	25,932

주: 2021년 12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하여 2021년 실집행률이 32.8% 수준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금액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예산현액 48억 5,700만원중 부지매매 대금, 설계공모 보상비, 설계비 선금 등 3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0년에는 설계비 잔금 등 전년도 이월액 6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당해 연도 예산액 72억 4,600만원 중 39억 3,6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반납하고 33억 1,000만원은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16.7% 수준이었다. 2021년에는 공사비 등 3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실집행률은 예산현액 116억 4,800만원의 32.8%에 그쳤다.

[저작권 교육체험관 사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 (A)	예산액	교부액 (B)	교부 시기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실집행 시기	실집행률 (D/C)	이월액	불용액
2019	0	4,857	3,702	'19.5.	4,857	3,776	'19.12.	77.7	662	419
			464	'19.7.						
			691	'19.10.						
2020	662	7,246	3,000	'20.1.	3,972	662	'20.12.	16.7	3,310	0
			2,300	'20.4.						
			△3,936	'20.6.						
			1,946	'20.7.						
2021	3,310	8,338	2,502	'20.2.	11,648	1,190	'21.4.	32.8	7,822	0
			4,169	'20.5.		2,200	'21.9.			
			1,667	'20.8.		436	'21.12.			
2022	7,822	9,845	2,953.5	'22.2.	17,667	4,151	'22.	23.5	-	-
			4,922.5	'22.5.						
			1,969	미교부						

주: 1. 2020년에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39억 3,600만원을 반납조치하고, 동 예산을 2021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함

2. 2022년 6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과 2021년에 실집행률이 각각 16.7%, 32.8%로 저조한 사유는 2019년 진주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 내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기간 소요로 부지매입 일정이 지연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9년 1~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수행자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상지의 지자체인 진주시 사이에 사용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2020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자체 인허가로 인한 설계 일시 중지 기간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0년에 편성되었던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되었다.

2020년 12월에 공사계약을 발주하여 2021년 3월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설계 내역서와 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공법 변경 추가 기간 소요와 철근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저작권 교육체험관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경 계획 연도별 추진 현황]

주요 공정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추진 주요 내용
부지매입	2019.1.~3.	2019.1~12.	· 진주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 내 부지선정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면적확정 및 필지 분할) 변경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절차 순연으로 조정
기본설계	2019.2.~7.	2019.7.~ 2020.3.	· 순연된 사업부지 위치 등 확정(2019.5.)으로, 설계발주 일정 조정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시, 적정 설계기간 보장을 위해 설계 공모 등 설계 기간 조정
실시설계	2019.8.~12.	2020.4.~11.	·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020.6.~7., 9.) 및 지자체 인허가(경관 심의) 등으로 인해 설계 일시 중지
공사 및 개관	2020.1.~ 2022.12.	2020.12.~ 2023.상반기	· 철근 등 일부 관급자재 품귀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공사 중지(2021.7.~8.) 및 재개(2021.9.) · 동절기 기간 공사 일시 중지(2022.2.) 및 재개(2022.3.) · 2022.12 완공예정이었으나 공법 변경 및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조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사업이 지연된 사유 중 철근수급 불안정으로 필요한 철근 물량 확보가 불투명하여 토공사 및 골조공사의 공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계 내역서와 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공법 변경 부분은 사전 점검과 철저한 과업 이행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이 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년도 이월액 33억 1,0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예산액 83억 3,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78억 2,2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규모와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가. 현 황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¹⁾은 「저작권법」 제2조의2²⁾ 등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은 한국저작권보호원³⁾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18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5,632	25,632	0	0	25,632	25,276	98.6	0	356
· 해외저작권 보호 · 협력	6,111	6,111	0	0	6,111	6,100	99.8	0	11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1,815	1,815	0	0	1,815	1,815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의 내내역사업

2)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3)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지원,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직 규모는 1실 2본부 1처 10부이고 정원은 119명이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은 한류 콘텐츠 저작물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선택한 후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 금액의 최소 20%~최대 50%의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수행기관이 이용 금액의 최대 80%~최소 50%의 정부지원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업 매출액 규모가 적을수록 정부지원금의 비율이 높아지며 기업당 서비스 이용 상한액은 5,000만원(정부지원금 4,000만원)이다.⁴⁾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한류 콘텐츠 저작물(방송, 영화, 음악, 웹툰, 게임, 출판, 애니메이션 등 7개 분야)을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지원 방식	참여기업(서비스 제공 대상 기업)이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저작권 보호 이용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① 참여기업 선정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선정 ③ 3자 계약 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 - 참여기업 - 수행기관 ④ 참여기업의 자부담금(기업부담금) 납부: 참여기업 → 한국저작권보호원 ⑤ 온라인 포인트 형식의 바우처 발급: 한국저작권보호원 → 참여기업 ⑥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이용 ⑦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저작권보호원 → 수행기관
지원 규모	50개사 대상, 18억 1,5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이용권 유형별 지원 비율]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기업부담금(비율)	정부지원금(비율)
가형	5억원 이하	20%	80%
나형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70%
다형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60%
라형	3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50%	50%

주: 기업 매출액 규모는 최근 3개년 평균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2022년 사업명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참여기업이 전체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업부담금 비율은 이용 금액의 최소 10%~최대 50%, 정부지원금 비율은 이용 금액의 최대 90%~최소 50%, 이용 상한액은 1억원(정부지원금 9,000만원)으로 개편되었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서비스 분류]

(단위: 백만원)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지원 상한액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20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20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20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10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5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5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7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5
	소송(민·형사, 행정)	50
	소송 외 대응	15

주: 이용권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중복 신청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관련 현황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기간 소요로 이용권 지원 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권 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실적이 예산현액의 10.7%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항목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부액 18억 1,500만원 중 1억 9,500만원만 집행되고 16억 1,900만원은 이월되어 실행률은 10.7%이다.

[2021회계연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예산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815	1,815	1,815	195	1,619	0	1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 수가 감소⁵⁾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대응 수요가 감소하였고,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준비 기간이 소요되어 실적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진출이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동 사업의 예산 편성과 실적행 내역을 살펴볼 때, 지원규모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예산 18억 1,500만원 편성 내역에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물 해외유통 계약서 법률컨설팅 5억 2,000만원,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4억 8,750만원,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4억 8,750만원, 소송 법률자문 지원 3억 2,000만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만 편성되어 있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내역]

항 목	금 액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1,815백만원
· 저작물 해외유통 계약서 법률컨설팅	520백만원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8백만원×50개 기업×65%=260백만원
- 저작권 컨설팅	8백만원×50개 기업×65%=260백만원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487.5백만원
- 저작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5백만원×50개 기업×65%=162.5백만원
- 저작권 침해업체 경고장 발송	10백만원×50개 기업×65%=325백만원
·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487.5백만원
- 저작권 침해감정	10백만원×50개 기업×65%=325백만원
- 저작권 침해현황 조사·분석	5백만원×50개 기업×65%=162.5백만원
· 소송 법률자문 지원	320백만원
- 소송 법률자문 지원	10백만원×50개 기업×65%≈320백만원

주: 65%는 정부지원금 평균 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전체 수출기업 수는 2020년 97,040개에서 2021년 94,615개로 감소함
통계청,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먼저 지원규모와 관련하여, 50개 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기업의 약 10% 수준⁶⁾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사업에도 동일한 규모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⁷⁾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소요되어 서비스 이용권 지원 기간이 짧고 사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내역에 시스템 구축 부분은 없으며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4~7월에는 사업기획을 위한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수출현황 분석과 수요조사 실시로 약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부터 참여기업, 수행기관, 이용권 사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약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사업공고는 7월에 이루어졌으며 12월까지 참여기업 3개사가 선정되었고, 이를 위한 심사 및 선정비 등 사업 운영비로 약 6,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 추진 및 예산 실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실행액		추진 내역
		2021	2022	
사업기획	2021.4.~7.	58.2	-	·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출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등
시스템 구축 및 개선	2021.7.~2022.1.	70.0	60.7	· 지원시스템 신규구축,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환경 구축
사업공고	2021.7.~	-	-	· 참여기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모집·선정	2021.7.~12.	66.8	-	· 운영위원회 개최 등 사업 운영 ·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3개사)
협약체결	2021.12.	-	-	· 참여기업-보호원 양자협약 체결(3개사)
사업홍보	2021.12.~2022.3.	-	34.3	· 사업 홍보영상, 브로슈어, 이미지 배너 제작 및 키워드 광고 실시
계약체결	2022.3.	-	-	· 참여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계약 체결(1개사)

6) 국내 콘텐츠 수출기업 수는 2019년 기준 484개임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7) 2022년 사업 예산은 15억 6,500만원으로, 서비스 이용권 지원 11억 4,500만원, 시스템 및 기타 운영비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실집행액		추진 내역
		2021	2022	
이용권 발급	2022.3.	-	-	· 3자계약 체결 기업 이용권 바우처 발급(1개사)
서비스 제공	2022.3. ~5.	-	-	·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합법 유통 시장조사 등 서비스 제공
합계		195	95	

주: 2022년 5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에 선정된 3개 기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 비용은 참여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기관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월예산으로 2022년에 집행될 3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총 지원(예정)액은 9,460만원 수준이므로, 정부지원금 지급 후에도 집행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항목과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사업의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총 지원(예정)액]

(단위: 백만원)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가형 (영상)	가형 (영화)	다형 (게임)	합계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16	3	0	19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0	0	0	0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0	5	0	5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8	2	5	15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0	2	0	2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0	0	0	0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5.6	5	0	10.6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0	3	5	8
	소송(민·형사, 행정)	0	15	10	25
	소송 외 대응	0	5	5	10
합 계		29.6	40	25	94.6

주: '가형'과 '다형'은 참여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지원유형으로 '가형'은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다형'은 매출액 규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이며, 괄호 안은 해당 기업의 분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¹⁾은 「관광진흥법」 제48조²⁾ 등에 따라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계획현액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전용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당초	수정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5,531	38,831	236	0	39,067	38,458	98.4	328	281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2,000	2,000	0	0	2,000	2,000	1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성되었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0의 내역사업

2)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 당 1차년도에는 기획, 설계비, 공사비 등 10억원, 2차년도에는 공사비 등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1년에는 경북 봉화와 전남 해남 등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개소당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매년 2개소씩 신규 선정
예산지원	· 개소당 국비 총 40억원 지원 - 1차년도 사업비(기획, 설계, 공사 등): 10억원 - 2차년도 사업비(공사 등): 3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2021년 사업대상지 추진 계획	· 경북 봉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및 부속시설(캠핑지, 카페, 식당 등)을 조성하고 산타마을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 · 전남 해남: 노후 유스호스텔을 현대적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명량대첩 축제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
2021년 계획액	· 20억원 - 2021년 선정 지자체 1차년도 사업비: 10억원×2개소
2022년 계획액	· 80억원 - 2021년 선정 지자체 2차년도 사업비: 30억원×2개소 - 2022년 선정 지자체 1차년도 사업비: 10억원×2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서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방식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사업수행에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시, 사업수행에 부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를 변경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검토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 경과]

구분	기간	추진 내용
최초 사업수행 지자체 사업 포기	2021.1.~2.	· 대구 달성: 지자체 계획(신축)이 사업 취지(기존 시설 활용)에 부적합 · 전남 여수: 대상 시설을 지역 주민이 활용
사업수행 지자체 변경	2021.3.	· 대구 달성 → 경북 봉화 · 전남 여수 → 전남 해남
사업 관련 자문	2021.4.~6.	· 사업 수행 관련 업계 대상 의견 수렴 등
공공건축 건축기획 등 절차 추진 (봉화)	2021.7.~10.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수행 - 사업계획서 작성 → 공공건축지원센터 제출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견서 접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입찰방식 관련 검토 (봉화)	2021.11.~ 12.	· 입찰방식 관련 검토(봉화) : 기획 및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일괄 입찰 또는 각각 입찰 검토
공공건축 건축기획 등 절차 추진 (해남)	2021.10.~ 12.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수행 - 사업계획서 작성 → 공공건축지원센터 제출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견서 접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지자체 절차 이행(봉화)	2022.1.	· 대상건물 안전등급 심사
	2022.2~4.	· 계약 심사 승인
설계(봉화)	2022.4~5.	· 기획·설계 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먼저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수행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2월 발표한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Korea Total Tourism Package), 이하 ‘KTTP’를 통해 선정되었다. KTTP는 외래관광객의 공항 입국부터 이동, 숙박, 관광콘텐츠 체험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로, 사업수행 지자체는 국제노선 운행 지방공항(김해, 대구, 양양, 청주, 무안)을 보유한 5개 광역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남)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공모를 실시하여 12월 대구와 전남이 선정되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도 KTTP에 포함되어 있어 대구 달성과 전남 여수에서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구 달성은 한옥 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의 취지인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과 맞지 않았고, 전남 여수는 폐교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폐교를 지역주민이 재활용하겠다고 하여 두 곳에서 모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3월 기존 사업수행 지자체였던 대구에서 추천한 경북 봉화, 전남에서 추천한 해남을 각각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KTTP 사업수행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서면심사 결과(60%)와 발표심사 결과(40%)를 종합하여 선정되었는데, 1차 서면심사에서는 사업신청서, 사업추진 목록,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이 중 사업추진 목록에는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지역 내 유희시설을 개보수하여 특화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내 개조 가능한 유희시설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2차 발표심사에서는 서면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쳤음에도 대구는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전남 여수는 활용이 불가능한 폐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희시설 현황과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면밀하게 심사되지 못하여 부적합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 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적인 공모 절차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선정 지자체의 추천으로 새로운 사업수행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KTTP 지역 공모 지침에서 공모신청시 대상 지역인 지방공항 보유 5개 광역 지자체의 인근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변경 대상지 선정에 준용하여 대구에서 다른 지자체인 경북 봉화를 추천하였음에도 이를 선정하였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수행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 수행 지자체를 추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는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공모를 통한 사업 계획과 준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가 선정되어 추가적인 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통한 선정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으로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건축물은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야한다. 2018년 12월 같은 법 개정³⁾으로 2019년 12월부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공공건축서비스센터 공공건축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이행 확인 과정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제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의견서 접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절차는 지자체별 준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봉화에서는 7~10월에 진행되었으나 해남에서는 이보다 늦은 10~12월에 진행되었다.

③ 또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에 특화된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 지자체, 건축·숙박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획 및 설계·시공·운영 업체를 일괄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에서 이러한 선례가 없어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었다.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5994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12.19. 시행)의 주요내용은,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 건축기획: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또한 일괄 선정의 경우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하는 등⁴⁾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며,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상 설계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운영은 일반입찰로 선정⁶⁾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기획 및 설계·시공·운영 업체를 각각 분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 심사를 면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부적합한 사업수행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가 추가 공모가 아닌 기존 선정 지자체의 추천으로 지자체를 변경하는 등 사업수행 지자체를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그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적정 기간을 파악하는 것에 추가적인 기간을 소요하였다. 또한 숙박 시설 조성이라는 사업에 부합하는 업체 선정을 위해 기획 및 설계·시공·운영 업체를 일괄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선례가 없었던 방식이며, 일괄 선정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고려한 것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에 적합한 대상지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실집행액이 교부액 20억원의 2.6%인 점을 고려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수행 지자체가 변경된 3월에 계획액 2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전액 교부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교부액에서 지자체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지원 등을 위한 1억 5,5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자체 재교부 대상액 18억 4,500만원 중 2021년 10월 경북 봉화에 8억 9,000만원, 11월 전남 해남 8억 9,0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으나 전남 해남에서만 1,900만원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교부하여 계획현액 20억원의 2.6% 수준인 5,200만원만 실집행 되었다.

[2021회계연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액	교부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00	2,000	2,000	52	1,948	0	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회계연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실집행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실집행 률(B/A) ¹⁾
		계획 현액	교부액 (A)	교부 시기	실집행 액(B)	이월액	재교부 액	재교부 시기	실집행 액(B)	이월액	
사업지원			155		33	122	-	-	-	-	21.3
숙박 시설 조성	봉화	2,000	890	'21.3.	890	0	890	'21.10.	0	890	0.0
	전남		955		890	65	890	'21.11.	19	871	2.0

주: 1) 실집행률은 부처 교부액 대비 최종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북 봉화와 전남 해남에 대한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2차년도 사업비 60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추진일정이 비교적 빠른 경북 봉화의 경우 2022년 5월에 기획·설계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전남 해남은 6월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이월액 19억 4,800만원을 포함한 2022년 예산현액 79억 4,800만원에 대한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추어 집행 가능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¹⁾은 「관광진흥법」 제48조²⁾ 등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 자원 개발 및 전략 수립, 방한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여 서울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직접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 계획현액 383억원 중 99.2%인 380억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전용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당초	수정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39,900	39,900	0	0	39,900	39,600	99.2	151	149
관광거점도시 육성	38,300	38,300	0	0	38,300	38,000	99.2	151	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2-318의 내역사업

2)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19년 4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에서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 공모를 통해 국제관광도시로 부산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강릉·전주·목포·안동 등 4곳을 선정하고, 5월부터 도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동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의 각 도시별·연차별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2020~2024년, 연차별 사업비 5,785억원(국비 2,500억원, 지방비 3,285억원)으로, 각 도시별로 국비를 500억원 이내 지원하고 지방비는 50% 이상 매칭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도시별 추진 방향]

구 분		추진 방향
국제 관광도시	부산	· 관광자원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강화 ·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해양문화도시로 조성
지역관광 거점도시	강릉	· 자연풍경, 전통문화, 단오제·올림픽 유산 등 특색 있는 강릉자원 활용·개발 ·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조성
	전주	·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주 전역으로 여행범위 확장 및 한식·전통공연 등 한(韓)문화 콘텐츠 개발 ·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로 조성
	목포	· 근대문화자원과 목포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로 조성
	안동	· 한국 유교와 전통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로 육성 · 대한민국 대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조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등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말에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2021년 2~12월에 실시하였다.³⁾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비는 5,785억원에서 147억원 감소한 5,638
 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20~2024년에서 2020~2025년으로 연장되었
 으며 이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도 조정되었다.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조정 내역]

(단위: 억원)

구분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합계
당초	국비	500	500	500	500	500	2,500
	지방비	942	543	800	500	500	3,285
	합계	1,442	1,043	1,300	1,000	1,000	5,785
조정	국비	482	489	490	486	488	2,435
	지방비	909	532	787	487	488	3,203
	합계	1,391	1,021	1,277	973	976	5,638
증감	국비	△18	△11	△10	△14	△12	△65
	지방비	△33	△11	△13	△13	△12	△82
	합계	△51	△22	△23	△27	△24	△1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연차별 사업비(당초)]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국비	129	360	879	694	438	2,500
지방비	176	499	1,055	890	666	3,285
합계	305	859	1,935	1,584	1,104	5,7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의 사업내용이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 시설정비, 민간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 5개 도시의 관광 발전을 위한 5개년 종합 육성 지원 사업(218개 사업)으
 로 구성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제5항6호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
 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연차별 사업비(변경)]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비	129	360	310	670	619	348	2,435
지방비	171	481	457	813	812	468	3,203
합계	300	841	767	1,483	1,431	815	5,6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에 편성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계획액은 총 383억원으로 이를 사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위한 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과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구성되며, 국제관광도시 부산에는 100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전주·목포·안동에는 260억원(각 도시 당 65억원씩)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억원, 관광거점도시의 통합적 컨설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사업비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계획액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내 용	수행방식	계획액
관광 거점 도시	국제관광도시 (부산)	도시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자치단체경상보조	70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30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전주 ·목포·안동)	도시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자치단체경상보조	180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80
	소계			360
	홍보 및 마케팅 (한국관광공사)	관광거점도시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20
컨설팅	관광거점도시 통합 컨설팅 지원	직접	3	
합계				3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2021년에는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도시브랜드 구축,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이 계획되었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세부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구분	계획액	사업명
국제 관광 도시	부산	도시 브랜드 구축 (경상)	37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확산(9), 타겟시장 특화 관광마케팅(12) 등 4개 사업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경상)	33	글로벌 컨벤션 전시회 육성 및 지원(10), 관광패스 개발 및 활성화 추진(7) 등 10개 사업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개선 (자본)	30	광안대교 관광 자원화(미디어 파사드) 사업(16), 시티투어버스 서부산권 노선 도입(3) 등 5개 사업
		소 계	100	
지역 관광 거점 도시	강릉	도시 브랜드 구축 (경상)	5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1), 관광거점도시 강릉 글로벌 마케팅(4) 등 2개 사업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경상)	40	강릉 관광 브랜드공연(9),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운행(5) 등 18개 사업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개선 (자본)	20	경포환상의 호수 조성(4), 월화거리 단오 분수 조성(8) 등 8개 사업
		소 계	65	
	전주	도시 브랜드 구축 (경상)	10	전주관광 브랜딩전략 실행 및 확산(3), 관광거점도시 시군공동 마케팅(4) 등 4개 사업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경상)	35	글로벌 공연 콘텐츠 발굴(10), 한문화 크로스오버 콘텐츠 강화(4) 등 17개 사업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개선 (자본)	20	빛의 도시 프로젝트(10), 도심아트로드 조성(5) 등 3개 사업
		소 계	65	
	목포	도시 브랜드 구축 (경상)	5	글로벌 미디어채널 등 용 홍보(5) 등 1개 사업
		도시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경상)	40	구 호남은행 문화체험 콘텐츠 도입(5), 목포 바다의 노래 공연기획 및 체험성 강화(7) 등 13개 사업

(단위: 억원)

구분	구분	계획액	사업명
	교통 및 관광인프라 개선 (자본)	20	대반동 스카이워크 시설 개선(7), 구 목포세관창고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 성(13) 등 2개 사업
		65	
	안동	9	항공기 활용 홍보(2), KTX 활용 홍 보(1) 등 6개 사업
		36	안동 스마일트립200 개발 및 운영 (9), 탈춤공원 야외문화공연 프로그 램 개발(1) 등 20개 사업
		20	통합관광 안내시스템 구축(10), 원도 심 조명확충(3) 등 6개 사업
		65	
	합 계		3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 관광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계획액 36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계획현액 415억원의 66.2%가 이월된 바 있으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계획액 360억원을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 55억 2,1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415억 2,100만원의 33.3%인 13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4억 8,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2,4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전년도 이월액	계획액	교부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지자체	5,521	36,000	36,000	41,521	13,815	27,482	224	3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을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계획현액 259억 2,100만원의 38.2%인 98억 3,300여원이 실집행되었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의 실집행률은 93.7%로 높지만 이를 제외한 실집행률은 목포 25.4%, 강릉 20%, 안동 13.8%, 전주 9.4% 수준으로 대부분 저조하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계획액	교부액	교부일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	126	7,000	1,750	'21.4.17.	7,126	6,676	450	0	93.7
			5,250	'21.12.8.					
강릉	55	4,500	288	'21.6.8.	4,555	913	3,632	10	20.0
			4,212	'21.12.8.					
전주	100	4,500	350	'21.5.4.	4,600	433	4,127	40	9.4
			4,150	'21.12.8.					
목포	150	4,500	763	'21.4.29.	4,650	1,183	3,456	11	25.4
			3,737	'21.12.8.					
안동	490	4,500	775	'21.6.8.	4,990	688	4,295	7	13.8
			3,725	'21.12.8.					
합계	921	25,000	25,000		25,921	9,893	15,960	68	3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본보조사업은 계획현액 156억원의 25.1%인 39억 2,200만원이 실집행되어 경상보조사업보다 더 낮은 실집행률을 나타내었다. 지자체별로는 목포 38.8%, 부산 26.6%, 전주 20.8%, 강릉 19.9%, 안동 18.7% 순서이나, 강릉, 전주, 안동의 실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 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집행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계획액	교부액	교부일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	94	3,000	3,000	'21.12.8.	3,094	824	2,270	0	26.6
강릉	750	2,000	2,000	'21.12.8.	2,750	547	2,162	41	19.9
전주	1,380	2,000	2,000	'21.12.8.	3,380	702	2,619	59	20.8
목포	1,266	2,000	2,000	'21.12.8.	3,266	1,266	2,000	0	38.8
안동	1,110	2,000	2,000	'21.12.8.	3,110	583	2,471	56	18.7
합계	4,600	11,000	11,000		15,600	3,922	11,522	156	2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2021년에는 2~12월 동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교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비가 확보된 일부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2월 적정성 재검토 결과 확인 후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잔여 예산을 교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년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기반 구축의 시급성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 경상보조사업비 39억 2,600만원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 12월 사업비 교부와 관련하여, 당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어 사업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 낮은 연도 말이었고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시설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집행이 저조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보조사업비 잔여 예산 210억

7,400만원과 자본보조사업비 11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교부액 320억 7,400만원 중 61억 7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 결과도 저조하였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보조사업비 교부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실집행액 (B)	2021.12. 교부액 중 실집행액 (B-A)
	2021.4.~6. (A)	2021.12.	합계		
자치단체경상보조	3,926	21,074	25,000	9,192	5,266
자치단체자본보조	0	11,000	11,000	841	841
합계	3,926	32,074	36,000	10,033	6,107

주: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1년 교부액 및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기준 2022년 사업비는 당초 계획액 879억원보다 569억원 감소한 31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2021년 이월액 274억원을 포함하면 2022년 사업비는 584억원에 이른다.

총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에서 2022년에도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1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서 홍보 및 마케팅과 컨설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과 컨설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조정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홍보 및 마케팅과 컨설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 및 마케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계획액 2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11억 3,7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31억 3,700만원의 61.9%인 1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100만원은 불용하였다. 그리고 컨설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사업으로 추진하여 계획현액 3억원 중 1억 5,1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4,9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중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 주체	전년도 이월액	계획액	교부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홍보 및 마케팅	한국관광 공사	1,137	2,000	2,000	3,137	1,942	1,104	91	61.9
컨설팅	직접	0 ¹⁾	300	-	300	0	151	149	0.0

주: 1) 컨설팅은 2020년에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으로 각각 다르게 추진되어 2020년 이월액을 2021년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홍보 및 마케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 영상 기획·제작과 관련하여 기획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협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을 위한 영상 촬영이 지연되었고,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의 서울센터를 활용하여 관광거점도시 전시 콘텐츠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해당 용역이 유찰되어 사업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보 및 마케팅은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요 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이월액 11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사업 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11억 400만원이 이월되었다.

다음으로 컨설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2~1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중간 시점을 고려하여 컨설팅의 적정 예산을 1억 7,000만원으로 산정하고 2021년 6월에 발주 및 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7월에 1억 5,1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과업 수행 완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동 계약금액을 이월하였고 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컨설팅의 경우 2020년에는 한국관광공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과업내용 조정 등 과업기간 변경으로 계획현액 4억원의 98.2%인 3억 9,300만원이 이월된 바 있다. 2021년에는 컨설팅이 직접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고려한 과업 규모와 일정의 조정으로 예산의 50%가 불용되었고 50%는 이월되었다.

홍보 및 마케팅은 관광거점도시의 통합적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컨설팅은 관광거점도시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각 도시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과 컨설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각 도시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0년 이후 도시의 여건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 변경 등의 변수 발생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 부문 사업에서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조정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6조제1항²⁾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지급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계획현액 35억 9,700만원 중 68.8%인 2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3,236	33,236	0	0	33,236	32,087	96.5	0	1,149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3,597	3,597	0	0	3,597	2,476	68.8	0	1,1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만 12~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8개월간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0의 내역사업

2)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1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12~64세 장애인 * 1순위: 만 19~64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만 19~64세 차상위계층 / 3순위: 만 12~18세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만 12~18세 차상위계층 / 5순위: 만 19~64세 일반 장애인 * 동 순위인 경우 1)장애증정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지원절차	① 강좌 이용신청: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온라인(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서면(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③ 전용카드 발급: 온라인(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전화 *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은 중계사를 통한 전화 의사소통이 가능한 손말이음센터를 활용 ④ 이용 강좌 결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이용시설에서 온라인(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결제
지원규모	· 31억 3,600만원 : 7,000명 × 8만원 × 8 개월 × 70%(국비) * 국비 70%, 지방비 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선정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강좌이용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신청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강좌이용권 이용률이 57.5% 수준이므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1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운영 지원과 이용권 지원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운영 지원은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가맹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도 계획현액 4억 6,1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94.1%인 4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용권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도 계획현액 31억 3,600만원의 64.3%인 20억 1,500만원이 교부되었고, 교부액 중 53.3%인 10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피보조기관			
	계획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액 (C)	실집행액 (D)	불용액	실집행률 (D/C)
운영 지원	461	461	0	100.0	461	434	27	94.1
이용권 지원	3,136	2,015	1,121	64.3	2,015	1,074	941	5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용권 지원의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규모는 경기도 3억 7,9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세종이 1,300만원으로 가장 작지만, 실집행률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고 충북이 30%로 가장 낮다.

교부액의 규모는 최초 교부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이후 추가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집행액은 지원대상자의 이용금액을 나타낸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정인원과 이용인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장애인스포츠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자체별 실적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305	305	124	181	40.7
부산	173	173	85	88	49.1
대구	129	129	74	55	57.4
인천	134	134	41	93	30.6
광주	65	65	46	19	70.8
대전	68	68	58	10	85.3
울산	36	36	20	16	55.6
세종	13	13	13	-	100.0
경기	379	379	212	167	55.9
강원	86	86	35	51	40.7
충북	70	70	21	49	30.0
충남	139	139	85	54	61.2
전북	48	48	33	15	68.8
전남	121	121	89	32	73.6
경북	40	40	26	14	65.0
경남	171	171	92	79	53.8
제주	39	39	20	19	51.3
합계	2,015	2,015	1,074	942	5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선정인원과 관련하여 2021년 장애인스포츠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는 총 6,540명이 신청하였으나, 5,752명이 선정되어 선정률은 88%였다. 선정되지 못한 12%에 해당하는 788명은 지원받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였다.

국비에서 11억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이 발생하였다. 선정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경북이 가장 낮은 61.3%이고, 강원 69.9%, 대구 75.2%, 광주 76.2% 순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추이에서도 선정률이 2019년 94.9%, 2020년 92.6%, 2021년 88.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좌이용권 활용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확보를 독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용인원과 관련하여 2021년 기준으로 선정된 인원 5,752명 중에서 실제 스포츠 강좌이용권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선정인원의 57.5%인 3,305명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청인원 모두를 선정하더라도 이용인원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용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제주가 가장 낮은 35.7%이고, 광주 46.8%, 인천 50.8%, 울산 51.3% 순서이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에도 이용률이 46.2%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선정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신청인원 (A)	선정인원 (B)	선정률 (B/A)	이용인원 (C)	이용률 (C/B)
2019	1,517	1,440	94.9	665	46.2
2020	3,068	2,841	92.6	1,289	45.4
2021	6,540	5,752	88.0	3,305	5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자체별 선정 및 이용 현황]

(단위: 명, %)

지자체명	신청인원 (A)	선정인원 (B)	선정률 (B/A)	이용인원 ¹⁾ (C)	이용률 (C/B)
서울	1,088	968	89.0	507	52.4
부산	523	481	92.0	279	58.0
대구	617	464	75.2	264	56.9
인천	245	238	97.1	121	50.8
광주	244	186	76.2	87	46.8
대전	251	218	86.9	161	73.9
울산	145	117	80.7	60	51.3
세종	35	35	100.0	28	80.0
경기	1,355	1,272	93.9	750	59.0
강원	193	135	69.9	85	63.0
충북	153	130	85.0	72	55.4
충남	278	264	95.0	145	54.9
전북	151	131	86.8	97	74.0
전남	355	347	97.7	256	73.8
경북	181	111	61.3	73	65.8
경남	502	459	91.4	250	54.5
제주	224	196	87.5	70	35.7
합계	6,540	5,752	88.0	3,305	57.5

주: 1)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원 533명 별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기준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총 1,612 개소이지만 이용된 곳은 47.8%인 770개소이다. 70.4%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제주를 제외하면, 각 지자체의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이용 가능 시설 중 실제 이용된 시설은 30~50%대에 머물러 있다.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에는 개인의 선택도 있으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도 지자체에 따라 체육시설이 특정 구역에 편중되는 등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이 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비율은 35.7%이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70.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체육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록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등록 후에 웹가맹점으로 승인하는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거치는 절차이나, 등록시설이 웹가맹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강좌이용권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설을 확인할 수 없어 이용이 불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시설 2,029개소 중에서 웹가맹점 승인이 완료되어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79.4%인 1,612개소 수준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시설이 웹가맹점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하고 웹가맹점 승인을 독려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시설을 등록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홈페이지 등록시설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강좌이용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2021년 기준 1만 2,705개소인 것에 비하면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12.7% 수준인 1,612개소로 매우 적은 편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 가능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용자들의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1년 장애인스포츠포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자체별 시설 이용 현황]

(단위: 개소, %)

지자체명	등록시설 ¹⁾ (D)	이용가능시설 ²⁾ (E)	이용가능시설 비율 (E/D)	이용시설 ³⁾ (F)	이용률 (F/E)
서울	272	220	80.9	115	52.3
부산	138	117	84.8	60	51.3
대구	209	155	74.2	67	43.2
인천	52	46	88.5	27	58.7
광주	131	90	68.7	32	35.6
대전	77	58	75.3	25	43.1
울산	37	35	94.6	12	34.3
세종	26	23	88.5	12	52.2
경기	356	312	87.6	156	50.0
강원	60	51	85.0	28	54.9
충북	59	46	78.0	22	47.8
충남	116	100	86.2	38	38.0
전북	103	66	64.1	26	39.4
전남	96	69	71.9	37	53.6
경북	117	76	65.0	30	39.5
경남	146	121	82.9	64	52.9
제주	34	27	79.4	19	70.4
합계	2,029	1,612	79.4	770	47.8

주: 1) 등록시설은 장애인스포츠포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시설임

2) 이용가능시설은 등록시설 중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웹가맹점으로 승인받아 장애인스포츠포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3) 이용시설은 장애인스포츠포 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시설임

1. 2021년 12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문화재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47억 8,600만원이며, 519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3.6%인 433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85억 2,9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4,786	44,786	44,786	49,644	41,116	8,516	13	82.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	0	0	2,282	2,269	13	0	99.4
합계	44,786	44,786	44,786	51,926	43,385	8,529	13	83.6

자료: 문화재청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64억 500만원이며, 이 중 94.5%인 9,605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23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5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02,613	1,002,613	1,012,330	956,466	32,312	23,552	94.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75	4,075	4,075	4,075	0	0	100.0
합계	1,006,688	1,006,688	1,016,405	960,541	32,312	23,552	94.5

자료: 문화재청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418억 7,900만원이며, 1,573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5%인 1,549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23억 1,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41,879	141,879	141,879	157,310	154,992	2,318	0	98.5

자료: 문화재청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418억 7,900만원이며, 이 중 109.2%인 1,54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41,879	141,879	141,879	154,992	36	4,134	109.2

자료: 문화재청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5,400만원 (3.8%) 감소한 488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6억 9,500만원 (24.7%)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2,786	44,786	44,786	43,385	△1,401	10,599
기금	6,391	5,940	5,940	5,487	△453	△904
합계	39,177	50,726	50,726	48,872	△1,854	9,695

자료: 문화재청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03억 1,200만원(4.4%) 이 감소한 1조 94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65억 3,000만원 (7.5%)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81,443	1,006,688	1,006,688	960,541	△46,147	79,098
기금	136,394	137,991	137,991	133,826	△4,165	△2,568
합계	1,017,837	1,144,679	1,144,679	1,094,367	△50,312	76,530

자료: 문화재청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재청 자산은 9,698억 9,700만원, 부채는 930억 4,600만원으로 순자산은 8,768억 5,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75억 9,800만원, 투자자산 15억 2,600만원, 일반유형자산 9,081억 5,700만원, 무형자산 200억 9,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5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74억 7,700만원(2.9%)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 기타유동자산 등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이 233억 9,400만원 감소하였으나, 토지의 국유재산 가격평가 증가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470억 300만원 증가와 무형자산 33억 8,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4억 4,600만원, 장기차입부채 916억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04억 4,700만원(76.9%)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정부내장기예수금 증가로 인한 장기차입부채 409억 9,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969,897	942,420	27,477	2.9
Ⅰ. 유동자산	37,598	60,992	△23,394	△38.4
Ⅱ. 투자자산	1,526	955	571	59.8
Ⅲ. 일반유형자산	908,157	861,154	47,003	5.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0,093	16,710	3,383	20.2
Ⅵ. 기타비유동자산	2,524	2,609	△85	△3.3
부 채	93,046	52,599	40,447	76.9
Ⅰ. 유동부채	1,446	1,831	△385	△21.0
Ⅱ. 장기차입부채	91,600	50,608	40,992	81.0
Ⅲ. 장기충당부채	-	158	△158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1	△1	△100.0
순 자 산	876,851	889,821	△12,970	△1.5
Ⅰ. 기본순자산	469,971	469,971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44,904	174,154	△129,250	△74.2
Ⅲ. 순자산 조정	361,976	245,696	116,280	47.3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652억 2,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752억 3,500만원, 관리운영비 1,377억 9,800만원, 비배분비용 15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24억 3,300만원, 비배분수익 457억 3,9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12억 1,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157억 5,300만원(22.9%) 증가한 1조 1,564억 3,800만원이며, 이는 자치단체보조비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 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1,847억 800만원 증가하고, 인건비 및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435억 2,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문화재보존관리 프로그램(4,947억 2,200만원)과 문화재활용 프로그램(1,057억 8,200만원), 공능원관리 프로그램(1,009억 5,200만원), 문화재보호 프로그램(989억 5,200만원), 문화재국제교류 프로그램(879억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58억 7,300만원과 경비 619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억 5,500만원과 이자비용 14억 2,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62,802	879,140	183,662	20.9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75,235	890,527	184,708	20.7
나. 프로그램 수익	12,433	11,387	1,046	9.2
II. 관리운영비	137,798	94,273	43,525	46.2
III. 비배분비용	1,578	2,355	△777	△33.0
IV. 비배분수익	45,739	35,083	10,656	30.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56,438	940,685	215,753	22.9
VI. 비교환수익 등	91,212	92,840	△1,628	△1.8
VII. 재정운영결과(V-VI)	1,065,226	847,845	217,381	25.6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898억 2,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768억 5,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9억 7,000만원(1.5%) 감소하였다. 이는 기초 순자산이 전년 대비 165억 8,900만원 증가하였고,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746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 유형자산재평가 이익 등 조정항목이 전년 대비 1,131억 8,300만원 증가하였지만,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전년 대비 2,173억 8,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9,793억 6,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33억 8,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889,821	873,232	16,589	1.9
Ⅱ. 재정운영결과	1,065,226	847,845	217,381	25.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35,976	861,337	74,639	8.7
Ⅳ. 조정항목	116,280	3,097	113,183	3,654.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876,851	889,821	△12,97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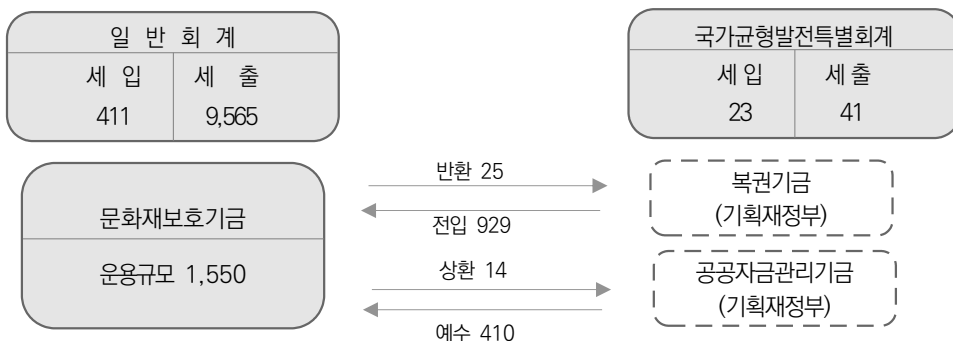
자료: 문화재청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기금이 복권기금으로부터 929억원을 전입받고 25억원을 반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10억원을 예수하고, 14억원의 이자를 상환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광주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②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③ **문화유산 활용 진흥** 등이 있다.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연차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20억원이 감액(40억원 → 20억원)되었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은 기존 콘텐츠 활용 등을 고려하여 14억원이 감액(176억 3,200만원 → 162억 3,200만원)되었으며,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8억원이 감액(519억 6,200만원 → 511억 6,2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②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③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등이 있다.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130억원이 증액(3,840억원 → 3,970억원)되었고,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등을 위하여 56억 6,400만원이 증액(84억 8,800만원 → 141억 5,200만원)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사업은 세계유산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23억 400만원이 증액(403억 9,800만원 → 427억 200만원)되었다.

문화재청은 ① 문화유산 전승·유지·보수를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 안정적 기반 구축**, ②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 **핵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확대**, ③ 문화재 돌봄사업 및 방재시스템 등 **맞춤형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④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진흥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에서 교부액의 60.4%가 이월되었으므로 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 등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사전 절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업이 불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현액의 76%를 이월하고 20%를 불용하였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소요 기간,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가 사업비를 이월한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을 적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집행 관리 및 체계적 추진 필요

가. 현 황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¹⁾은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외관을 정비하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3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 관리	4,573	4,573	0	±27	4,573	4,552	99.5	0	21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3,200	3,200	0	0	3,200	3,200	100.0	0	0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가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의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루어지며, 2021년 사업 규모는 국비 기준 32억원이다.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135-302의 내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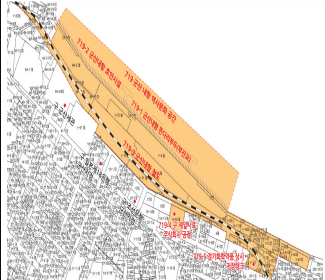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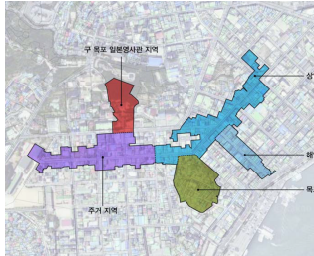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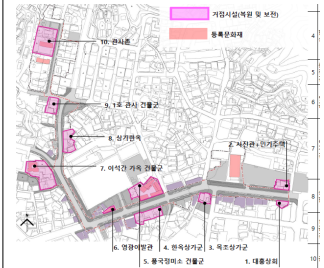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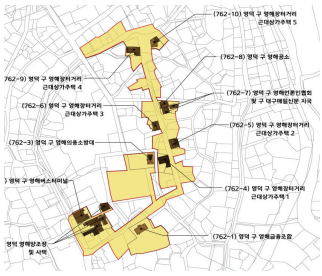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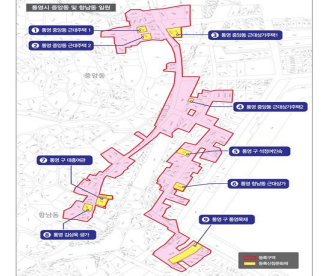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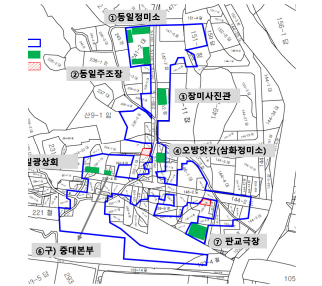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사업대상	·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곳으로서 근현대에 형성(50년 이상 경과)된 거리, 마을, 지구 등 공간 단위의 보존·활용이 가능한 지역
사업내용	·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등 - 근대건축자산 정비 - 경관회복(전선지중화, 가로경관 정비, 야간조명 등) - 관람 편의시설 조성
대상지 선정	· 국가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 - 목포, 영덕, 익산
사업규모	· 총 64억원 - 국비(50%) 32억원 - 지방비(50%) 32억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기준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총 8개소이고, 이 중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에서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2018년 등록),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2019년 등록),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2019년 등록) 등 총 3개소의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현황]

2018년 등록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2021년 사업 대상지)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 등록구역 151,762.3㎡ · 개별 등록문화재 5건	· 등록구역 114,038㎡ · 개별 등록문화재 18건	· 등록구역 26,377㎡ · 개별 등록문화재 6건
		

2019년 등록		2020년 등록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2021년 사업 대상지) · 등록구역 17,933.3㎡ · 개별 등록문화재 11건	익산 송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2021년 사업 대상지) · 등록구역 19,963.2㎡ · 개별 등록문화재 11건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등록구역 14,444㎡ · 공간 내 개별 등록문화재 9건
		
2021년 등록		
서천 근대역사문화공간 · 등록구역 22,965㎡ · 공간 내 개별 등록문화재 7건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 등록구역 71,690㎡ · 개별 등록문화재 11건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에서 문화재청은 예산액 32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교부액의 60.4%가 이월된 바 있으므로, 사업 대상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외에 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 등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의 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예산액 32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3개 지자체는 1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실행률은 39.6% 수준이다.

[2021회계연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지자체별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예산액	교부액 (A)	교부일	실행액 (B)	이월액	불응액	실행률 (B/A)
목포	1,500	450	2021.1.22.	979	521	0	65.3
		1,050	2021.6.2.				
영덕	1,530	450	2021.1.22.	231	1,299	0	15.1
		1,080	2021.6.2.				
익산	170	81	2021.1.22.	58	112	0	34.1
		89	2021.6.2.				
합계	3,200	3,200		1,268	1,932	0	39.6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각 지자체별로 당초 계획과 추진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목포는 당초 2021년에 15억원 규모로 구 갑자옥 모자점 등 10개소에 대한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구 갑자옥 모자점 등 5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와 민거거리 진입로 정비에 대한 설계가 수행되었고, 야마하상가 보수정비 등 3개소 사업은 2021년 11~12월에 시작되고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15억원 중 9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2,100만원은 이월되었다. 야마하상가 보수정비 등 3개소 사업은 2022년 3월에 완료되었으나, 붉은벽돌창고 진입로정비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은 목포에서 근대건축자산인 목조단독주택의 양도자, 목포진 불량건축물 및 인접 건물의 소유자 등 사업 대상 또는 관련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었고, 야마하상가 및 창고 등의 보수·정비 방향, 구 평화문화점 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당초 계획(목포)]

(단위: 백만원)

지자체	기간	예산액	당초 계획
목포	2021.1.~12.	1,500	·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 구 갑자옥 모자점, 대광전자, 아인스 매장, 유달원예사, 야마하상가 및 창고 보수정비 - 민어거리, 붉은벽돌창고 진입로정비 - 구 평화문화점 불량건축물 철거정비 - 목포진, 해안로 시장길 등 불량가로정비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목포)]

(단위: 백만원)

지자체	기간	집행 (예정)액	추진 내용 및 계획	비고
목포	2021.1.~12.	979	· 구 갑자옥 모자점 등 5개소 보수정비 · 민어거리 진입로 정비 설계 · 야마하상가 보수정비(2021.11.~) · 목조단독주택 보수정비(2021.12.~) · 구 평화문화점 불량건축물 철거 정비(2021.12.~)	· 더까뻬, 목조단독주택 등 2개소 추가
	2022.1.~5.	230	· 야마하상가 보수정비(2022.3. 완료)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보완 등으로 일정 지연
			· 목조단독주택 보수정비(2022.3. 완료)	· 목조단독주택(근대건축자산) 양도자 이주 지연 등에 따른 설계·공사 지연
			· 구 평화문화점 불량건축물 철거 정비(2022.3. 완료)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철거 등 일정 지연
	2022.5.~12. (추진중)	291	· 붉은벽돌창고 진입로정비, 목포진 불량가로정비, 해안로 시장길 등 불량가로정비(2022.7. 발주 예정) · 야마하상가 창고 보수정비(2022.7. 발주 예정)	· 목포진 불량건축물 매입 지연 및 철거에 필요한 인접 건물 소유자 협의 지연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보완 등으로 일정 지연

주: 2022년 5월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영덕은 당초 2021년에 15억 3,000만원 규모로 국밥집 등 3개 구역에 대한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3개 구역에 대한 설계 용역 발주와 1구역 착공만 이루어져 15억 3,000만원 중 2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억 9,900만원은 이월되었다. 3개 구역에 대한 사업은 2022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은 영덕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종합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당초 계획(영덕)]

(단위: 백만원)

지자체	기간	예산액	당초 계획
영덕	2021.1. ~12.	1,530	·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 1구역: 국밥집, 구 약방 - 2구역: 구 대장간, 구 갈비집식당 - 3구역: 영해파출소 불량가로정비, 구 소금가게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영덕)]

(단위: 백만원)

지자체	기간	집행 (예정)액	추진 내용 및 계획	비고
영덕	2021.1. ~12.	231	· 1~3구역 설계 발주(2021.5.) · 1구역 착공(2021.8.)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 지연 ·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정비계획 및 자문회의 일정 지연
	2022.5. ~12. (추진중)	1,299	· 설계 완료(2022.8.) · 2구역 착공(2022.7.) · 3구역 착공(2022.8.) · 1~3구역 준공(2022.12.)	

주: 2022년 5월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익산은 당초 2021년에 1억 7,000만원 규모로 익산 중국학교 및 강당 등 2개소에 대한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설계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보수정비 공사는 2021년 10월에 시작되고 연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1억 7,000만원 중 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1,200만원은 이월되었다. 익산 중국학교 및 강당 등 2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는 2022년 4월에 완료되었다.

문화재청은 익산에서 원형 복원 방식 및 기법 등 전문가 자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당초 계획(익산)]

(단위: 백만원)

지자체	기간	예산액	당초 계획
익산	2021.1. ~12.	170	·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 익산 중국학교 및 강당, 진입로 담장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익산)]

(단위: 백만원)

지자체	기간	집행 (예정)액	추진 내용 및 계획	비고
익산	2021.3. ~12.	58	· 익산 중국학교 및 강당 등 2개소 설계(2021.3.~9.) ·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2021.8.~9.) · 보수정비 공사(2021.10.~)	· 관련 부서 업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보완 등으로 사업 지연
	2022.1. ~4.	59	· 익산 중국학교 및 강당 등 2개소 보수정비 공사(2022.4. 완료)	
	2022.4. ~11. (추진중)	53	· 새시대양품, 일반주거시설(인화동 1가 84-14)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용역(2022.10.완료)	· 집행잔액 발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2개소 추가 설계

주: 2022년 5월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3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결과 반영이다.

동 사업은 문화재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설계단계부터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근대건축자산의 원형 보존 또는 복원의 범위, 사용되는 재료의 소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은 일반 공사 사업과 달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는 과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여 교부액 32억원의 60.4%인 19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 대상에 대한 설계 및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 전문가 자문과 이에 따른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종합정비 방안, 기반조성계획, 보존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종합정비계획은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²⁾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³⁾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국가등록문화재라고 한다.⁴⁾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포함된다.⁵⁾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사업 대상자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로 등록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동 계획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근대건축자산을 포함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종합정비 방안, 기반조성계획, 보존정비계획 등을 수립한 것으로,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은 하나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여러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대상 선정과 정비 등이 종합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1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 영덕, 익산 중 목포는 2020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에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영덕과 익산은 2021년에 종합정비계획이 진행 중이 상황에서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덕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된 바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및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추진 현황]

국가등록문화재		종합정비계획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추진 연도	
등록	문화재명	사업기간	진행 경과		
2018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2020.1.~ 2021.11.	완료	-	2022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2019.12.~ 2020.12.	완료	2021	2022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2019.12.~ 2021.12.	문화재청 승인요청 (2022.5.)	-	2022
2019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2020.5.~ 2021.5. ¹⁾	문화재청 승인요청 예정(2022.7.)	2021	2022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2020.6.~ 2021.6. ²⁾	문화재청 승인요청 예정(2022.7.)	2021	2022
2020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2021.5.~ 2022.10.	중간보고 예정 (2022.8.)	-	2022
2021	서천 근대역사문화공간	-	업체 선정 중	-	-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2022.6.~ 2023.6.	추진 중	-	-

주: 1)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의 당초 사업기간은 2020.5.~2021.5.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과업 이행의 어려움으로 2차례 중지(2020.12.~2021.6., 2021.9.~)되었고, 전문가 자문 등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7월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

2)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의 당초 사업기간은 2020.6.~2021.6.였으나, 전문가 자문 등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7월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사업에서는 2021년 사업 대상지인 목포, 영덕, 익산에 더하여 군산, 영주, 통영 등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군산과 목포를 제외한 곳에서는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종합정비계획과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 및 경관회복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본 계획이 수립된 곳을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¹⁾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²⁾ 등에 따라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³⁾를 복원하고 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을 통해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복궁 종합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2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복궁 종합정비	5,782	5,782	2	0	5,784	5,535	95.7	0	249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2,400	2,400	0	0	2,400	2,400	100.0	0	0

자료: 문화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231-301의 내역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월대는 경복궁 근정전과 같이 중요한 건물의 전면에 넓은 대를 설치한 것으로 행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건물의 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문화재청,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동·서십자가 권역 등 고증조사 연구용역」, 2018.12., p.46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8년 4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광화문 복원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포함한 것으로, 여기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이 포함된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중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부분은 문화재청 직접사업으로, 주변정비(광화문 월대 등 복원에 따른 도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동 사업의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580억원으로 국비 290억원, 지방비 290억원이다.

2021년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의 예산은 광화문 월대 등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 직접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주변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22억 5,000만원 등 24억원이 편성되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19~2023년
사업규모	· 총 580억원 - 국비 290억원 : 문화재 복원 23억원, 문화재 복원에 따른 도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 267억원 - 지방비 290억원 : 문화재 복원에 따른 도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 290억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연도별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광화문 월대 등 복원	국비	0	0	150	150	2,000	2,300
	지방비						
주변정비 (도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	국비	13,336	5,100	2,250	0	6,014	26,700
	지방비	13,336	5,100	0	3,920	6,644	29,000
합 계		26,672	10,200	2,400	4,070	14,658	58,000

주: 광화문 월대 복원설계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예정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안)]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에서 2021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현액의 96%가 이월된 바 있으므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사업으로 추진된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부분의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주변정비 부분은 예산현액 71억 1,600만원의 3.6%인 2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68억 3,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600만원은 불용되었다.

이와 같이 2021년에는 예산현액의 96%에 해당하는 68억 3,4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이 부진한데, 이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고 2021년 이월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 주체	전년도 이월액 (A)	예산액 (B)	교부액	예산현액 (C=A+B)	실 집행액 (D)	실집행률 (D/C)	이월액	불용액
2019	지자체	0	13,336	13,336	13,336	2,414	18.1	10,922	0
2020	지자체	10,922	5,100	2,550	16,022	11,156	69.6	4,866	0
				2,550					
2021	직접	-	150	-	150	150	100.0	0	0
	지자체	4,866	2,250	1,125	7,116	256	3.6	6,834	26
				1,125					
2022	직접	0	150	-	150	62	41.3	-	-
	지자체	6,834	0	-	6,834	1,485	21.7	-	-

주: 1. 2022.5.31. 기준임

2.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교부액을 합산한 것이지만, 직접사업과 보조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보조사업의 예산액이 전액 교부되었으므로,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을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표기함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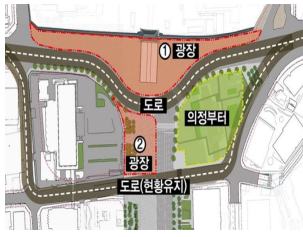
문화재청이 2018년 서울시와 공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당초안)의 주요내용은 광화문 월대와 동서십자각을 복원하고 해태상을 이전하며, 이에 따른 주변정비로 U자형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광화문광장을 전면 보행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계획 추진에 따른 교통혼잡 발생과 집회·시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19년 9월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2019년에 전액 교부된 예산액 133억 3,600만원 중 24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109억 2,200만원은 이월되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지역주민·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2020년 6월 변경안을 마련하여 9월에 발표하였는데, 이는 광화문 월대 복원과 해태상 이전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주변정비로 월대 전면도로 노선을 유지하면서 우회하는 Y자형 도로를 개설하며 월대 전면과 세종대로 서쪽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다만, 서울시는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9월부터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세종대로 서쪽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쪽에 세종대로를 개설하는 T자형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문화재청은 2020년 9월 서울시의 변경안 발표 후 2020년 예산액 51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020년에는 서울시의 자체사업 추진으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설계만 추진되어 예산현액 160억 2,200만원 중 111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8억 6,600만원은 이월되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계획]

구분	당초안(U형)	과도기안(T형)	변경안(Y형)
사업 기간	폐기	(당초)2020.9.~2021.9. (변경)2020.9.~2021.12.	(당초)2021.10.~2023.12. (변경)2022.1.~2023.12.
배치 도			
직접 사업	· 문화재 복원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동서십자가 복원 - 해태상 이전	-	· 문화재 복원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 해태상 이전
보조 사업	· 문화재 복원에 따른 도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 - U자형 우회도로 개설 - 광화문광장 전면 보행화	* 서울시 자체사업 · 도로 변경의 단계적 추진 - T자형 도로 개설 : 세종대로 조정 - 세종대로 서쪽 보행공간 조성 - 시민광장 조성 - 역사광장 임시조성	· 문화재 복원에 따른 도로 이 설 및 역사광장 조성 - Y자형 우회도로 개설 - 월대 전면 및 세종대로 서 쪽광장 조성
소요 예산	· 742억원 - 국비 371억원 - 지방비 371억원	* 지방비 488억원	· 580억원 - 국비 290억원 - 지방비 290억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6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내에 T자형 도로에서 Y자형 도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별도 계약 없이 T자형 도로의 설계변경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예산 교부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청은 2021년 예산액 22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약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Y자형 도로 개설 등 변경안에 따른 공사를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추진하여 계약 입찰 등 행정기간이 소요되었고, 도로 변경에 따른 교통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여, 2021년에는 Y자형 우회도로 개설 등 변경안에 따른 공사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8억 6,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 1,600만원 중 설계비 2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공사비 등 68억 3,400만원은 이월되었다.

문화재청은 2021년 6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계획」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의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에 서울시의 계획 변경과 교통상황 모니터링 필요 등에 따라 공사가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21년에는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후 공사의 연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필요

가. 현 황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¹⁾은 지역 유희시설인 페터널을 활용²⁾하여 소유자가 없는 비귀속 발굴·발견 매장문화재를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발굴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장문화재보존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69억 3,0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2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 13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매장문화재보존	7,715	7,715	0	±132	7,715	1,029	13.3	5,276	1,410
발굴유물 역사문화 공간 조성	6,930	6,930	0	±80	6,930	277	4.0	5,276	1,37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332-301의 내역사업

2) 국내 페터널 활용 사례로는 충북 단양 수양개빛터널(복합 멀티미디어, 지자체), 경남 밀양 트윈터널(빛 테마, 지자체), 전남 광양 석정 1터널(와인동굴, 지자체), 경남 사천 경전선터널(와인갤러리, 지자체), 충북 옥천터널(LED 식물공장, 민간)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해양권³⁾ 등 6개 권역에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21년에는 3개 권역의 페터널 3개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63억 3,000만원과 발굴유물 보존용품 등 구입 자산취득비 6억원 등 총 6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발굴유물의 수장시설과 역사문화공간(전시·체험·교육 등) 조성
사업기간	· 2021년(1개년)
사업규모	· 페터널 3개소 리모델링(9,600㎡/개소당 3,200㎡)
예산 편성내역	· 총 69억 3,000만원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63억 3,000만원 : 설계비 2억 6,100만원, 공사비 60억원, 시설부대비 6,900만원 - 발굴유물 보존용품 등 구입 6억원 : 자산취득비 6억원

주: 사업규모는 2021년 예산 편성 기준이며, 실제 사업은 2개소만 추진됨.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사전 절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업이 불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현액의 76%를 이월하고 20%를 불용한 바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소요 기간,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재청은 해당 권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대상으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되, 해양권의 경우 수중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위치한 목포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당초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3개 권역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대상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021년에는 2개소에서만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2억 7,700만원만 집행되었고 공사비 등 52억 7,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3억 7,7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편성내역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내역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시설계비	3개소×87백만원	261	261	대전 설계	125	0	3
				전주 설계	133	0	
공사비	3개소×2,000백만원	6,000	5,920	대전 공사	0	2,224	1,078
				전주 공사	0	2,618	
감리비	-	0	80	대전 감리	0	25	27
				전주 감리	0	28	
시설부대비	3개소×23백만원	69	69	대전 부대비	9	24	0
				전주 부대비	10	26	
자산취득비	3개소×200백만원	600	600	대전 자산취득	0	160	269
				전주 자산취득	0	171	
합계		6,930	6,930		277	5,276	1,377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당초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전 절차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당초 2021년 1~2월에 기본 설계, 3~4월에 실시 설계를 각각 실시하고, 공사를 5~6월에 계약하여 6월에 착수하고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변경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1~6월은 기본 설계에 앞서 각종 사전 절차를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었다. 문화재청은 2021년 1~2월에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3월에는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 제22조의2 등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를 거쳤다.⁴⁾ 4~6월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검토 및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당초 문화재청은 사업 대상지인 대전과 전주를 통합하여 설계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각 지역별로 분할하여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회신하여 각 지역별로 분리하여 설계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사전 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문화재청은 당초 2021년 1월부터 설계 절차를 시작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6월부터 설계 절차를 시작하고 2022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당초 계획 및 변경 계획]

구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및 추진 일정	
	기간	주요 내용	기간	주요 내용
사전 절차	-	-	2021.1.~2.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2021.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
			2021.4.~6.	조달청 설계 용역 계약 검토 (지역 통합 계약→분리 계약)
설계	2021.1.~2.	현장조사 및 기본 설계	2021.6.~7.	기본 및 실시 설계 공모
	2021.3.~4.	실시 설계 및 내역 검토	2021.8.~11.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	2021.5.~6.	건축공사 입찰 및 계약	2021.12.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2021.6.	건축공사 착수	2022.2.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착수
	2021.12.	건축공사 완료	2022.9.	건축공사 완료(예정)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최초 계획상으로 중부권 경기 구리 구능터널, 영남권 경북 경주 충효터널, 호남권 전북 전주 신리터널 등 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2020년 8월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중 중부권 경기 구리 구능터널은 출입구가 토사로 폐쇄되고 터널 균열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2020년 9~10월 문화재청은 한국철도공단의 추천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 권역과 대상지를 충청권 대전 사진포터널로 변경하였다.(1차 변경) 또한 영남권 경북 경주 충효터널은 임대사용인이 사용기간(2019~2023)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터널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2021년 4월 사업 추진과 활용이 용이한 경남 함안 매천터널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다.(2차 변경) 그러나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충청권 대전 사진포터널과 호남권 전북 전주 신리터널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에 선정된 영남권 경남 함안 매천터널은 2022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당초 및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등
최초 계획	경기 구리(중부권)	-	·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3개 권역에 조성 하기 위해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안에 반영(2020.8.)
	경북 경주(영남권)	-	
	전북 전주(호남권)	-	
1차 변경	경기 구리(중부권)	대전(충청권)	· 중부권 경기 구리의 구능터널은 출입구 가 토사로 폐쇄되고 터널 균열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 한국철도공단의 추천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충청권 대전의 사진포터널로 변경 (2020.9.~10.)
	경북 경주(영남권)	-	
	전북 전주(호남권)	-	
2차 변경	대전(충청권)	-	· 영남권 경북 경주의 충효터널은 임대사 용인의 사용기간(2019~2023) 유지 의 사 표명에 따라 사용 불가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 활용이 용 이한 경남 함안 매천터널로 변경하였으 나(2021.4.),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 여 2022년에 추진
	경북 경주(영남권)	경남 함안(영남권) * 2022년 추진	
	전북 전주(호남권)	-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문화재청은 2021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에서 기본
구상 수립 연구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와 적정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활용이 불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2차에
에 걸쳐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
라 동 사업의 예산현액 69억 3,000만원의 76%인 52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고,
13억 7,700만원은 불용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소요 기간, 사업 추진 방식 등
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
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
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5)

5) 문화재청은 사업 대상지를 페터널로 한정할 경우 사용 가능한 대상지가 적어, 2022년 사업부터는 폐
교 등 지역의 유허시설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사업 대상지는 경남 함안
매천터널과 전남 목포 청해사이며, 이 중 청해사는 전남 서남해 지역 여고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가. 현 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¹⁾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2²⁾ 등에 따라 국가 주도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35억원 중 99.8%인 34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6,610	6,610	0	0	6,610	6,603	99.9	0	7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3,500	3,500	0	0	3,500	3,493	99.8	0	7

자료: 문화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332-302의 내역사업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1년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매장문화재법」 개정(2022.1.18. 개정, 2022.7.19. 시행)으로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의 명확한 근거가 신설되어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2를 사업의 근거규정으로 기재하였다.

참고: 「매장문화재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지표조사³⁾가 필요한 지역 2만 617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21~2025년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사업규모는 총 490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70%인 343억원, 지방비는 30%인 147억원이다.

동 사업에서는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도 제작이 추진되는데, 2021년에는 국비 기준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서울, 경기, 충북 등 3개 시도의 10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수행되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대상	· 20,617km ²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100,364km ² 의 20.5%) * 기 조사지역, 산악·도로·하천 등 79,774km ² 제외
사업기간	· 2021~2025년(5개년)
사업규모	· 총 490억원 - 국비(70%) 343억원 - 지방비(30%) 147억원
사업내용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기존 자료 등으로 인지된 유적, 신규 유적, 도심으로 개발된 지역의 유적 등에 대해 현장 조사 실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 제작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설명정보 수록 -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방안(현상보존, 발굴조사, 참관조사) 수립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연도별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예산	국비	35	70	70	80	88	343
	지방비	15	30	30	34	38	147
	합계	50	100	100	114	126	490
대상지(안)		서울, 경기, 충북	부산 등	광주, 전남, 전북 등	대전, 세종, 충남 등	인천, 강원 등	

주: 대상지는 개발수요·매장문화재 훼손 우려에 따른 조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매장문화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각 지자체가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사전준비를 시작으로, 조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재청에 착수보고를 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하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는 최종보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 절차]

구분	시기	수행절차
사전준비	사업 착수 전	사전조사 및 준비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사기관 계약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 제작
전문가 검토	최종보고 전 수시	전문가 검토
최종보고	계약만료일 20일 이전	최종 성과물 제출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재청은 종전에는 일반국민(사업 시행자)이 개발사업 허가를 위해 개발행위시마다 지표조사를 하여왔으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지표조사 부담이 완화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제공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와 유존지역도 제작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⁴⁾의 전면적인 수정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게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하여 별도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문화유적이 분포된 곳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지도로, 1996~2006년에 제작된 이후 갱신되지 않아 문화유적의 위치와 범위 등이 정확하지 않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전·후 비교]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	· 일반국민(사업 시행자)	· 국가, 지자체
사업목적	· 개발사업 허가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 유적의 체계적 보존 및 보호
사업기간	· 개발행위시(계속)	· 2021~2025(5개년)
법적근거	· 「매장문화재법」 제6조	·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2
사업범위	· 지표조사 - 고고학적 지표조사 위주	· 지표조사 - 고고학적 지표조사, 고고환경조사, 유적보존조치 등 · 유존지역도 제작
활용범위	· 문화유적분포지도 부분 수정 · 단편적, 부분적 활용	·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면 수정 · 통합적, 체계적 활용 · 고고학 DB구축, 빅데이터 활용, 문 화재 유존지역 훼손 최소화
	· 1:10,000 지형도로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에 활용 불가 → 개발행위제한 정보 미비에 따른 국 민 불편 가중	· 1:1,200 지적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에 활용 가능 → 개발행위제한 정보를 편리하게 취 득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해소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가 사업비를 이월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을 적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예산액 35억원 중 34억 9,300만원을 교부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지자체는 교부된 예산현액 34억 9,300만원 중 1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6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45.1% 수준이다.

[2021회계연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실집행 현황(국비)]

(단위: 백만원, %)

부처			지자체				
예산액	교부액	불용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3,500	3,493	7	3,493	1,577	1,916	0	45.1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집행 현황을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10개 지자체에서 모두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집행률은 고양과 옥천이 각각 98.9%, 90.1%로 높은 반면, 오산, 청주, 제천은 실집행이 없다.

[2021회계연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국비)]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서울	910	304	606	0	33.4
경기	용인	420	318	0	24.3
	화성	434	64	0	85.3
	고양	378	4	0	98.9
	오산	119	119	0	0.0
	충주	245	60	0	75.5
충북	청주	434	434	0	0.0
	제천	259	259	0	0.0
	단양	112	34	0	69.6
	옥천	182	18	0	90.1
합계	3,493	1,577	1,916	0	45.1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예산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34.5%로, 지방비 집행실적(9.8%)이 저조하여 국비 기준 실집행률 45.1% 보다 10.6%p 낮다.

2021년에 집행된 금액은 지자체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금으로,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조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서울이 2021년 6월, 용인과 오산이 7월, 충주가 9월이고, 화성은 11월, 고양·단양·옥천은 12월로 연도 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주와 제천은 연도를 넘겨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회계연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국비+지방비)]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합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서울	2021.6~2022.10	910	304	33.4	390	0	0.0	1,300	304	23.4
경기	용인 2021.7~2022.7.	420	102	24.3	180	44	24.4	600	146	24.3
	화성 2021.11~2022.11	434	370	85.3	186	0	0.0	620	370	59.7
	고양 2021.12~2022.12	378	374	98.9	162	0	0.0	540	374	69.3
	오산 2021.7~2022.7.	119	0	0.0	51	0	0.0	170	0	0.0
충북	충주 2021.9~2022.8	245	185	75.5	105	79	75.2	350	264	75.4
	청주 2022.4~2023.4	434	0	0.0	186	0	0.0	620	0	0.0
	제천 2022.1~2023.1	259	0	0.0	111	0	0.0	370	0	0.0
	단양 2021.12~2022.12	112	78	69.6	48	0	0.0	160	78	48.8
	옥천 2021.12~2022.12	182	164	90.1	78	23	29.5	260	187	71.9
합 계		3,493	1,577	45.1	1,497	146	9.8	4,990	1,723	34.5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2021년에 신규 편성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2021년 3월에 사업지침을 마련하였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학계, 조사기관,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말과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주요 사유는, 사업 추진 방향 수립과 조사 대상지 범위 설정을 위한 기간 소요, 지방비 확보 지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계약 유찰 등이다.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 지연 주요 사유]

지자체		조사기간	사업 추진 지연 주요 사유
경기	화성	2021.11.~2022.11.	· 지방비 확보 지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계약 유찰
	고양	2021.12.~2022.12.	· 금액 조정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연
충북	청주	2022.4.~2023.4.	· 조사 대상지 및 면적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기간 등 소요
	제천	2022.1.~2023.1.	· 행정구역별 면적 및 사업 가능 여부 조사 기간 등 소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계약 유찰
	단양	2021.12.~2022.12.	· 사업 추진 방향성 및 조사범위 등 파악 기간 소요, 지방비 확보 지연
	옥천	2021.12.~2022.12.	· 사업계획 추진 방향 및 사업 확정 기간 소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계약 유찰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사업 추진 방향 수립과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전준비 후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021년 동 사업에서 각 지자체는 사전준비 과정에 많은 기간을 소요하였으며 지방비 확보 지연과 조사기관 계약 유찰 등으로 202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하였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범위 설정과 검토를 완료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을 적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청은 국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5)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등⁶⁾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절차⁷⁾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결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1호8) 관련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⁹⁾는 2013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지역·지구 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문화재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 등 제반 조건의 완료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대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다.¹⁰⁾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5개년 동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하여 동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0) 감사원 통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지역·지구 미지정(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 2016.11.15.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및 실효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¹⁾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²⁾ 등에 따라 드론을 도입하여 평상시 정보수집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도 예산현액 14억 8,700만원 중 99.7%인 1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3,508	3,508	0	±27	3,508	3,075	87.7	0	433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1,487	1,487	0	0	1,487	1,483	99.7	0	4

자료: 문화재청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334-301의 내역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10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재 방재 드론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예산 10억원, 드론 스테이션 촬영 영상의 실시간 연계 기능을 포함한 문화재 재난상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내용	·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 및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 전송 등이 가능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사업규모	· 10개소 구축
예산 편성내역	· 총 14억 8,700만원 -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도입·활용 10억원 : 1억 4,300만원 × 10개소 × 70% * 국비 70%, 지방비 30% -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4억 8,700만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례(경북 성주)]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첫째,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의 구축 대상인 9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는 교부액을 전액 이월하고 2개 지자체는 교부액을 전액 불용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드론 스테이션 구축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도입·활용(이하 ‘드론 스테이션 구축’)은 예산현액 10억원의 34.7%인 3억 4,7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4억 1,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억 4,100만원은 불용되었다. 그리고 직접 사업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이하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4억 8,700만원의 99.2%인 4억 8,300만원이 실집행되고 4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 주체	예산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드론 스테이션 구축	지자체	1,000	1,000	1,000	347	412	241	34.7
유지관리	직접	487	-	487	483	0	4	99.2
합 계		1,487	1,000	1,487	830	412	245	55.8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실적이 저조한 드론 스테이션 구축의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 지자체 중에서 충남 보령과 강원 동해 등 2개 지자체에서만 90% 이상 실집행되었고, 경북 성주와 전북 부안 등 2개 지자체는 실집행률이 60%대이다. 충북 제천 등 5개 지자체는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 중 충북 제천, 전북 익산, 제주 등 3개 지자체는 사업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고, 경북 경산과 경남 거창 등 2개 지자체는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문화재명	교부액 (A)	교부일	실 집행액 (B)	실 집행일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충남 보령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105	'21.3.11.	104	'21.12.30.	0	1	99.0
강원 동해	동해 무릉계곡	103	'21.3.11.	98	'21.12.13.	5	0	95.1
경북 성주	성주 성산동 고분군	105	'21.3.11.	73	'21.11.9.	32	0	69.5
전북 부안	부안 죽막동 유적	104	'21.3.11.	72	'21.12.24.	32	0	69.2
충북 제천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98	'21.3.11.	0	-	98	0	0.0
전북 익산	익산 왕궁리 유적	140	'21.3.11.	0	-	140	0	0.0
제주	제주 수월봉	105	'21.3.11.	0	-	105	0	0.0
경북 경산	경산 병영유적	140	'21.3.11.	0	-	0	140	0.0
경남 거창	거창 수승대	100	'21.3.11.	0	-	0	100	0.0
	합계	1,000		347		412	241	34.7

주: 2021.12.31.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된 지자체의 2022년 5월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충북 제천은 유찰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사업 대상지인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부근의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공고를 2022년 7월에 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의 경우 익산 왕궁리 유적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유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스테이션이 아닌 드론 위주의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변경된 사업내용의 공고를 준비 중이다. 제주의 경우 유찰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2022년 4월 재공고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경북 경산은 드론 스테이션 구축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등 건축물과의 간섭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을 취소하였고, 경남 거창은 관광지 내 드론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사업을 취소하였다.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집행부진 지자체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지자체명	문화재명	추진경과
이월	충북 제천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등	유찰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통신불량으로 인한 주요 사업 대상지 변경 2022.7. 공고 예정
	전북 익산	익산 왕궁리 유적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사업 관련 공고 준비중 * 여러 유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 위주의 구축으로 사업내용 변경
	제주	제주 수월봉	유찰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 2022.4. 재공고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후 사업 착수
불용	경북 경산	경산 병영유적	주변 건축물과의 간섭과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사업 취소
	경남 거창	거창 수송대	관광지 내 드론 안전성 우려 등으로 사업 취소

주: 2022.5.31.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신청 당시 각 지자체는 접근이 어렵거나 범위가 넓어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등에 대해 평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드론 스테이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충북 제천은 주요 사업 대상지에서 드론의 원활한 활용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고, 전북 익산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 위주의 구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주는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북 경산과 경남 거창에서는 민원 발생 또는 안전성의 우려로 사업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대상 문화재가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 신청 지자체가 사업 대상 문화재의 주변 환경과 주민 의견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드론 스테이션 구축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3개 지자체 중 충북 제천과 전북 익산 등 2개 지자체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이월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2021년 사업비를 전액 불용한 지자체가 2개 발생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서 구축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과 실시간 영상정보 연계가 가능한 문화재 재난상황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드론 스테이션의 운용 실적과 추진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드론 스테이션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드론 스테이션이 문화재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드론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충남 보령, 강원 동해, 경북 성주 등 3개이다. 충남 보령은 2022년 3~5월 설치업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대행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고, 강원 동해는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성주는 설치업체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2022년 5월까지의 드론 스테이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대상 문화재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회당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 가량 매월 주기적으로 문화재 및 인근을 순찰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축된 드론 스테이션이 많지 않아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지자체별 운영 현황]

지자체명	문화재명	운영 방식	운영 실적			
			시기	시간 (횟수)	비행대상지	내용
충남 보령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2022.3.~5. 설치업체 시범운영 * 2022.6.~ 대행 용역 업체 운영	3월	370분 (2회)	문화재 및 인근	수립 및 근방 순찰
			4월	360분 (2회)	문화재 및 인근	수립 및 근방 순찰
			5월	240분 (1회)	문화재 및 인근	수립 및 근방 순찰
강원 동해	동해 무릉계곡	2022.2.~ 직접 운영	2월	630분 (3회)	무릉계곡	시험 비행
			3월	240분 (4회)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광장	시험 비행 및 적응훈련
			4월	110분 (2회)	무릉계곡	무릉계곡 예찰
			5월	180분 (3회)	무릉계곡	무릉계곡 예찰
경북 성주	성주 성산동 고분군	2022.1.~12. 설치업체 시범운영	1월	23분 (3회)	고분 및 산림	테스트 및 납품 비행
			2월	37분 (4회)	고분 및 산림	고분군 상태 및 산불 감시
			3월	91분 (9회)	고분 및 산림	고분군 상태 및 산불 감시
			4월	69분 (8회)	고분 및 산림	고분군 상태 및 산불 감시
			5월	92분 (8회)	고분 및 산림	고분군 상태 및 산불 감시

주: 2022.5.31.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드론 스테이션 운영 및 효과성 파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구축되는 드론 스테이션에 대해 매월 운영 실적을 파악하여 드론 스테이션 활용에 따른 성과를 파악할 예정이며, 드론 스테이션 운영에 조종자 증명 소지 인력이 필요³⁾한 점을 고려하

- 3)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기에 해당되는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무인비행기의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었으나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여 운영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21년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구축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과 실시간 영상정보 연계가 가능한 문화재 재난상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드론 스테이션의 운용 실적과 추진 경과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드론 스테이션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드론 스테이션이 문화재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0.5.27. 일부개정, 2021.3.1. 시행)으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구축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하는 무인비행기에 해당하여 드론 운영을 위해서는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인력이 필요하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64-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